유 럽 5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요 약

Summary

유럽은 단일 경제공동체인 EU를 중심으로 터키, 러시아 등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최근 EU 탈퇴를 추진 중인 영국 등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EU의 법과 제도는 세계 규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유럽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23개국과 EU에 대한 통상환경을 다룬다.

EU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18년 EU는 무역구제제도 개정안 발효, 개인정보 보호법(GDPR),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전자 정부조달 시스템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네덜란드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으로 최근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진정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브렉시트, 테러확산, 보호주의 확대 등은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 스키폴 공항 등 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관시스템, 투자진출, 금융시스템 등도 선진화되어 있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독일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규제는 EU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는 편이다. 또한 독일의 금융시장은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8위의 무역국이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EU 탈퇴와 관련된 국내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동향 변화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자동차, 대중음악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영국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는 거대한 소비시장과 동시에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 선진국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물류, 투자진출, 금융시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요 약

Summary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품목의 특징이 뚜렷한데, 수출은 자동차와 원자재 등이며, 수입은 가방과 신발 등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터키는 최근 2016년까지 국내 정세 불안, 2017년 경기 호조 그리고 2018년 다시 경기 침체와 환율 변동 등이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정국을 보이고 있다. 터키와 우리나라는 한·터키 FTA 발효(2013년) 이후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고 철강,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투자진출과 관광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이자 체제전환국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투자 진출 거점으로 가전, 자동차, 화학 등 분야의 19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2018년 들어서는 기존 14개 경제특구를 폴란드 전 국토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이후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2018년에도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경직적인 노동

시장과 높은 실업률, 낮은 대외경쟁력, 높은 수준의 재정 지출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8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법을 발효시켜 국가별 상이한 세관 규제를 최소화하고 초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AEU 단일 인증제도 도입과 공통 기술규정 마련,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에서는 자동차 수출과, 석유(원유)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

유 럽

www.motie.go.kr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산업통상자원부

Contents

2018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 · 중동

유럽연합(EU) ····· 2
그리스 ····· 82
네덜란드 ····· 100
독 일 ····· 122
루마니아 ····· 147
불가리아 ····· 163
스웨덴 ····· 172
스페인 ····· 192
영 국 ····· 218
오스트리아 ····· 261
이탈리아 ····· 280
크로아티아 ····· 295
터 키 ····· 329
포르투갈 ····· 335
폴란드 ····· 353
프랑스 ····· 371
헝가리 ····· 395
노르웨이 ····· 406
러시아 ····· 418
벨라루스 ····· 456
세르비아 ····· 476
스위스 ····· 491
슬로바키아 ····· 513
벨기에 ····· 536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www.motie.go.kr

V

CHAPTER

유 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유럽연합(EU)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EU 통상 관계 현황

EU의 통상정책 기본 방향

EU 집행위는 2015년 10월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을 발표하여, 융커 집행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투자정책은 EU시민을 위한 성장지원 정책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효과적인 통상정책, 투명한 협상진행, EU의 주요가치 보존 등을 신통상투자전략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면서 EU-미국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의 타결, EU-캐나다 CETA의 유럽의회 비준을 통한 조속한 발효, 일본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정체결 마무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강조 및 전자상거래, 정보이전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반영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 △정부규제권한 확보를 통한 환경·노동 등의 가치보존 등이 있다.

EU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협상의 진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싱가포르·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TTIP), 일본 및 아세안 각국 등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상,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지역경제통합 협상을 지속 추진 중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FTA(TTIP)는 잠정 중단되고, 2018년 7월 EU-미 정상 합의에 따른 비자동차 분야 공산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및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8년 9월에는 일본과의 FTA(EPA) 서명 이후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7년 9월 EU 집행위는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 2017)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감시체제 도입, △호주, 뉴질랜드 무역협정 협상개시, △투자분쟁 해소를 위한 다자법원 설립, △EU무역협정 관련 자문그룹 신설, △새로운 투명성 확보 등을 담은 통상패키지(Trade Package)를 발표한 바 있다.

대외통상관계 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정책과 같이 회원국별로 운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WTO는 2017년 무역정책검토 보고서를 통해 EU집행위가 2015년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 서비스교역, 전자상거래 등의 성장 촉진과 2016년 10월, EU-캐나다간 FTA(CETA) 서명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EU 집행위 보고서 및 Eurostat에 의하면, EU의 상품무역(EU 역내교역 제외)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지속되는 경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수출은 1조7,030억 유로, 수입은 1조6,920억 유로를 기록했다. 2017년은 수출 1조8,785억 유로, 수입 1조8,588억 유로로 모두 증가했으나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50% 감소한 197.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EU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은 미국(20%)이며, 중국(10.5%), 스위스(8.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20.2%)을 하며, 미국(13.8%), 러시아(7.8%) 순이다.

2017년 EU의 국가별 상품무역 현황(출처: EU 집행위)

순위	총교역			수입			수출			무역수지	
	국가	억유로	비중	국가	억유로	비중	국가	억유로	비중	국가	억유로
1	미국	6,326	16.9	중국	3,751	20.2	미국	3,759	20.0	미국	1,191
2	중국	5,731	15.3	미국	2,568	13.8	중국	1,979	10.5	스위스	400
3	스위스	2,608	7.0	러시아	1,450	7.8	스위스	1,504	8.0	UAE	326
4	러시아	2,312	6.2	스위스	1,104	5.9	러시아	862	4.6	홍콩	258
5	터키	1,543	4.1	노르웨이	775	4.2	터키	845	4.5	호주	217
6	일본	1,296	3.5	터키	698	3.7	일본	607	3.2	터키	147
7	노르웨이	1,282	3.4	일본	689	3.7	노르웨이	507	2.7	멕시코	141
8	한국	995	2.7	한국	500	2.7	한국	495	2.6	싱가폴	131
9	인도	859	2.3	인도	442	2.4	UAE	426	2.3	이집트	117
10	캐나다	692	1.9	베트남	370	2.0	인도	417	2.2	사우디	103

EU의 서비스무역은 2009년 이후 수출·수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16년 수출은 8,200억 유로, 수입은 6,900억 유로이며 미국과 스위스가 주요 서비스 교역국이다.

한-EU 교역관계 개관

EU는 2017년 기준 인구 5.1억 명(3위), GDP 규모 15.3조 유로(2위), 1인당 GDP 29,900유로, 전 세계 무역의 약 15%(3.7조 유로)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 상대국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540억 달러와 573억 달러로, 상품 무역수지는 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5.1%), 자동차(14.0%), 자동차부품(7.8%), 합성수지(4.6%), 철강판(4.2%)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13.4%), 반도체제조용장비(7.2%), 농약및의약품(5.3%), 원동기및펌프(3.8%), 원유(3.5%) 등이다.

한·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EU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에 따라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양측간 상품 무역액은 2016년에는 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985억 달러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1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 EU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EU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이란 제재에 따른 영국산 원유 수입 증가와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우리 소비자 성향 고급화에 따른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EU로의 수출에서는 유로존 경기부진으로 EU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과 유럽 및 동남아 내 자동차 및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설비 증설로 유럽으로의 수출경로가 다변화 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540.4억 달러와 572.8억 달러로, 상품 무역수지는 32.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EU의 무역관리제도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7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414개 세번)의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6.3%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1%, 비농산물의 경우는 4.3%이다. 전체 품목 중 25.1%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 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후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섬유·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산 제품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파키

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으로 구성) 등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국가와 인정시기를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관에 관한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업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맡고 있어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절차, 신속도, 민원인 응대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4년 5월 1일,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년 1월 1일, 신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년 7월 1일 신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적용, 통관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지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동체관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동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고,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economic operator)의 권리 확대와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유럽 의회는 2013년 9월 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1일, UCC가 발효되었다. 다만,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8월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년 11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년 4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년 8월 EU가 다기능휴대폰 규정 및 해설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또한 2010년 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LCD 모듈에 대해 일방적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관세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품

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하여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CTS: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세관 당국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

트를 추진한바 있다. 여기서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년 4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1) 수입규제 동향

EU는 2018년 6월 기준 97건의 반덤핑 조치(29건의 연장조치 포함)와 13건의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58건에 대해서는 조사(재심 및 잠정조치 부과중인 조사 포함)를 진행 중이다. 2018년 상반기 중 총 26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3건의 신규조사와 14건의 재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현재,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6건(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포함)이며, 2018년 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2)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작업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EU 집행위가 2006년 12월 무역구제

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논의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EU 역내 업계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해 다시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이사회 및 유럽의회 승인에 따라, 2018년 6월 8일자로 무역구제제도 개정안(현대화 방안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잠정조치 부과까지 소요되는 무역구제조사 기간을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잠정조치 시행시 조기 통보,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제한적 적용, △조치 수준 결정시 조사 대상국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왜곡이 있는지 고려, △조치 수준 결정시 조사 대상국의 사회 및 환경, 노동 기준(ILO 핵심 협약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국제 환경 협약 이행 현황 등) 고려 등의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기술적 장벽

유럽연합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 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인증번호의 서면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 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63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의 TBT 챕터에서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EU는 미국(3,193개), 브라질(1,572개) 등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 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년 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2012년 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1]'를 발표하였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럽식품안전청을 신설, 둘째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일관되게 개선하며, 셋째 사료와 식품의 운영자(business operators, 생산지 및 사업자)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들 식품을 다루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EU는 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서에 포함된 실행계획의 하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EU차원의 기본법(General Food Law)을 제정(2002년)하는 것으로, 그 기본법이 바로 Regulation(EC) No 178/2002이다. 동 법에는 백서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Regulation(EC) No 178/2002의 제2장에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식품 및 동물사료에 적용되는 적용범위(제4조), 일반원칙(제5조), 위험분석(제6조), 사전예방원칙(제7조), 소비자이익보호(제8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제9~10조) 등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식품교역의 일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역내 수입(11조), 역외수출(12조), 국제기준(13조), 식품안전 조건(14~15조), 식품표기·광고·프레젠테이션(16조), 운영자 책임성(17조, 19~20조), 이력추적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

1) COM(1999) 719 Jan. 12, 2000, 이하 '백서'라 한다.

EU는 식품 기본법을 기반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2/2004), 동물유래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3/2004), 식용목적의 동물유래제품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4/2004), 식품 및 사료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2/2004)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 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2011년부터 식품표시일반에 대한 규칙(2000/13/EC)과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규칙(90/496/EEC)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13일부터 '소비자 대상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Regulation No. 1169/2011)'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규칙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 강조 표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 원산지 표시 대상 범위 확대, 가독성을 위해 최소 글자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2016년 12월 13일부터는 포장식품의 총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염분의 영양표시도 의무화되었다.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Regulation 178/2002)에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2002년 1월, 이탈리아 Parma 소재)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

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 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였다. EFSA는 위해요소평가(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소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RASFF는 EU27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망(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EU는 IT기반의 iRASFF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회원국과 EU RASFF팀간 이메일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회원국이 바로 온라인 iRASFF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지내용을 입력하고, RASFF팀이 최종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competent authority)가 EU에 수출가능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보건총국(DG SANTE) 내 보건및식품검사분석국(Health and Food Audits Analysis Office)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1월 26일,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년 7월 30일 개정, 2차: 2015년 1월 6일 개정 및 2015년 7월 7일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년 3월 20일)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년 3월 28일),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의 적극적 개선조치 결과, EU는 2015년 4월 21일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2015년 5월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해양수산총국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양국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제안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EU측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2017년 5월에 공동선언문 문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여, 2018년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월 18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카미누 벨라 해양수산집행위원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한-EU 공동선언은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EU와의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과 EU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성과물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 (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EU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에서 화

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년 6월부터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사전등록(Pre-registration) : 연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년 6월 1일~12월 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② 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 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고(Notification) :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서 제품중량 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2011년 6월 1일 부터 시작되었다.

④ 평가(Evaluation) :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 허가(Authorization) :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SVHC)-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⑥ 제한(Restriction) : 건강·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 의 물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래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시행하였다,

①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 까지
②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③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5,445건은 등록절차 진행중)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 이고,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 이었으며, EU 국가별 등록율은 독일 25%, 영국 14%, 프랑스 10% 였다,[2)]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 http://ec.europa.eu/ consumers /safety/rapex/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 위반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는 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입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2008년 12월 제정되어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지침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며, 혼합물질은 2015년 6월부터 적용된다. CLP 물질목록

2)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발표 자료(2018년6월1일): chemicals on EU market now registered

은 REACH 대상물질과 상이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 체계 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은사용 규제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년 10월 서명하고 2017년 5월에 비준을 완료했다. EU는 수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 수은지침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31일 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 사용이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 되었다.

치과용 아말감은 2019년 1월1일부터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추가적으로 회원국들은 2019년 7월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아말감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였다.

EU 집행위는 2021년 1월1일까지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은오염 지점을 목록화(inventory)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한 2020년 6월 30일까지 화장터(crematoria)에서의 수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할 예정이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년 4월, 경상용차(van) 관련 규정은 2011년 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내 신규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fleet average)의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평균배출량 130g/km은 EU 전체의 목표이며, EU 전체의 차량평균 중량과 제작사별 평균 차량무게를 고려하여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이 결정된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을 부여한다. 제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19	2020	2021	2022	2023
평균배출량 목표	130	130	130	130	130	95	95	95	95
단계적적용	65%	75%	80%	100%	100%	95%	100%	100%	100%
수퍼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0	2	1.67	1.33	1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의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에 해당하는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으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규제의 단기목표는 2017년까지 EU평균 175g/km을 달성하는 것으로, 2007년 평균배출량 203g/km 보다 14% 적으며, 2020년 장기목표는 147g/km이다.

제조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기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배출량 목표	175	175	175	175	175	175	147
단계적 적용	70%	75%	80%	100%	100%	100%	100%
수퍼 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	1.5	1

우리 제조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한편 2021년 이후에 적용될 강화된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목표와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2017년 11월 신규 자동차와 밴의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한하는 법령 제정안(Regulation of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vans))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EU의회는 2018년 10월에 신규 판매되는 승용차 및 밴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2021년 대비)하고, 2030년까지 40%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화하여 통과시켰다. 향후, EU각료이사회에서 동 내용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위는 2014년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VECTO : Vehicle Energy Consumption Calculation)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U집행위는 2018년 5월에 대형 트럭 등 중량자동차(heavy-duty vehicle)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규정안(Regulati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heavy-duty vehicles)를 제안하였다[3].

3)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17일): 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completes its agenda

동 규정안은 대형트럭(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데, EU 전체적으로 신규 등록 대형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9년 배출수준 대비 15%를 감축해야 하고(의무목표), 2030년까지 최소 30%를 감축해야 한다(잠정 목표). 동 규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여,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확정하고, 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 다른 중량 자동차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차량제조사들에게 업체별 차량 구성, 특징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gC02/km 로 환산하여 할당하고, 제조사들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료 소비량을 EU 집행위가 개발한 툴(VECTO)을 이용하게 측정하게 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1) 항공부문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20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년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

for safe, clean and connected mobility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 역외에서 역내로, 역내에서 역외로 운항하는 국제항공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2016년까지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10월 ICAO 총회에서 국제시장기반조치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집행위는 2017년 2월에 역내공항과 역외공항간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유보를 2017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이사회는 EU역내와 EU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4]. 따라서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2) 해상운송부문

EU는 해상운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강조하여 왔지만, 항공분야처럼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의 우선 구축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여부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을 법안이 2013년 6월 발표되어 의회/이사회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2)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한 연료효율성 관심 제고 효과로 인해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30년에는 연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EU의회는 2017년 12월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13일 동 지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승용차(Category M) 및 2.5톤 이하 소형화물차(Category N1)에 대한 배출가스 지침(Directive 98/69/EC)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하여 2000년부터 Euro 3 기준, 2005년부터는 Euro 4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07년 채택된 Regulation(EC) No 715/ 2007을 통해 신규차종 승인은 2009년 9월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2011년 1월부터 Euro 5 기준이 적용되었다. 디젤 차량의 분진(PM) 배출량은 80%(기존 25mg→5mg/km)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180mg/km에서 80mg/km로 강화한 Euro 6 기준이 신규 차종의 승인에는 2014년 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년 9월부터 적용되었다.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DVs)의 배출가스 관련, Regulation(EC) 715/2007에서는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5 기준에 이어 2013년말부터 Euro 6기준(Regulation(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6은 Euro 5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2015년 독일 Volkswagen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EU는 역내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험실 검사에 추가하여 실도로조건(RDE)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실험실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사방법을 WLTP(Wolr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2.3만 배에 달하는 불화 온실가스의 사용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EU는 불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개 법규를 운영 중인데,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와 불화 온실가스 규정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년 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년 1월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을 2012년 11월 제안하였으며 2014년 5월 채택되었다.(Regulation (EU) 517/2014).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Phase-down)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였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은 Directive 94/62/EC로서, 이를 통해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예시(부속서 I)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들의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였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EU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지침을 2015년 개정하였는데,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을 2025년까지 40개로 줄이거나 2018년말까지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부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이행 및 플라스틱 규제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

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는 2018년 1월 플라스틱의 사용 감소와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였는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효과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5)]

EU 집행위는 2018년 5월 EU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 설정, 판매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 등에 대한 제정안을 제안하였다[6)]. 동 내용에 대해 EU의회와 EU 각료 이사회가 심의 중이다.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EU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인 에코라벨링(Eco-Label)제도는 Regulation(EC) No 66/2010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

5)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1월 16일):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

6)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28일):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

현재 TV, 컴퓨터, 세제, 종이, 섬유, 신발류, 관광숙박업 등 34개 품목에 Eco-label이 부여되고 있는데,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국에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미리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준에 신청된 제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Eco-label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회원국에서 인증받는 Ecolabel은 인증 국가와 관계없이 유럽전체에 통용될 수 있다. 2015년말까지 2,010개의 허가(license)가 부여되었고, 44,501개의 제품이 Ecolabel을 사용하고 있다. (세부품목은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참조)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년 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EU집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 집행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재검토(review)하고 있다.

한편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가 국가 나노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등록부 설치 대신에 관측소(Observatory)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 4월 발표하였다. 첫 단계로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나노물질 관측소 인터넷 홈페이지(euon.echa.europa.eu)를 2017년 6월에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이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나노물질 소개, 용도, 안전성, 관리체계, 나노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EU의 나노물질 규제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년 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6년 11월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남아공 등 89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보조금 및 그 밖의 정부 지원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년 10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이 WTO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경쟁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가보조금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최근의 사례 이외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 · R&D · 직업훈련 · 고용지원 · 낙후지역개발 · 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6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non-crisis aid)은 1,028억 유로(EU GDP의 0.69%)였다. 국가보조금의 대부분은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 보조금은 환경보호·에너지분야(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에 529억 유로, 농업분야에 54.6억 유로 등이 지원되었다.

정부조달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25만여 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 기관은 연간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구매한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연 2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회원국에 의한 이행입법이 필요한바, 당시 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가 간편해지고 보다 유연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을 활용하여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8년까지 일반화되고 의무화되었다. 우선적으로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를 시행되었으며, 이후 조달기관에 대한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동 조달지침에서 낙찰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 기준을 벗어나서,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 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혔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2017년 10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정부조달절차의 효율화·간소화 추진 및 이를 통한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 제고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구매자의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접근성 개선, 조달관련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조달절차 디지털화, 공공구매자간 협업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2.5억 유로 규모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위 차원의 정보데스크(helpdesk) 운영, 구매담당자에 대한 전문성교육 강화, 조달당국간 모범사례 및 혁신적

조달방식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진출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 (222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이 개방되었다.

또한,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3년 7월 1일부로 가입한 크로아티아)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도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한 EU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금번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달지침의 개정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에 가격 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가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의 응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은 주로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재권 정책의 통일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방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로의 위조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법 규범은 EU 관련법과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EU는 지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지역소진(regional exhaustion)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제3국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EU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심사결과 특허를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당초에 지정하였던 국가들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2017년 12월 현재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EPC에 의한 유럽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 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개별 EPC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여부를 통합하여 판단한다. 즉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일 뿐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국가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유럽특허를 이용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만 해당 국가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각각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회원국마다 별도의 중복된 제도 운영은 많은 특허획득 비용을 초래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1) 단일특허제도 설치 논의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소

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단일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단일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단일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전체에 걸쳐서 부여 및 이전되며,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안은 EPO에 출원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U특허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절차 중의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

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의상 '공동체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년 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년 12월 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27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합특허를 지체 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년 12월 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년 2월 15일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7]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년 3월 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회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7)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2011년 4월 EU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년 6월 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8]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의회간의 2011년 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년 6월 29일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런던: 화학 및 의약품),(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년 12월 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EEUPC)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 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였다. 다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폴란드도 불참하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EUPC는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여부

8)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하되 EU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 변수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2018년 4월에 의회 상하원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법안을 승인하고 동 협정비준서를 EU이사회 사무국에 기탁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독일만 비준을 완료하면 되나(프랑스는 비준 완료), 지난 2017년 6월 독일의 한 특허변호사가 독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법안이 독일헌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독일연방헌재의 요청에 따라 독일정부는 현재 비준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독일 헌재는 2018년초에 공개한 올해 헌재사건 심리목록에 이를 포함시켜 2018년 하반기내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2018년 11월 현재까지도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다수 국가가 협정비준을 완료한 상황이고, 독일, 영국 등 주요국 IP관련 전문가단체, 협회 등에서 동 소원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 소원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정 합의안에 따르면 2020년말까지의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는 영국이 EU규범체계의 적용을 계속 받게되므로, 올해 내지 2019년 상반기중에 독일헌재의 기각결정이 나면 2019년 하반기에는 통합특허법원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관건은 2020년 이후에는

영국이 EU비회원국이면서 EU규범인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시스템에 참여하는 형국이 되므로, 이 불일치가 해소되어야 영국이 계속 동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협상에서 추가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 단일특허에 대한 평가

집행위는 번역비용의 절감으로 25개 회원국 전체서 유효한 단일 특허에 대한 취득 비용이 6,200유로 이하로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통합특허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데 영·불·독 이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EU회원국 국민은 번역비용을 반환받음으로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원인에 대하여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적어도 출원과정에서는 통합특허의 장점을 많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나, 등록 단계에서는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출원인이 유럽특허에서 통합특허로 이동할 것이다.

그간 EU의 이산된 특허제도는 비단 EU 내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EU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EU 시장의 이용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 시정이 요구되어온 만큼 국내외의 많은 EU 시장 이용자들이 통합특허의 발족 가시화를 반기고 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에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시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유럽특허청(EPO)의 특허활동

2017년 한해 유럽특허청에 심사청구된 총 특허출원건수는 전년(159,316건)대비 3.9% 증가한 165,590건으로 2015년(160,004건)에 이어 다시 16만건을 상회하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건수 중 38개 EPO 회원국 비중이 47%를 차지했고, 비회원국은 전체의 53%로

IP5 국가인 미국(26%), 일본(13%), 중국(5%), 한국(4%)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국 기준으로는 2016년과 순위가 거의 동일하나, 계속 두 자리수 증가율(16.6%)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스위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Top 5에 진입하였다. 미국이 42,30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독일(25,490건), 일본(21,712건), 프랑스(10,559건), 중국(8,330건), 스위스(7,283건), 네덜란드(7,043건) 순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8.2% 감소한 6,261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8위에 랭크되었다.

2017년 상위 10대 다출원 국가 현황

순위	국가명	출원건수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1	미국	42,320	26%	5.8%
2	독일	25,490	15%	1.9%
3	일본	21,712	13%	3.5%
4	프랑스	10,559	6%	0.5%
5	중국	8,330	5%	16.6%
6	스위스	7,283	4%	0.6%
7	네덜란드	7,043	4%	2.7%
8	한국	6,261	4%	-8.2%
9	영국	5,313	3%	2.4%
10	이태리	4,352	3%	4.3%

2017년 출원 상위 10개국중 우리나라만 전년대비 출원건수가 감소했고, 최근 7년연속 출원감소세를 보이던 일본(2017년 3.5% 증가)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미국(2017년 5.8% 증가)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IP5로 대표되는 최다 특허출원 국가간 흐름을 살펴보면 이 역시 2016년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의 한국, 미국, 중국에 대한 출원건수가 동 국가들의 EPO 출원건수보다 많았으나, 일본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10대 다출원 기업을 살펴보면, LG와 삼성 모두 2016년대비 10%p 이상 출원건수가 감소하여 LG는 2,056건(전년(2,313건)대비 11.1% 감소)으로 3위를, 삼성은 2,016건(전년(2,316건)대비 13.0% 감소)으로 4위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순위변동이 있었는데, 중국의 화웨이가 최초로 1위(2,398건, 전년(2위)대비 0.3% 증가)에 올랐고, 2년연속 1위를 차지했던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6위(1,733건)로 하락한 반면, 2016년 6위였던 지멘스가 2위(2,220건, 18.7% 증가)로 부상했다.

2017년 상위 10대 다출원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출원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1	Huawei	2,398	0.3%
2	Siemens	2,220	18.7%
3	LG	2,056	-11.1%
4	Samsung	2,016	-13.0%
5	Qualcomm	1,854	8.8%
6	Royal Philips	1,733	-1.9%
7	United Technologies	1,719	-16.8%
8	Intel	1,435	13.2%
9	Robert Bosch	1,412	6.4%
10	Ericsson	1,373	16.1%

기타 한국기업은 현대(84건), LS산전(73건), 두산(63건), 포스코(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허등록건수 역시 유럽특허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품질과 효율성(Quality and Efficiency) 제고 노력의 결실로 전년(95,940건) 대비 무려 10.1% 증가한 105,635건을 기록하였다. 특허등록은 2017년에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38.2%, 2016년 3,210건)에 힘입어 총 4,435건이 등록돼 전체 5위(전년 6위)를 차지함. 특히, LG가 2017년 한해 최다 유럽특허 등록(1,792건, 전년(1,173건)대비 52.8% 증가) 기업에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고, 삼성(1,408건)도 3위를 유지했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일개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

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공동체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공동체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1) 공동체상표의 효력 확대

공동체상표청(OHIM)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OHIM은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 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한 공동체상표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국에서 공동체상표보다 선의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일을 갖는 가입국내의 선권리자는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2009년 5월 공동체상표청(OHIM)은 공동체상표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부담이 기존의 1,750유로에서 1,050유로로 줄게 되었고, 공동체상표 등록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EU의 상표 출원인들이 연간 약 6천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 공동체 상표의 출원

2013년 공동체상표청(OHIM)에 출원된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출원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114,427건을 기록했다. 공동체 상표의 온라인 출원비율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 심사관은 공동체 상표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 유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동 출원을 공고(publication)한다. 출원공고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출원은 등록이 된다. 공동체 상표에 대한 한국 출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33건이 출원되어 2012년 807건 대비 40%가 증가되었으며 그동안 총 5,966건의 누적 출원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 출원인은 LG전자, 삼성전자, LG상사,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3)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WIPO는 상표소유자가 표준출원으로 회원국들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상표 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의정서 가입을 결정한바 있으며, 2004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4) EU 상표법 개정 방향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상표제도의 현대화, EU차원의 상표제도와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와의 조화, 출원인의 비용절감, 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상표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EU 상표제도 개정의 대상인 세부 법안은 아래와 같다.

- EU의 1989년 제정 상표지침(Directive) 2008/95/EC
- EU의 1994년 제정 공동체 상표규정(Regulation) 207/2009/EC
- EU 집행위의 1995년 제정 공동체상표청 수수료 규칙 2869/95

집행위는 EU상표제도 개정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신뢰성이 높으며

예측 가능한 상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아래의 주요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 EU 공동체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각 회원국 상표등록 제도의 조화 및 효율화 추구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현대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
- EU의 영토를 통과(transit)하는 위조품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 EU 상표실무의 조화를 위해 공통의 툴을 개발하고 공동체상표청(OHIM)과 회원국 상표청간의 협력을 증진

지리적 표시(GI)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유럽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명칭을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국으로부터의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도 가능하며, 2009년 이래 1건의 비 EU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었지만 등록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되고 있다.

2010년 7월 EU는 스위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800개의 EU 측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와 22개의 스위스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가 상호 보호받게 되었다. EU는 중국과도 지리적 표시 관련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7년 시작된 '텐 플러스 텐'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10개의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EU에서 10개의 중국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한-EU FTA 발효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EU 공동체 상표 제도 하에서 공동체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관련법 및 무역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EU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식품, 포도주,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함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에서의 비농

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는 독자적(sui generis) 보호시스템을 갖는 국가, EU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간접적 보호 등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2011년 5월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2년말 연구를 종료하였고 2013년 말경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도입을 위한 자체 연구의 범위는 크게 이하의 3가지로 요약된다.

- EU 차원 및 회원국, 비회원국에서의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현황
-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평가

디자인

(1) 공동체디자인제도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를 위해 EU는 2001년 12월에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은 각 EU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공동체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공동체상표청(OHIM)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간 EU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은 디자인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로서 권리 행사하는 경우는 디자인으로서의 적격성,

신규성 등 자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국출원인들의 공동체 디자인 출원은 2003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 EU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 확대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 디자인의 권리자적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다만, 가입국에서 공동체 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을 갖는 가입국 내의 선 권리자는 그 권리가 선의로 취득된 경우 공동체의장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

(1)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채택

2001년 4월 EU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관한 EU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집행위원회와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3여년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통과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복제, 배포, 공중전달권 및 복제방지장치의 법적 보호를 통일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동 지침은 어떤 조건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 즉 사적 복제(회원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열거적인 목록화, 권리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의 통일, 복제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를 위한 예외규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다시 현행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012년 7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음악 사업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권리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제안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을 부흥시키고 온라인 침해를 경감시킬 것이라 생각되는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을 규정한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상기 지침안은 총 5개의 장, 44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3장의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이용허락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며, 다국적 이용 허락시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권한당국이 검토하도록 보장하고, 다국적 이용허락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및 실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작자에 대한 적절하고 지연 없는 배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안에 의하면 권리관리단체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후 1년까지 권리관리단체가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관리단체에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권리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안이 입법화되면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EU의 가치와 디지털 시대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 지침은 음악 산업에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리자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한 법적 틀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협회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한 점, 권리자를 빨리 찾아서 돈을 지급하도록 협회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부 창작자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EU는 소위 인터넷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했는데,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EU의 정보사회의 저작권 지침(2001/29/EC)에 반영되어 실행되어 왔다. 최근 EU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유럽의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유럽 전역의 연구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4/48)과 전자상거래 지침(2000/31)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EU 저작권 개혁법안 동향

2016년 9월 EU 집행위의 저작권 개혁법안(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 유럽의회에 제출된 이후, 온라인상 저작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대립으로 장기간 공전 중이던 동 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법사위 및 본회의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년여 간 논의 끝에 마련된 의회 수정법안을 토대로 EU 이사회와의 협의를 개시하는 결정을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한 본회의 표결(2018년 7월 5일)에서 동 안건이 부결되었다.

- (‘17.3.18)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 검토보고서 초안 상정

  * 당시 법안담당 보고위원(rappoteur)은 몰타 출신 Theresa Comodini Cachia 의원이었으나, 이후 현 독일출신 Axel Voss 의원(유럽국민당 그룹 소속)으로 변경

- (‘17.4.28) 수정법안(amendments) 법사위(the Legal Affairs Committee) 상정(총 996건의 수정법안 제출 및 논의)

- (‘17.6~’17.11) 관련 상임위 의견 제출

  * 내수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 /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 / 문화교육위원회, 시민자유정의 및 내무위원회

- ('18.6.20) EU 이사회와의 협의 개시를 위한 결정(the negotiating mandate) 채택 안건 법사위 표결 및 통과

  * 찬성 14, 반대 9, 기권 2표로 통과

- ('18.7.5) 동 안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40표 차이)

  * 유럽의회 절차규정(the EP's Rules of Procedure) 제69조(C)에 따르면, 상임위 표결을 토대로 EU 이사회와의 협의를 개시하는 건에 대해 전체 의원의 10%(76명) 이상 반대시, 동 결정을 최종 확정 내지 부결시키기 위한 본회의 표결 실시

- 동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 수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7.5(목) 본회의 개최 및 표결결과 부결

  * 반대 318표, 찬성 278표, 기권 31표

이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 토론 및 논의를 거쳐 차기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9월 12일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는 2배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표결참가 의원 총 703명중 찬성 438, 반대 226, 기권 39).

쟁점조항인 제11조 콘텐츠 사용료 부과조항과 제13조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저작물의 업로드에 대한 사전 필터링의무 부과 조항에 대한 반대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예외조항 등이 수정안에 반영되었던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사, 출판사를 비롯한 음악가, 공연자, 작가 등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공유플랫폼이나 구글 뉴스와 같은 뉴스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s)상에서 사용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제11조이다. 일명 링크세(link tax)라고 지칭되는 동 조항은 의회 수정안은 창작자와 언론·출판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fair pay)과 스타트업에 대한 예외 적용(encouraging start-ups)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회 채택안은 집행위 발의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온라인플랫폼과 뉴스제공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liability)범위에 스니펫(snippets)[9]도 포함됨에 따라, 구글 등의 경우 종래의 전형적인 서비스 방

식인 Google News상의 언론사 기사링크 행위에 대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스타트업과 유럽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소규모 인터넷 플랫폼(small and micro platforms)은 동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사를 소개하는 차원의 개인적 표현(individual words)을 덧붙인 기사링크 공유(sharing hyperlinks to articles)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예외를 인정하였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게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법여부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제13조는 제11조와 마찬가지로 제13조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반대진영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동 필터링 조치가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의회수정안에서는 업로드된 콘텐츠의 합법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필터링 조치가 비침해 저작물을 차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비롯하여, 합법적인 콘텐츠를 잘못 차단한 경우(wrongly taken down) 사용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rapid redress system)으로서 기계적인 알로리즘이 아니라 플랫폼 직원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시스템 구축 의무도 아울러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 수정안에도 있었던 내용으로서,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 S/W 플랫폼인 GitHub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상의 비상업적 업로드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작권침해 면책대상으로 인정하였다.

EU 회원국 차원에서 그간 스니펫세(snipptes tax)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고, 구글 등 거대 IT공룡들의 강력한 로비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9) 사전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 또는 정보의 일부를 뜻하며,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들이 각종 언론사들의 뉴스 제목과 두세 문장 정도의 기사내용 일부를 미리 보여주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스니펫은 이때 노출되는 뉴스 기사의 내용 일부를 의미한다. 구글은 언론사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해당 언론사의 트래픽 증가를 통해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며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캠페인을 통한 반대진영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아, 금번 표결 역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9월에 채택된 의회 수정안은 그간의 우려를 불식할만한 보완조항이 반영되면서, 유럽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이 채택되긴 했으나, EU 이사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입장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술공룡들의 로비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EU 이사회와의 협상을 통한 최종안 마련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저작권법 개혁법안 형식이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인 바, 지침의 입법취지는 준수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 국내입법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1조 및 제13조 등 쟁점조항과 관련된 이번 의회 수정안의 핵심 골자는 EU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 법안은 유럽의회 수정안을 토대로 EU이사회와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절충을 거쳐, 2019년 1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집행

(1) 개요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신 리스본 전략상 강력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물 추방에 관한 녹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집행수준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해마다 국경단속을 통해 적발, 압수한 위조물품의 수량, 금액 및 공급 국가별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제안들

2003년 1월에 집행위원회는 EU 국경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8년 동안 EU의 외부 국경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저작물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규정한 관세규정(EC/3295/94)을 보충한다. 또한, 2003년 1월에 관세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행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품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가.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집행지침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특히 최근 집행이 약한 회원국들의 집행조치에 관한 국내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동 제안은 권리소유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 법사위원회는 지침의 범위를 모든 불법저작물 및 위조품으로 확대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규정의 개정

개정의 목표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새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권리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양자가 동일하다. 법적 장치에 의하면 권리자는 당해 세관에 상품이 통관되는 것을 금지하여 압류하도록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관은 그 상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그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10일 이내에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세관은 그 상품을 통관시킨다.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상품의 폐기가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규정의 적용범위가 지리적 표시 및 식물 품종과 같은 새로운 지식 재산에까지 확대되었다.

b) 적용범위는 그 상품이 대규모 운반의 일부로 간주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론상 개인 여행자가 운반하는 비상업적인 성격의 상품까지 확대되었다.

c) 그 규정은 세관이 3일 동안은 권리자의 사전 신청이 없이도 임의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d) 권리자가 제공해야 할 수수료와 보증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권리자는 세관에서 상품을 억류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e)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신청서식도 표준화되었으며, 컴퓨터 신청도 장려되고 있다.

f) 세관은 권리자에게 상품의 성격, 출처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관은 소송제기를 위해 필요한 샘플도 제공할 수 있다.

g) 권리자는 당해 사건의 승소에 관한 사전조치 없이도 20일 이내에 그 상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후 6개월만인 2003년 7월에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울러 EU는 2008년 9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수행할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을 위한 세관의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27개 회원국의 40개의 민간기업, 집행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를 발족하여 범 유럽 차원의 위조상품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기구의 발족은 회원국 관계 당국과 이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전문성 및 침해정보를 공유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운영재원의 부족,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감시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위조상품 및 도용에 관한 감시기구의 기능을 OHIM에 위탁하는 규정(regulation)안[10]을 제출하였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상기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2012년 6월 5일부터 OHIM은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3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 9월 27일~28일 EU 집행위, EU 회원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OHIM의 심판원(Boards of Appeal)장을 역임한 Paul Maier가 초대 감시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감시기구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0) Draft regulation entrusting the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with certain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assembl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as a 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3)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U는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재권의 보호수준 강화 및 집행, 국경조치 등을 위한 세부 지재권 관련규정은 EU가 협상해 온 다수의 무역 협정에도 반영되어 왔다. EU는 2007년 이래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가 중미국가인 콜롬비아, 페루 등과 체결한 FTA는 지재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한 세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2년 9월에는 한-EU간 지재권 이슈의 양자협의를 위하여 IP 다이얼로그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입법 및 정책 진전 상황과 관련하여, EU측은 EU 단일 특허 추진, EU 상표법 개정,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고아저작물 관련 법안, 비농산물 지리적 표시 연구 등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한-EU FTA 및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의 협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상표 집행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U는 2007년 개시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논의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0년 10월 최종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EU의 ACTA 가입과정은 2012년 1월 26일 EU 22개 회원국이 일본 동경에서 ACTA 조약안에 서명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EU 시민들의 ACTA 반대운동은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중유럽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ACTA의 반대진영 측은 인터넷 접속의 자유 및 시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AC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의회는 2012년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AC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다수 의원의 반대로 ACTA가 최종 부결되었다. ACTA의 유럽의회 동의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2012년 1월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비준안 자체가 무효화되어, ACTA의 EU내 발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5)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관련 정책제안

2017년 11월 29일 EU 집행위 Jyrki Katainen(일자리, 성장, 투자 및 경쟁력담당 부집행위원장(Vice-President for Jobs, Growth, Investment & Competitiveness))과 Elzbieta Bienkowska(내수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 담당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위원단(The College)이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제안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Katainen 부집행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이 보다 잘 보호되고, 이를 통해 유럽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혁신과 창조(innovation and creativity) 분야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동 정책제안(initiatives)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간(cross-border) 소송을 촉진하는 한편, EU 역내 수입상품의 5%(850억 EUR)가 위조품 내지 불법복제품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고, 혁신에 대한 보상(rewarding companies for innovation)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라이선스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Katainen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수많은 기업가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안은 지식재산권의 적용과 집행(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PR) 측면을 개선하는 한편, 유럽에서의 기술 및 상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Bienkowska 집행위원은 지재권 집행과 관련하여 EU의 기업과 일자리에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의약품과 장난감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과 불법콘텐츠를 양산해내고 있는 지하경제의 거물(big fish)을 검거하는 데 총체적인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커텍티드카에 이르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확산에 유용한 특허 라이선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럽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조 및 해적품(Counterfeiting and piracy) 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범죄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업적 규모를 갖춘 IP침해자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소위 자금 추적(follow the money) 접근(approach)으로서 개인보다는 거물(big fish)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행조치로 간주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전역에 걸쳐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equally high level of legal protection)와 예측가능한 사법체계(predictable judicial framework) 보장을 위해 2004년 발효된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2004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ED)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은 지식재산권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abuse)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적절한 툴이었음을 입증해오긴 했으나, 일부 규정의 경우 그간 EU회원국 사이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지침 제정 없이 규정에 대한 해

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을 높이는 한편, EU 전역에 걸쳐 민간부문 차원의 집행조치를 적극 장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IP 침해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거둔 그간의 긍정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산업계가 주도하는 IP침해 대응계획을 지속 지원할 방침(support Industry-led initiatives to combat IP infringements)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차원의 대응은 주로 웹사이트상의 광고 관련 협약 외에도 지불/배송 서비스업체와의 자발적인 협약 등인데, 이러한 협약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사법조치 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시장에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 감축도 주요 목표중의 하나이다. 집행위는 제3세계 국가(중국, 동남아시아, 남미)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IP침해에 관련되거나 실질적으로 IP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리스트(Watch-list) 작성을 제안하면서, 제3세계에서의 IP침해 실태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시스템 구축을 위해 WiFi나 4G와 같이 글로벌 산업표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많은 핵심기술들은 표준필수특허(SEP)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아래의 두가지 목표가 서로 조화를 이룬 균형있고 효율적인 표준필수특허 시스템 관련 지침과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제품 제조자의 입장으로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라이선스 룰에 따라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는 특허권자가 표준에 반영된 그들의 최고 기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R&D 및 표준화활동 관련 투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룬 표준필수특허 시스템 구축을 통해 EU가 글로벌 기술혁신경쟁을 리드하는 한편, 차세대통신기술인 5G와 사물인터넷 분야를 선점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을 밝혔다.

EU역외시장에 대한 지재권침해 감시리스트(Counterfeiting and Piracy Watch List) 관련하여, EU집행위는 11월 정책제안상의 일정대로 2018년 4월 EU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침해 관련 온오프라인 시장(마켓)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하였다. 제출된 의견과 증거 등에 대해서는 EU 유관기관(Europol, EUIPO) 등과 협조하여 관련내용 검토를 거쳐 2018년내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동 리스트는 법적/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리스트에 등재된 민간 시장(주요 타겟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집행위는 밝히고 있다.

경쟁정책

개요

EU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며, 시장 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카르텔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는 EU집행위의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되어 있다.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2013년 5월)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년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간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8.6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0~2014년간 총 76억 유로, 2015~2017년 9월말까지 총 6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부과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년 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년 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제조사업자간의 14년 동안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경쟁법 사건 사상최대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카르텔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컨테이너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종결처리 하였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년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20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2014년 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IT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우선 EU경쟁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24.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소비자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회사의 쇼핑서비스(구글쇼핑)의 결과를 검색결과의 최상단이나 경쟁서비스 보다 더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조사에 착수하였고, 불과 1년여 만인 2016년 4월 안드로이드 OS관련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2015년 7월에는 미국의 퀄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장에서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불과 5개월만인 2015년 12월 퀄컴이 EU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적 결론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는 등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위반 판단 없이 2014년 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년 1월 EU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2년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수장인 Joaquin Almunia집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센싱프레임웍이 모범적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년 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측에 송부하였는데, 현재 Gazprom이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2017년 3월 개시)를 거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Gazprom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큰 문제가 없다면 EU 경쟁당국은 Gazprom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기업결합 규율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을 불허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만 HeidelbergCement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년 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현재는 기업결합신고기준(notification threshhold)으로 매출액(turnover)뿐만 아니라 자산(assets), 기업결합금액(the value of a merger) 등을 포함하는 방안, 소수지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책 및 제도개선

EU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에 각료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년내(2016년 12월 27일까지)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에도 상향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년 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다.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

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보조금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EU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와 스타벅스(Starbucks)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 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애플에 대한 조세특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였다. 현재도 맥도날드에 대한 룩셈부르크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2년 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년 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

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관

서비스 산업이 EU의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이처럼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은 대외시장개방과 내부시장 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거 상당한 분야에 걸쳐 최혜국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별 제한정도와 대상산업도 상이하다. EU가 개방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EU는 통합정도가 매우 높은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분야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Service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EU집행위는 국별 이행실적을 다

양한 방식으로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체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의무 대폭 확대
④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자격요건(requirements) 폐지
⑤ 개별 회원국내 영업허가시 전 회원국에 적용 등

이 지침은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에는 적용되나, 사회보장 등 공익서비스와 라디오·TV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1]

한편, 2010년 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①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④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 건설 및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⑥ 환경서비스, ⑦ 금융서비스, ⑧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⑨ 운송보조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수준은 WTO/DDA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11) 금융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보건서비스 등은 상기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시장통합은 별개의 EU법령으로 추진된다.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쳐져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2017년 5월 10일에는 지난 2년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밝힌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중간보고서에서는 EU 집행위는 17개의 법령 제·개정안 제안과 18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90~790 MHz 대역 주파수 배정,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간 이동성 보장, 6.14 역내 휴대폰 로밍비 폐지 관련 법령은 순조롭게 입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나머지 법령 제·개정은 회원국간 이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비개인정보(non-personal data)의 회원국간 이동촉진, 사이버 보안 분야 표준, 인증 정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 행위 근절 등의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년 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런던에 소재한 유럽은행감독청은 2017년 11월, 프랑스 파리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

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 ·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년 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은행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년 1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권한부터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

을 위해 소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발표되어 예금보장한도, 예금보장 지급기간, 예금보장기금,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6년 1월에는 EU 내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함으로써 부실은행 회생 및 정리 체계의 일원화가 구축되었다. 은행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식으로 8년 내 550억 유로의 은행정리기금을 조성하고 은행 정리시 손실분담(bail-in) 원칙에 따라 은행이 총 부채의 8%를 부담한 경우에만 해당 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까지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을 2015년 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 · 인프라 분야 등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통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 · 비상장 기업 지원,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 · 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ing)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1월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추가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총 3,150억 유로의 투자 창출을 목표로 210억 유로의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조성하고 인프라 및 혁신 사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 중이다. 한편 2017년 9월에는 동 계획의 시행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투자유발목표도 최소 5,000억 유로로 확대하였다.

(3) 운송

EU 운송 산업은 EU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약 1천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EU 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은 EU의 지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EU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송서비스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U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간 EU 집행위는 공동교통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이를 제시해왔다. 2001년에는 향후 10년간의 교통정책의 목표, 관점 전략 등을 제시하는 백서(White Paper-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를 통해 60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EU 집행위는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자원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교통백서(White Paper 2011: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를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교통의 이동성(mobility)을 증가시키면서도 배출가스(emission)의 양은 감소시키기 위해 2050년까지 통합된 단일유럽교통지역(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10대 구체목표 및 세부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감축(2030년까지 50%, 2050년 0%수준으로)할 예정이며, 도로화물(300km 이상 이동시)을 철도 및 수상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 전환(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하고, 중거리 이동의 주요수단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내 고속철도망을 현재의 3배로 증설한다. 또한 2050년까지 항공분야에서 저탄소연료 사용률을 40%까지 증대시키며, 해운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8개국(인구 10억)을 포괄하는 유럽 단일항공지

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구축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항공 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U는 위성항행분야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 전역에서의 철도화물 운송추적, 위험물 운송추적 등을 통해 운송의 정시성(punctuality)과 안전성(safety)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지역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및 증대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유럽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범유럽교통망(TEN-T) 프로그램 기금,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 통합기금(Cohesion Fund) 및 유럽개발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유상개발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1일, EU 집행위는 첫 백서(The implementation report on the 2011 White Paper on Transport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as of 01-July-2016) 이행 보고서를 통해 현시점에서 백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로서, 2030년까지 도시내 재래식 연료 사용차량을 50% 수준으로 절감하는 등 대부분의 목표달성에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더불어 이동성과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패키지가 수립되어야 하는 바, 운송 공동화(co-modality) 등 교통 인프라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유럽내 일원화된 도로 기준마련과 도로 안전성 강화 등의 도전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다.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 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년 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년 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였다.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년 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15년간의 기나긴 정부독점 개방 및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Deutche Post 및 TNT 등 과거 정부 독점사업자에서 민영화된 사업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개관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며,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2017년 총 국민소득(GDP)은 1,802억 유로(그리스 통계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310불(IMF, 2018년 10월)이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업, 해운업 등이다. 아울러, 그리스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그리스의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10,736만 명(그리스 통계청)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스는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국민소득이 25% 정도 감소되었고, 실업률도 25%를 상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호황, 관광객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최근에는 실업률이 20%대 이하로 하락하였고, 2017년에는 1.5% 성장하여 위기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8년 8월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EU, IMF 등 채권단의 긴축 및 구조개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제금융 지원이 성공리 종료되었다. 지난 8년 동안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대규모 민영화 사업, 전자정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는 기존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다

방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동향

구제금융

그리스 정부는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동 구제금융 협정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연금 합리화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설정과 정치경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2018년 8월 20일 유럽안정화기구(ESM)는 2015년 8월 시작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발표함에 따라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EU 집행위, ECB, IMF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으로부터 약 2,887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공식 종료 되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규모

(단위 : 억 유로)

	1차 (2010~12)	2차 (2012~15)	3차 (2015~18)	합계
	730	1,538	619	2,887
▲ 유럽 국가	529	-	-	529
▲ IMF	201	120	-	321
▲ EFSF / ESM*	-	1,418	619	2,037

* 2차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 3차는 유럽안정화기구(ESM)

구제금융 기간 동안 그리스는 EU(EFSF, ESM)로부터 장기(평균 상환기간 약 32년)와 저리(1.65%, 2018.3월)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20억 유로, GDP 대비 6.7% 수준이다. 아울러 2017년 단기 부채경감 대책, 2018년 6월 중기 부채경감 대책 등으로 통해 국가부채

비율 전망이 2060년에 약 30%p 하락 (127%→96.8%)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2022년까지 기초재정수지흑자를 GDP 대비 3.5%를 유지해야 하므로,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채권단은 매분기별로 그리스 재정상황, 개혁프로그램 이행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EU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ESM은 부채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가동하여 단기 유동성, 시장접근 상황,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등 점검 예정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동향

그리스 경제는 세계경기 회복, 관광객 증가, 수출호조 등으로 2017년 1.5%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여 경제위기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 상반기는 2.2% 성장률을 기록하여 금년도 전망치인 2.1%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에 그리스 정부는 2.5%, IMF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올해 성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이태리·터키의 경제상황, 브렉시트, 무역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아울러 2019 1월부터 실시하기로 채권단과 합의된 연금 삭감(GDP 1% 수준)에 대해서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문제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2018년 8월 구제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독자적 경제운용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에서 개최된 제83차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Thessaloniki International Fair)개막식에서 향후 4년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였다. 구제금융 지원 종료 이후 그리스는 △공정한 성장(fair growth)과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중점을 둔 사회국가(social state)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의 역동력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며, △일자리 및 고용창출 등 노동력 강화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이행조치를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그리스 의회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했던 긴축정책을 완화하여 세금을 인하하고, 복지 및 실업지원 등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조합(new policy mix)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보호 확충 등을 목표로 하며, △개인과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보호 확충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금삭감 여부는 2019년 예산안에 예산삭감을 포함한 안과 그렇지 않은 안, 두 가지(two scenarios)를 모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EU 등 채권단과 협상결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최대 산업은 관광업으로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그리스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3,200만 명 수준이며, 그리스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박의 약 20%, EU 선박의 약 50%를 차지하는 최대 해운 강국이나, 선주들의 편의치적[12]으로 인해 그리스 국가경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12)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세금을 줄이고 값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선주가 소유한 선박을 자국에 등록시키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

그리스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	-5.5	-9.1	-7.3	-3.2	0.7	-0.3	-0.2	1.5
GDP (십억 유로)	226.0	207.0	191.2	180.7	178.7	177.2	176.5	180.2
물가상승률 (%)	4.7	3.3	1.5	-0.9	-1.3	-1.7	-0.8	1.1
실업률 (%)	12.7	17.9	24.4	27.5	26.5	24.9	23.5	21.5
청년실업률 (%)	24.4	34.8	43.7	48.7	45.0	41.3	38.4	37.0
재정수지 (% of GDP)	-11.2	-10.3	-8.9	-13.2	-3.6	-5.6	0.5	0.8
기초재정수지 (% of GDP)	-5.3	-3.0	-3.8	-9.1	0.4	-2.1	3.7	3.9
국가부채 (% of GDP)	146.2	172.1	159.6	177.4	178.9	175.9	178.5	176.1
경상수지 (% of GDP)	-11.4	-10.0	-3.8	-2.0	-1.6	-0.2	-1.1	-0.8
무역수지 (% of GDP)	-8.1	-6.1	-3.8	-2.8	-2.2	-0.2	-0.7	-0.5

출처 : 그리스 통계청, 유로통계청, WTO, IMF 등

교역 환경

무역 장벽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 무역관련 주요 정책은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다. 또한 한-EU FTA 발효로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그리스 수출입 동향

한-그리스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9월
수출	1,049	1,313	2,718	1,628	809
수입	411	247	175	446	435
무역수지	638	1,066	2,543	1,182	374

출처 : 한국무역협회

그리스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바, 그간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상대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16.3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그리스는 우리나라에 4.5억 달러를 수출하여, 우리나라는 11.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동 규모는 전년대비보다 대폭 감소된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그리스 수출의 약 80%가 선박에 집중되고 있는 점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글로벌 해운시장 불황에 따라 우리 기업의 선박수주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스로 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기타비금속광물, 의약품, 기타 농산 가공품, 연초류, 음료 등이며, 최근 와인, 올리브유 등 농산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2017년 수입규모는 4.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2018년 9월 기준도 4.3억 달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 현황

(단위: US $ 천, %)

품목명	2017년		2018년(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선박	**1,332,990**	-44.8	561,880	-52.5
합성수지	**64,617**	7.1	53,050	9.5
중후판	**39,079**	118.4	25,759	-11.0
석유화학합성원료	**27,106**	-1.5	40,671	81.6
열연강판	**20,945**	-47.2	5,517	-73.6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 한국무역협회 통계

(단위: US $ 천, %)

품목명	2017년		2018년(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나프타	320,409	188.4	337,581	43.0
기타 금속광물	18,531	4.3	32,585	124.0
선박	10,523	2496.5	0	-100.0
연초류	6,063	19.7	7,643	29.7
기타비금속광물	4,690	-5.9	3,796	-2.2

출처 : 한국무역협회

선박 및 선박기자재 수출 시장

2017년말 기준 그리스 선주의 선박은 4,746척이며, 재화중량톤수는 3.6억 톤으로 전 세계 선박의 19.89%, EU 선박의 49.15%를 차지한다(그리스 선주협회 홈페이지). 2018년 1~9월 동안 그리스 선주는 총76척 36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을 발주하였으며, 이 중 한국 조선사는 그리스 선주로부터 52척 292만 CGT(CGT 기준 80.5%)를 수주하여 그리스 선주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최대 고객인 상황이다. 특히, 고부가가치인 LNG 선박의 경우 그리스 선주가 발주한 선박 23척 전부를 한국 조선사가 수주하여 세계 1위의 해운 강국인 그리스와 조선 1위인 우리나라와 해운·조선 분야의 윈-윈 협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박 수출과 함께 선박용 기자재 수출 현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기자재 수출은 약 5백만 수준으로 작년 수출(1.4백만 달러)의 3.5배를 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7월 아테네에서 한국의 A기업이 그리스 B선주사와 탈황장치(스크러버) 약 1억 달러 수주계약에 성공하였다.

앞으로 강화되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에 발맞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는 그리스 선주사와의 더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그리스대사관은 2018년 6월 포시도니아 해운박람회 기간에 제2차 한-그리스 해양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해운·조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사관에서는 그리스 유력 선주, 해양부 장관 등 고위급과 별도 접촉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들 지역의 관문 국가이다.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 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임금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동 분야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도 과거 보다 유연해 진 점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19년 예산안 발표시 구제금융 종료 이후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현행 29%에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p 인하하여 25%로 낮추고, 배당소득세도 현행 15%에서 2020년부터 5%p인하하여 10%로 낮추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반면 현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다. 아울러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M&A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의 통신, IT, 식음료, 담배 및 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및 현금 지

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 직접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데,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 해소를 위하여 1996년에 무역투자청(Enterprise Greece)을 설립하고 2010년에는 회사설립간소화(One Stop Sho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서류 공증 등이 그리스어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개선 체감도는 낮다는 평이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 발표한 세계경쟁력 지수(World Competitive Index)에서 그리스는 전체 140개 평가대상국 중 57위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4단계 하락하였다. 최근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12개 지표중 노동시장(107위)과 금융시스템(114위)로 특히 낮아 여전히 기업투자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규제(131위), 법적분쟁해결의 효율성(133위), 토지행정의 질(135위), 임금결정의 신축성(110위), 중소기업 금융지원(137위), 은행의 건전성(137위) 등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지표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WEF 평가 2018년 그리스 주요 지표 순위(총 140개국 대상)

구분	순위	구분	순위
Institutions	87위	7. Product Market	63위
2. Infrastructure	38위	8. Labor Market	107위
3. ICT adoption	57위	9. Financial System	114위
4. Macroeconomic ability	83위	10. Market Size	58위
5. Health	21위	11. Business Dynamism	72위
6. Skills	39위	12. Innovation Capability	44위

출처 :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

환경이 개선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절대금액 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수정한 그리스 투자유치법(Law 4146/201311)에 따르면, 외국인의 그리스 투자 시 5천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현금지원 정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서는 그리스 투자무역진흥공사(Enterprise Greece) 또는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한 신청 기간이 없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www.ependyseis.gr) 신청도 가능하다.

투자유치법은 일반 기업설립, 기술개발투자, 지역맞춤형 투자, 청년 기업창업,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 파트너십 형태, 연간 다목적 비즈니스 사업(Integrated Multi-Annual Business Plans) 투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그리스의 투자유치는 국제경쟁력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별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승인받을 경우 자금대출, 이자율 감면,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 제공을 주요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 생산분야이며 다음으로 는 관광 등 서비스업종이다. 각종 인센티브는 투자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외국인의 그리스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 정부는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 단위를 변경했다.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1.5억 유로에서 5천만 유로로 축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50만 유로 이상, 소기업 30만 유로 이상,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20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설립될 투자기업의 형태로는 30만 유로 이하의 투자일 경우 단독 투자기업이어야 한다. 3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상업적 용도의 기업(Commercial Companies) 또는 협동조합(Cooperatives)의 형태일 경우에 투자가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한국의 對그리스 투자는 총 60건, 3,134만 불(누계 기준)이며, 대부분의 투자는 현지 지상사 사무소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그리스의 對한국 투자는 총 9건, 1,100만 불(누계기준)이다. 2017년 한국의 A사가 그리스의 문서-음성변환(text-to-speech) 기술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인수하였고, 2018년에는 B사가 그리스 전력공사와 변전소 설치 계약을 수주하는 등 조선, 전자제품 위주의 투자와 교역을 벗어나 첨단기술 등으로 협력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민영화 사업 추진 현황

치프라스 정부는 2015년 1월 출범 초기에는 국유자산 민영화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 체결 이후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대규모 민영화 사업을 경제개혁조치중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측은 2015년 12월 지방 주요 14개 공항 운영권을 40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독일 Fraport와 체결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중국 Cosco와 피레우스 항만공사의 지분 67%를 매각하는 민영화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6년 7월 이탈리아 철도공사는 그리스 철도공사의 100% 지분 매각 사업의 참여자로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2017년 4월, 독일(Deutsche Invest Equity Partners), 프랑스(Terminal Link) 등 컨소시엄이 테살로니키 항만공사의 지분 67%를 인수하였고, 2014년 3월, 그리스 Lamda 개발은 중국 Fosun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9억 1,500만 유로에 99년간 Hellenikon 구공항 부지 개발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민영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3차 구제금융협정에 따른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50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민영화 기금을 신설하였다.

2017년 9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그리스에 향후 3년 동안(2018~2020년) 70억 유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주그리스

미국대사도 그리스와 불가리아간 송유관 등 북부 그리스 투자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 투자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인·허가 지연, 환경 및 문화재 훼손 문제, 소송 제기, 노조반발 등으로 일부 민영화 또는 외국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 Eldorado Gold사는 그리스 정부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 7.5천만 유로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구공항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녹지보호, 고고학 유물보호 등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2018년 1월 그리스 대법원의 구공항부지 개발에 대해 조건부 허가 판결을 내려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그리스 철도공사의 Trinose 인수 및 민영화는 노조의 민영화 반대와 임금협상 결렬 등에 따른 노조파업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 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그리스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사치세, 연대세(solidarity tax) 등 세율 인상,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 사전 징수제도 도입, △탈세 근절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각종 세금 조정 법안(4389/2016)을 개정했다.

개인소득세는 기존 9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세율은 22% ~ 45%로 조정하였다. 법인세는 기존 26%에서 29%로 인상하였다.

개인소득세 세율 변동

개혁이전		개혁이후(2016년~)	
소득	세율	소득	세율
12,000 이하	0%	20,000 이하	22%
12,001~16,000	18%		

개혁이전		개혁이후(2016년~)	
소득	세율	소득	세율
16,001~22,000	24%	20,001~30,000	29%
22,001~26,000	26%		
26,001~32,000	32%	30,001~40,000	37%
32,001~40,000	36%		
40,001~60,000	38%	40,000 이상	45%
60,001~100,000	40%		
100,001 이상	45%		

법인세 세율 변동

2010	2011~2012	2013~2014	2015~
24%	20%	26%	29%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기존의 3단계 세율체계 유지하되, 감면세율 품목을 기본세율 품목으로 대폭 조정하여 감면세율 품목 비중이 기존 37%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기본세율은 1%p 인상(23→24%, 2016년~)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율 변동 및 품목비중 변동

종류	세율변동				품목비중 변동	
	2010.3 이전	2010.7~ 2010.12	2011~ 2016.6	2016.6~	개혁 이전	개혁 이후
① 기본세율	19%	23%	23%	24%	33.6%	62.4%
② 감면세율	9.0%	11%	13%	13%	37.2%	10.3%
③ 초감면세율	4.5%	5.5%	6.5%	6.0%	3.6%	1.8%
④ 면세					25.5%	25.5%

IMF 보고서는 그리스에서의 탈세 규모가 연간 280억 유로 수준으로,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그리스 정부는 탈세 근절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신용/현금 카드 결제 단말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대처방안으로 2종 및 3종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회사, 법인, 또는 지사에 대해 연 300~500유로의 기업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연간 12,000 유로 이상 소득 근로자들 대상으로 2.2%~10.0% 특별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낡은 조세행정을 혁신하고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립적인 징세기구(IAPR, Independent Authority for Public Revenue)를 2017년 1월 출범시켰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과제로 삼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對그리스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은 설립 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효율성이다. 그리스 무역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사업들은 지자체 등의 행정 비효율이나 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종업원 해고, 휴가 제공, 각종 법정 상여금 지급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공무원까지도 파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발생시 파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개발·경쟁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의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빈번한 입찰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U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 기술적 사양이 EU회원국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비EU회원국 기업의 경우 동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입찰 공고시 EU 기관에서 발급한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 EU 내 국가에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 등 EU 국가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 C사는 2014년 그리스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기사업이며, C사는 2017년에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였고,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7년 11월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티켓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티켓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재 전 구간에서 운영 중이다.

노동 시장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 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권은 없다.

그리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현지 노동법에는 주당 40~48시간 근무 시 월 급여 기준 시간당 수당의 25% 추가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100%의 추가지급이 필수이다. 연간 휴가일은 주 5일 근무자는 순수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연간 20일~25일이다. 아울러 사회보장 기여금은 직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월급의 총 41.06%에 해당하는 보험연금공단 기여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6%, 고용주가 25.06%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스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히 요구된다.

한편,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과제로 삼고 △공공 부문 정리해고, △직종별 단체계약 폐지, △일반 기업의 대량 해고 시 상한선 상향 조정(2%→4%), △해고시 보상금을 50% 수준으로 축소, △집단해고시 노동부 장관의 승인 폐지, △해고 통지기간 단축(6 →4개월), △파업요건 강화(근로자 1/3이상 찬성 → 1/2 이상 찬성) 등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다만, 이러한 개혁내용은 최근 구제금융 종료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등 그동안 도입된 노동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물 에너지 개발

그리스는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갈탄의 경우,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2011년 1월 환경에너지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트라키, 카발라 지방에 금 420톤, 은 2100톤, 니켈 6.5백만 톤, 크롬 1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자원들의 개발을 위해 지질광물연구소 설립을 결정하였다.

원유는 1975년에 설립된 국영석유회사(이후 ELPE로 개명)가 1981년부터 북부 에게해의 프리노(Prino) 근해 해저에서 원유시추를 시작하였다. 이 해저유전으로부터 1983~85년 간 하루 평균 2만 6천-3만 배럴, 총 1억 2천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당시 하루 평균 2십만 배럴을 소모하던 그리스 총 수요의 13%를 충당하였다. 현재 프리노 해저유전은 높은 유황 함량의 저품질, 저가의 소량만이 생산되며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국영석유공사(ELPE)의 자회사인 ELDA, EKO 등 정유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미 1874년부터 그리스 수역에 유전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터키와의 에게해 대륙붕 및 영해 분쟁으로 인해 최근까지 석유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2005년 Royal Dutch-Shell사는 당시 국가발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동사의 위성사진 분석 및 연구를 토대로 그리스 원유시추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탐사를 제안하였다. Royal Dutch- Shell사는 탐사 가능 지역으로 중앙 및 북부 에게해 영역, 일곱 도서지역(Eptanisa)으로부터 북부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의 이오니아해 영역, 에게해 동부 12도서 영역(Dodekanisa), 그리스 북서부 이리로스(Ipeiros) 영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총 20~40억 배럴의 원유시추가 가능하고, 석유탐사 가능성도 경제성 판단 기준인 0.8%를 훨씬 넘는 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2015년 터키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목표로 그리스 서부와 남부(크레테 섬 남부)의 영해 내 유전탐사에 대한 국제입찰을 진행하여 개발사를 물색한바 있다.

그리스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를 원유 및 천연가스의 해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풍부한 갈탄을 연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그리스-이탈리아 남부로 이어지는 TAP(Trans Adriatic Pipeline) 가스관, SCP(South Caucus Pipeline) 가스관 등의 사업에 적

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관 및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남부 유럽 에너지 수송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가스관 연결, 해상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남부 유럽 에너지 수송 허브로 부상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리스는 아제르바이잔 가스전을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 남부로 연결하는 TAP(Trans Adriatic Pipeline),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연결하는 IGB(Italia-Greece-Bulgaria), 동부 지중해를 연결하는 EastMed 등 다양한 가스관 연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TAP 관련 10여개국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살로니키에서 TAP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그리스는 동북부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로폴리에 해상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체류허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분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네덜란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네덜란드 경제 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EU 경기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2007년 경기회복 시기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네덜란드는 2009년 -3.3%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2012년 -1.1%, 2013년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4년부터 국내 재정건전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네덜란드도 경제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여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국내외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및 가계소비 증가로 2016년에는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부터는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어 2.9%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은 2.8%, 2019년에는 2.6% 등 유럽 평균 전망치(2017 2.4%, 2018 2.1%, 2019 1.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민간투자와 소비의 확대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건물, 운송수단, 장비,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제조산업 분야에 걸쳐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에서는 의류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자동차, 부동산 임대 등 대규모 소비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기신뢰지수 상승 및 생산·투자확대, 일자리 증대에 따른 실업률 하락 등 내적요인과 세계·유럽 경제상황 호전 등 외부적 요인 모두 긍정적으로 2019년에도 경제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테러 확산 등 지정학적 긴장,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른 세계경기 변동성 확대는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 또한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2.2	2.9	2.8	2.6
민간소비	1.1	1.9	2.7	2.3
정부지출	1.3	1.1	2.0	2.8
민간투자	-6.7	4.4	4.6	4.1
수 출	1.7	5.3	3.0	4.2
수 입	-2.0	4.9	3.3	4.8
물가상승률	0.1	1.3	1.6	2.5
실업률	6.0	4.9	3.9	3.5
재정적자	0.0	1.2	0.9	1.0

출처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 (CPB) 2018년 9월 발표)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네덜란드는 한국내 투자의 9위 진출국이며 유럽 내 최대 투자진출국이다. 2018년 7월 누적 기준 총 911건, 156억 달러가 투자신고 됐다. 네덜란드는 신고건당 투자금액이 매우 큰 편으로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투자 건의 0.49%에 불과하나,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79% 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2년과 2013년 2년간 전체 누적투자금액의 30%에 가까운 약 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네덜란드로의 투자도 급감했다. 2012년~13년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광업과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이후 감소해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2016년 약 1억 달러(45건)에 머물렀던 신규투자액은 2017년 2.8억 달러(62건)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8년 7월 현재 4백만 달러(10건)에 그치는 등 신규투자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르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덜란드에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광업으로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한국전력공사의 사우디 라빅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등 우회투자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 R&D 투자진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네덜란드 반도체 부품장비기업 대상 R&D 투자건이 일어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투자액도 크게 증가했다.

투자환경

네덜란드는 2017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세계 190여개국 중 32위를 차치(2017)하는 등 우수한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무역강국답게 국경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출입 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공조를 통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https://business.gov.nl)를 통해 외국기업에게도 사업자 등록, 통관 등 네덜란드내 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 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스키폴 공항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배송품질 가격, 통관의 용이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세계물류성과지수(World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2018년 6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물류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송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 접속하여 통관 처리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와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inding Origin Information(BOI))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www.nfia.nl),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https://www. iamsterdam.com/en/business), 로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Rotterdam Partners(https://en.rotterdampartners.nl) 등 지역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특히 NFIA는 서울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내 서울사무소(www.nfia-korea.com)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IN Amsterdam(www.iamsterdam.com)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는 특별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 정책은 없다. 투자 또한 어떤 외국기업이더라도 네덜란드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별다른 제재나 특별한 제약이 없다.

네덜란드인들은 영어구사력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는 네덜란드어를 하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 모두 네덜란드어로만 제공되고, 공문서 역시 네덜란드어로만 발행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진출 시 중요한 문서를 번역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구직원의 태업 및 직원과의 노사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영구직원의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이와 같은 노무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인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하는 진출기업들이 많다. 영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경우 고등학력을 갖추고 현지화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유연하지만, 네덜란드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 풀

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물론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같은 임금 수준에서 네덜란드 내 채용 가능한 인력이 제한적이며, 또한 기본적인 IT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노무관리의 또 다른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차별금지나 업무 부하 등의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꼽는다. 일례로 네덜란드에서는 차별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직원들 간 갈등으로 빚어진 불만이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이에 대한 조정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사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거나 잦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를 통해서

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 수입규제 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의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되었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건강·경제·환경과 연관된 일부 민감한 품목(VGEM, Veiligheid, Gezondheid, Economie, Milieu)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다음의 제품들은 이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된 품목군이다.

- 폐기물(Waste materials)
- 멸종 위기 동식물
- 문화적 물품(예술품, 골동품 등)
- 동물 사료
- 의약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 전략물자(군사물품 또는 민군 공용 물품)
- 마약류
- 무기 및 탄약
- 환경 유해 물질
- 동물 실험 화장품
- 불법 벌채된 목제품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및 철폐되고 있지만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CE마크 제도, 에너지 라벨링 및 기타 환경규제(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리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시일내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EU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타 EU국가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가 부가된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제품에 21%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일부 식품류에 대해서는 6%를 부과한다. 이외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 그리고 쥬스 등 비알콜성 음료에 대해 소비세(consumption tax)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물품세, 소비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www.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EORI 번호 (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년 1월 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년 1월 31일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엄격 시행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네덜란드 관세청(http://www.belastingdienst.nl)에서 신청서(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일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소요 시간 및 제출 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

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다만 EDI를 통해 통관 이후에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ling List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e Norm)에서 관리하고 있다. NEN은 3만 개 이상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에만 적용되는 것은 1,500개가량으로 추정된다. 모든 표준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회사, 소비자,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NEN 홈페이지(www.nen.nl)에서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을 유로로 구매해 열람할 수 있다.

강제인증

(1) CE마킹 제도(EU 공통)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가

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4개 카테고리 품목에 CE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CE 인증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네덜란드 인정기관(RvA; Raad voor Accreditatie, www.kiwa.nl)는 DEKRA Certification(www.dekra-certification.com) 등 47개 기관에서 C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CE 인증기관은 다음의 링크(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country.notifiedbody&cou_id=528)에서 확인 가능하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유럽연합은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11/65/EU)을 통해 해로운 물질의 규제치 이상(납 0.1%, 수은 0.1% 등)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SGS Nederland B.V., Intertek, TUV Rheinland 등에서 RoH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 WEEE –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제(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됐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WEEE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네덜란드 내의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Het Nationaal (W)EEE Register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매년 전년도에 WEEE 마크를 붙이고 시장에 판매하고, 수출, 회수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4) 에너지 라벨(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

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건물에는 405유로, 상업용 건물에는 최대 2만 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물 에너지라벨은 녹색 A등급부터 적색 G등급까지 나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단열재 사용, 이중창, 에너지절약 난방장치, 태양전지판 등의 기기 및 재료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라벨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2017년 상반기에 총 62,000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라벨을 보유한 주택은 평균적으로 6,000유로 비싸고, 판매에 1개월이 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의 주택은 A, B 등급, 15%는 F, G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5) 측량도구에 대한 인증(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초가 되는 측량 도구에 대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2일 'Metrologiewet(Metrology act)'에 의거해 측량도구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해당되는 측량도구들은 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 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측량도구에 관한 인증을 총 관리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제부는 다양한 기관들에게 측량도구들의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및 유럽에 측량도구를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아래의 네덜란드 인증 담당기관을 접촉해 해당 도구에 대한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Kalibra(http://www.kalibra.nl), Kema Nederland(http://www.dnvgl.com), Kiwa(http://www.kiwa.nl), NMi Certin(http://www.nmi.nl), SGS Nederland (http://www.sgs.com)

자율인증

(1)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EU 공통)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749개의 유기농 농장과 2,736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2) 에코라벨(EU 공통)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9월말 기준 다목적 세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SMK(www.smk.nl)를 통해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 KEMA-Keur 인증(네덜란드)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 에너지 컨설팅 및 전기 안전 테스트 회사)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적

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기 검사에도 수천유로가 소요된다.

인증대상 품목은 건식 전원변압기, 고정된 전기설비 스위치, 금속 스위치, 라인트랩, 방폭퓨즈, 변압기, 부스바, 스위치기어, 안정기, 저항기, 전기라우터 및 에지트리머, 전류제한퓨즈, 전압변압기, 전원변압기, 전원케이블, 절연기, 절연부스, 접지스위치, 케이블, 케이블접속기, 케이블종단접속재, 클램프, 타일, 트랜스포머, 퓨즈복합기, 회로차단기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http://www.dekra-certificati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4) KOMO 인증(네덜란드)

네덜란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필수인증인 CE 인증에 더하여 KOMO 인증을 취급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CE 인증이 자기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높은 대외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 KOMO 인증은 네덜란드 건축법(Bouwbesluit)과 토질법(Besluit bodemkwaliteit)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KOMO 재단(Stichting KOMO, https://www.komo.nl)에서 관리하고 있다.

(5) PEGI 인증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는 게임에 대한 연령제한등급 라벨로,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PEGI 인증은 벨기에에 소재한 ISFE(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에 의해 2003년 도입됐으며, 약 30개 유럽 국가들의 연령등급제도를 통합하고 있다. PEGI 인증은 자율 인증이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은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PEGI 라벨은 게임 포장지에 이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형태로 부착된다. 연령 레벨은 게임의 난이도나 필요한 기술과는 상관없으며, 유해성 또는 적합성만을 기준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NICAM(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edia, www.kijkwijzer.nl)와 영국의 VSC(Video Standards Council)은 PEGI 시스템을 관리하고 등급을 체크한다. 3, 7세 연령에 해당하는 게임은 NICAM에서 관리하고, 12, 16, 18세 이상 게임들은 VSC에서 관장한다. PEGI 라벨과 관련한 정보는 www.pegi.info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6) 채식 인증(V-Label)

V-label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2017년 12월 기준 현재 네덜란드에서 채식인증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네덜란드 식품기업 Unilever는 유럽채식연합(EVU)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Unilever 500개 제품에 EVU의 채식인증마크 V-label을 부착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시장에 제품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제품이 유럽채식연합 또는 네덜란드 채식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채식인증을 받는다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https://www.v-label.eu/faq)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52% 등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글로벌 경제중심으로서 기업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2019년 각 세율구간에 19%,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17.5%, 22.5%의 세율을, 최종 2021년에는 16%, 21%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저축·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직업소득에 대한 세율

소득구간	세율
0유로-20,143유로 이하	36.55%
20,143유로 초과-33,994유로 이하	40.85%
33,995유로 초과-68,057유로 이하	40.85%
68,057유로 초과	51,95%

* 사회보장 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28.15% 포함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 가입 등에 있어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또는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BTW)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년 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식품, 물, 농산품,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6%의 예외적으로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download.belastingdienst.nl/itd/beleid/ob30003.pdf

2013년 말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네덜란드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세무를 '세무 대행업체(Fiscal Representative)'가 대리하는 것과 관련해 세법을 제정했다. 네덜란드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 대행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 유예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대행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유예만이 가능하며, 세무대행업체가 없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세관 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Onroerendezaakbelasting, OZB)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라 다르다. 2017년 주택 구매를 위한 일회성 증여 비과세 허용금액이 작년 대비 89% 증가한 10만 유로로 개정됐다. 증여금액은 오직 주택구매, 집 개조 또는 모기지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으나 수령

자의 나이가 18세에서 40세사이어야 하며,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2만 5,449유로는 집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체류허가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경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 네덜란드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를 신청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를 신청한다.

2013년 6월 1일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고급인력' 이민자(주재원 등)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급인력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한다. 즉,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특히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취업 및 창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Work Permit 없이 일할 경우 Inspectie SZW*에 의해 적발된다. 강도 높은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Work Permit을 발급한 이후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 InspectieSZW(www.inspecit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은행 부문은 총 자산이 2조 6천억 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덜란드 4대 은행인 ING, Rabobank, ABN AMRO, SNS가 전체 은행자산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은행인 ING의 GDP대비 자산규모 비중은 무려 1.5배에 달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이다.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국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De Nederlandsche Bank, DNB)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 무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

다. 5만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건별 송금시에는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독 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독일경제는 2017년 역대 최고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2.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존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유로화 약세 기조 지속에 따른 수출입 호조와 내수 및 고용 안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경제의 특성상 EU의 경제회복 속도와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년에도 독일의 고용 안전 및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세계 무역 부진으로 인해 성장률은 1.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11년 이래 유로존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독일의 GDP는 3조 2,364억 유로로 28개 EU 회원국 전체의 21.3%, 19개 유로존 국가의 2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독 간 무역액은 2017년 2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84.8억 달러, 수입은 197.5억 달러로 약 1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 간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점차 확대되었으나, 2016년 이후 선박수주와 더불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1위였던 선박에 대한 독일의 발주가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유럽 현지생산이 증가하여 현지 시장 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는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독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유로화 강세 전환이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수지를 양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다자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018년 1~3분기에는 41건 1.05억 달러(누계기준으로는 131.27억 달러)로, 2018년도 1~3분기 전체 외국인 투자액 192.02억 달러 중 0.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자는 2018년 6월말 기준 81건 약 9,900만 달러(누계기준으로는 4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의 대한국 투자는 자동차부품, 전기, 화학 등 제조업 공장설립과 기업 인수합병 위주이며, 한국의 대독일 투자는 과거 판매법인 설립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업 인수합병 또는 제조업 공장 설립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EU 관세 규정 적용

-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소

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독일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리마크를 반드시 표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2007년 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 더 나아가 2019년 1.1일부터 도입되는 신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게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동 법 도입의 목표는'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신 규정에는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이 불허된다.
- 즉,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제조사와 유통기업(온라인 유통 및 수입기업 포함)은 신고와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유통기업 역시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가 합리적으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록 및 이를 통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신 포장재법의 가장 중요한 신 의무규정은 등록 의무와 포장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심사규정 등이다.
- 이제까지 해당 기업은 이른바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IHK)에 보고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당해 연도 5.15일까지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에 신규 신설된 중앙 관할 기관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도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완전성 선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8만 kg 미만의 유리
- 5만 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만 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따라서 새로운 포장법은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적용되나, 대부분의 소규모 온라인 숍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인 독일전기업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반 생활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독일 시장에 수입되는 상품에 CE(유럽표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상표의 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 안전성 표준

- 독일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 logo(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년 3월「전기 및 전

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3년 새로 도입된 RoHS II에 따라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에 적용되며, 2019년 7월 22일 이후에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년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연방조달청은 2000년 전자조달을 위한 플랫폼 'e-Vergabe'를 출범시킨 이래 2010년부터 모든 발주건을 전산화하였다. 2013년 11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2016년 4월 18일 이래 전 독일행정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완료되었다.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시 계약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컨대 'Fuktionalausschreibung'의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언어와 복잡한 절차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독일내 기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 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전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기업들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세관 및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연간 2억5천만 유로 수준에 이르나 프랑스(8억유로)나 영국(2억 7천만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과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로 등록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나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 기업 인수 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에 따른 합병(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이 진행되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경제적 규모(참여하는 기업이 함께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의 매출 달성 등)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보험업 · 은행업 · 전당포업 · 경매업 · 도박 · 부동산중개업· 국방/보안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사례는 없다. 다만, 독일정부는 대외경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부조사의 범위를 2017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 확대하였다. 동 법에서는 중대한 인프라, 특정 업종용(에너지, 금융, 운송 등)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 통신 감독을 위한 기술설비 제조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텔레매틱스 인프라의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독일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 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정부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 조사 결과 해당 외국인투자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public security and order)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동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조사는 매입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조사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투자자는 상기 기업매수 및 지분 매입 등 투자내용에 대해 독일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해당 투자가 독일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에 대해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독일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사업활동을 허가하는 체류허가를 신청해야한다.
- ○ 독일 내에서 법인 또는 지사 설립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 독일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득세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청(Gewerbeamt) 등록 절차

- ○ 사업자등록청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 ○ 사업자등록청은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5~65유로 부과한다.
- ○ 사업자등록청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여권 (대표사무장), 또는 본사 경영진 여권 복사본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번역본 및 원본)
  - 상용 비자
  - 독일 거주신고서(Meldebescheinigung)
  - 전권 위임장
  - 사무실 임차계약서
-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수일 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회사는 필수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 되어야한다.

개인사업 및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등기가 되어야하나, 소규무 영업자 (Kleingewerbe)로 간주 될 경우, 등기 의무는 없다.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 공개 되어 handelsregister.de로 통해 조회 가능하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사업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기타 법적관계 (예: 파산절차 신청, 법인 전환 등 내용)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주선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장 번호(Betriebsnummer)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EAV)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년 1월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적연금보험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령보장법은 최종 합의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독일 내 소득이 발생할 경우)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18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4.6% 수준),

② 연금보험료(Rentenvericherung, 총소득의 18.6% 수준),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55% 수준),

④ 실업보험료(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편「한·독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와 실업 보험료이다.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기업 인수 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에 따른 합병(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이 진행되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경제적 규모(참여하는 기업이 함께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의 매출 달성 등)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험업·은행업·전당포업·경매업·도박·부동산중개업·국방/보안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 독일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활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쎄와 라인메쎄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 독일무역투자청 산하 iXPOS는 독일 및 해외의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동 사이트는 개편 중에 있으며, 기존의 'Export Community'가 'iXPOS Business Finder'로 재편된다. 이 사이트는 2018년 10월 중순 새로 오픈될 예정이며, 희망 비즈니스 건 관련 정보 보다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과는 달리 로그인 없이도 검색이 가능하며, 사용언어가 영어로 통일된다.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독일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적용되는바,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내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 (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독일은 자국 내 실업자 감소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IT나 의료 등 일부 업계 고학력 인력 부족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블루카드(Blue Card)를 도입하는 등 체류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2012년 8월 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연봉 수령이 가능한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은 연봉 52.000유로(세전) 또는 월 4,333유로(세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특히 '전문인력부족 분야' 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40,560유로(세전) 또는 3,380유로(세전)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당한지 심사를 한다.

2012년 8월 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어난 12~18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에 제한이 없다.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기존 90일) 노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법에 따르면 독일 대학 졸업자는 2년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가연금보험료 납부를 하면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년 8월 1일 이후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블루카드를 취득하여 33개월 취업생활을 한 자도 신청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B1(중급)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고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2009년 4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8월 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 (Gesetz zur Umsetzung der Hochqualifzierten-Richtlinie)을 통해 외국인의 이주 및 창업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아울러 2013년 6월 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 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독일내 노동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되었다.

※ 상용비자 발급 절차

-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독일에 이미 체류중인 경우 외국인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상용비자 발급은 독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특수한 지역적 수요가 있거나, 자기자본 또는 신용대출 확보로 창업 실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2년 8월 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창업을 위한 최소 투자비용 25만 유로 증명과 최소 5개의 일자리 창출 규정 및 특수한 지역적 수요 기대 조항은 삭제되었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 능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년 연속 비자 갱신을 받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은 MTCR, Ausralia Group, NSG, Wasser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무기 등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을 쉽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를 통해서 경제에너지부(BMWi)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산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그리고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 등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총리가 주재하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인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통제청으로부터 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제도 관련 주요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수출통제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http://www.ausfuhrkontro lle.info/ bafa/en/export_control/nl_export_control/index.html)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524개, 시가 총액 약 1조 9,100억 유로(2018년 6월 기준) 규모로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이다. 특히, 동 거래소는 시카고 거래소와 함께 세계최대 규모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은 견조한 실물경제 및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약 3조 710억 유로로 2018년 8월 기준 6,230개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유럽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 수준이다.

독일 은행은 소규모·고밀도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은행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독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universal banking system)을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10년 유럽 금융시장 불안 대응 과정에서 2010년 5월 공매도 금지조치도 유럽국가 중 우선적으로 취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기타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의 현지법인과 한국산업은행(연락사무소) 외에, 일본 8개, 중국 5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한편,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가결 발표 이후 프랑크푸르트는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더불어 차기 런던을 이을 금융도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UBS를 위시해 일본(Mizuho, Nomura, SMFG, Daiwa), 중국(CICC, Essence Securities)을 중심으로 은행의 독일(프랑크푸르트) 본부 이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크푸르트 마인 금융센터(Frankfurt Main Finance)에 따르면, 2018년 7월말까지 총 24개의 은행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루마니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개관

주요 경제지표 동향

루마니아는 유럽 내의 여타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 견실한 거시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EU 28개국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4.8%, 2017년 6.9%로 EU 28개국 중 1위를 나타내었다.

루마니아의 2017년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는 24,508달러로서 (한국은 35,938달러), 명목 GDP(12,575 달러)의 2배 가량이다. 향후 루마니아 GDP 성장률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 공공부문·국영기업 구조개혁, EU펀드 흡수율, 유럽 경제상황, 농산물 작황, 국내소비 증가율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에도 약 5.1%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루마니아의 물가는 2008년 7.9% 상승하는 등 2010년까지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2011년부터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루마니아의 물가상승률은 1.3%이다.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2009년 7.8%까지 상승하는 등 2013년까지는 7% 내

외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5.9%, 2017년 실업률은 4.9%, 2018년 6월 기준 4.6%로 EU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13]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루마니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루마니아의 GDP에서 세수(稅收)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로서 EU 평균(44%)보다 10%정도 낮은 수준인바, 루마니아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탈세방지, 세수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억 유로)	1,317	1,390	1,500	1,600	1,696	1,875
1인당 GDP(유로)	6,545	6,908	7,455	8,100	8,787	9,550
GDP 성장률(%)	0.7	3.5	3.0	3.7	4.8	6.9
인플레이션율(%)	3.4	3.2	1.4	-0.4	-0.5	1.3
실업률(%)	5.6	7.1	6.6	6.7	5.3	4.9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을 계속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이자율은 2012년 5.25%에서 2017년 8월 1.75%까지 하향 조정된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루마니아 화폐(Lei)의 對美달러 평균환율은 2017년 4.05Lei/USD로 2016년 평균 환율(4.05Lei/USD)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 화폐의 對유로 평균환율은 2017년 4.57Lei/유로에서, 2018년 9월 현재 4.66Lei/유로로 다소 상승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당초 2015년 유로존 가입목표를 공표해 왔으나, 2012년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가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2013년 초에 유로존 가입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까지 루마니아 정부는 유로

13) 2018. 6월 EU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6.9% 수준

존 가입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유로존 가입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루마니아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9월 현재 약 345.08억 유로(외환 310.6억 유로, 금 34.48억 유로)로 2017년 371.06억 대비 다소 감소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대외부채(공공+민간)는 2018년 6월 기준 979.18억 유로이며, 이 중 중장기 부채가 670.43유로, 단기부채는 308.75억 유로로 2017년 6월 기준 962.64억 유로 대비 약 1.7% 증가했다.

무역 · 투자 동향

루마니아의 상품무역은 2008~2017년 동안 연평균 4.3% 증가하여 2017년 1,29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은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를 나타낸 반면, 수입은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루마니아의 상품 무역수지는 2008년 225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17년 현재 129억 유로 적자이다.

루마니아의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10억 유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33.6	29.0	37.3	45.0	45.1	49.6	52.5	54.6	57.4	62.6
수입	56.1	39.0	46.9	54.7	54.7	55.2	58.5	63.0	67.3	75.6
무역액	89.7	68.0	84.2	99.7	99.7	104.8	111.0	117.6	124.7	138.2
무역수지	-22.5	-10.0	-9.7	-9.7	-9.6	-5.7	-6.0	-8.4	-9.9	-12.9

루마니아는 EU 역내 상품 무역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7년 기준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23%), 이탈리아(11.2%), 프랑스(6.8%), 헝가리(4.7%), 영국(4.1%) 등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20.1%), 이탈리아(10.0%), 헝가리(7.5%), 폴란드(5.5%), 프랑스(5.3%), 중국(5.0%) 등이다.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10억 유로)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전체	62.6	100	전체	75.6	100
1. 독일	14.40	23.0	1. 독일	15.2	20.1
2. 이탈리아	7.03	11.2	2. 이탈리아	7.59	10.0
3. 프랑스	4.23	6.8	3. 헝가리	5.65	7.5
4. 헝가리	2.94	4.7	4. 폴란드	4.12	5.5
5. 영국	2.57	4.1	5. 프랑스	4.01	5.3
6. 불가리아	2.11	3.4	6. 중국	3.77	5.0
7. 터키	2.07	3.3	7. 네덜란드	3.05	4.0
8. 폴란드	1.96	3.1	8. 터키	3.00	4.0
9. 스페인	1.88	3.0	9. 오스트리아	2.52	3.3
10. 체코	1.80	2.9	10. 러시아	2.46	3.3

출처 : UN Comtrade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7년 기준)

(단위: 10억불, %)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1.7	18.4	1.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1.6	15.6
2.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9.8	15.4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9.3	12.5
3.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7.0	11	3.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7.1	9.5
4. 가구, 침구·매트리스·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	2.6	4.1	4.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등	4.2	5.6
5. 곡물	2.32	3.7	5.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4.1	5.5
6.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등	2.30	3.6	6. 의료용품	3.0	4.1

출처 : The World Bank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IFDI)은 2017년 45.7억 유로로 2016년 45.2억 유로 대비 다소 증가했다. 루마니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80% 이상이 EU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이며, EU 역외로부터의 투자는 많지 않다.

루마니아의 IFDI 유인(誘引) 요인으로는, 루마니아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EU회원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인구 2천만 명 등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발칸/CIS 지역 등으로의 진출 관문이라는 지경학적 위치의 중요성, 저렴한 地價로 인한 향후 부동산/공장부지 가격상승 잠재력 등이 있다. 반면 루마니아의 정책·법률의 일관성·예측가능성 부족(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등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정책 변경 등), 외국인투자진흥을 위한 정부내 특별기관 부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부의 편의 제공 노력 부족 등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 유치 금액 (10억 유로)	3.4	2.3	1.7	2.5	2.7	2.4	3.5	4.5	4.6

루마니아의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2017년 기준)

국가	투자금액(백만 유로)	투자비중(%)
1. 네덜란드	19,638	25.9
2. 독일	9,704	12.8
3. 오스트리아	9,575	12.6
4. 이탈리아	4,739	6.2
5. 프랑스	4,731	6.2
6. 사이프러스	4,647	6.1
7. 룩셈부르크	3,543	4.7
8. 스위스	3,144	4.1
9. 그리스	1,723	2.3

출처 : Romania National Bank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개관

루마니아 개방 초기인 1990년대에 한국은 대우자동차 등의 투자 진출로 루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루마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개혁 가속화,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영향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무역현황

2017년 기준 한국과 · 루마니아 간의 상품 무역액은 8.83억 달러이며, 한국의 대루마니아 수출입액은 각각 4.32억 달러와 4.5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0.19억 달러 적자이다. 루마니아도 EU 회원국으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한-EU FTA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의 對루마니아 상품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22	155.9	439	439	598	539	559	432
수입	3	32.13	660	745	642	615	539	451
수지	25	124	-221	-306	-44	-76	20	-19

자료 : 관세청 통계

한국의 對루마니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율	품목명	금액	증감율
1	자동차부품	60	22.2	자동차부품	114	-44.5
2	합성수지	38	-8.1	직물제의류	52	3.7
3	승용차	20	13.7	파티클보드	34	69.3
4	펌프	18	-28.0	기타기계요소	28	-23.5
5	카스테레오	17	13.2	펌프	21	378.8
6	폴리에스터사	16	-19.2	타이어	19	19.9
7	타이어코드	16	-2.9	무선통신기기부품	18	-72.1
8	아연도강판	13	-3.4	편직제의류	11	19.1
9	폴리에스텔섬유	11	82.0	베어링	10	46.7
10	기타의직물	10	-7.4	가방	10	9.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투자 현황

2018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루마니아 투자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은 9.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생산법인으로 두산 IMGB, 삼성오텔리녹스, 효성 GST, 세화, 신흥정밀, 비전디지텍, JMI, GMB 코리아, 글로벌에스엠, 캄텍, 뉴인텍 등이 있으며, 판매법인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대우인터내셔널, YG-1, 세라젬, HUNS, UI Logistics 등이 있다. 2018년 6월 현재 루마니아 회사등록청에 등록된 한국기업 수는 250개 이다.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에 투자 진출한 분야는 조선, 스테인레스 가공, 터빈·조선부품 생산, 에어백 천, 전자제품 판매, 타이어 몰드 및 자동차부품 생산·가공 등이며, 루마니아가 강점을 보유한 IT, 농업 분야 및 최근 루마니아 측 관심분야인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 외에

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도 계속 모색되고 있다. 루마니아에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으나 다양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프로젝트 투자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 기업 진출 유망 분야

우리 기업의 대루마니아 진출 유망 분야로는 자동차, 의료기기, ICT, 에너지, 건설, 농업 등이 있다.

자동차 산업

루마니아에는 2개(르노-다치아, 포드)의 완성차 공장이 소재하며, 이 완성차 기업들과 서유럽 및 인근지역의 완성차 공장 납품을 겨냥하여 설립된 Tier 1 및 Tier 2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루마니아의 수출 및 경제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의 경제성장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자동차 판매량 및 등록 건수는 2014~2017년간 연간 15~2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8년에도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고 있다. 루마니아 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7년도 약 34만 2000대로 2016년 대비 4.78% 감소하는 등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실적은 아래와 같다.

루마니아 자동차 산업 현황

2016년	2017년
생산량 : 35.9만대 (르노다치아社 32만대, 포드社 3.89만대) 내수 신차판매 11.5만대 * 수입차 대수는 108,701로 전년 대비 23% 상승	생산량 : 34.2만대 (르노다치아社 31.4만대, 포드社 2.83만대) 내수 신차판매 13만대 * 수입차 대수는 119,684로 전년 대비 10.1% 상승

2017년 기준 루마니아 자동차시장(신차 기준)에서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5.5%(현대차 3.3%, 기아차 2.2%)다.

브랜드명	판매량	시장점유율
Dacia	39,596	30.4
Volkswagen	13,969	10.7
Skoda	11,631	8.9
Renault	10,393	8.0
Ford	8,124	6.2
Opel	6,543	5.0
Toyota	4,292	3.3
Hyundai	4,260	3.3
Mercedes Benz	3,610	2.8
Suzuki	3,405	2.6
Kia	2,833	2.2
Nissan	2,749	2.1
BMW	2,616	2.0
Audi	2,500	1.9
Peugeot	2,370	1.8
Fiat	2,063	1.6
Mazda	1,946	1.5
Honda	1,025	0.8
기타	6,489	5.0
Total	130,414	100%

의료기기 산업

루마니아는 병원시설 낙후로 현대화 및 개보수가 시급하며, 첨단장비가 부족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현지에서는 현대화된 기기는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EU기금 및 PPP(민관합작투자사업)를 활용한 공공병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의료 분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루마니아 도시인들이 민간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의료부문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산업

루마니아는 ICT 인력·기술력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이 연간 15~20%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ICT 기업들의 투자 진출 및 합작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특히 루마니아에는 컴퓨터/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ICT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국적 ICT 회사들의 유럽 지역 요충지가 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해외 아웃소싱 산업이 최근 연간 20% 급성장하여 인도, 중국을 대체하는 아웃소싱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다. 루마니아 ICT 전문가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하며, 루마니아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바, 그 해킹 기술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로 연결시켜 현재 전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보안 프로그램 "BitDefender"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루마니아 ICT 산업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의 ICT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R&D 센터 개설 방안, 루마니아내 SW 개발회사 M&A 추진, 루마니아 정부의 2020년까지의 ICT 발전 전략 청사진인 "디지털 어젠다 국가전략 2020 (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 2020)"에 따른

향후 대규모 ICT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고속인터넷망(브로드밴드) 사업, 전자상거래, 전자카드 사업, 전자정부 사업(조세 세수, 지적(地籍)전산화, 교통, 의료, 관세, 교육, 경찰, 항만, 스마트시티 등) 등에의 투자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국가전략 2020 (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 2020)에서의 중점 추진 분야 및 분야별 투자 수요

중점 추진분야	투자수요 (백만 유로)	상세내용 (링크)
e-Government and Interoperability	247.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25-36)
Cloud Computing and Social Media	60.2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43-46)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48-52)
Cyber Security	30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 pp. 37-41)
ICT in Education	207.4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60-64)
ICT in Health	119.2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66-69)
ICT in Culture	37.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72-74)
e-Commerce	76.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78-81)
e-Inclusion	2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pp. 74-76)
Research-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ICT	60.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82-85)
Broadband	3,100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87-93)
Total	3,963.8	

에너지

루마니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 확대, 에너지 관리시스템 현대화 등을 위해 "2016~2030년 루마니아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전통적 화력 연료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①노후 천연가스 인프라 개보수, 노후 원자력 및 화력 발전 설비 개선 사업, ②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 ③지역 거주 공간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루마니아 정부는, 2015~2030년 도로, 항구, 운하, 철도, 공항 등 운송 인프라 개발 계획인 "종합교통마스터플랜(GTMP: General Transport Master Plan)"을 총 450억 유로 규모로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동 계획에서 도로 건설 개발이 26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철도 개보수 등(137억 유로), 항구·운하 건설(31.9억 유로), 공항 개조·신축(13억 유로), 종합운송센터 건립(3.2억 유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PPP(민관합작투자)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6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행규범을 보완하였다. 2018년 9월 현재 고속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건설 등을 포함한 23개 민관합작투자사업 계획을 채택하였다.

향후 세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EU 기금 및 루마니아 정부예산, EIB(유럽투자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지원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對루마니아 건설시장 진출 여부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14]

---

14)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 및 루마니아 교통부 웹사이트(아래의 링크 참고) 등에서 제공된다.
- http://www.mt.ro/web14/strategia-in-transporturi/master-plan-general-transport/documente-master-plan
- http://www.mt.ro/web14/documente/strategie/mpgt/23072015/Master%20Planul%20General%20de%20Transport_iulie_2015_vol%20I.pdf
- http://www.mt.ro/web14/documente/strategie/mpgt/23072015/Master%20Planul%20General

농업

루마니아는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충분하여 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였으며, 강수량은 연평균 677mm 수준이다. 농경지는 1,470만 헥타르(hectare)로서 국토면적(2,380만 헥타르, 한반도의 1.1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폴란드에 이어 6위 규모이나, 유휴 농경지가 약 2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밀, 콩, 감자, 옥수수,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이 있으며,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와인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다만, 농업에 대한 관심 저조, 관개시설 개선 지연, 영세한 농가, 낮은 농기계 활용도, 재배기술 낙후 등으로 현재 농업 생산성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넓고 비옥한 농토와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 정부정책과 대규모 영농이 추진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농업 생산성이 선진 유럽국가 수준에 도달할 경우, 루마니아 인구의 4배 규모인 8,500만 인구에 대한 식량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콘스탄차 항이 위치해 있고 곡물수출 등에 필수적인 시설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을 활용한 곡물수송, 비교적 잘 갖추어진 철도시설 등은 농업투자의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EU 기금 등을 통해 루마니아 농업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이에 발맞추어 농기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주요 수입 농작물은 목재(4347만 달러), 곡물(682만 달러), 채소·과실·견과류(0.4만 달러) 등이다.

현재 진행중인 농업 협력 사례로는 1) 우리 고구마 품종 재배·생산·유통, 2) 루마니아·유럽 수출용 벼 신품종 개발 공동 연구 등이 있으며, 향후 한-루 농

%20de%20Transport_iulie_2015_vol%20II.pdf

업협력 유망분야로는 1) 루마니아산 가금육의 對韓 수출, 2)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지식 공유, 3) EU 농업기금 공동 활용, 4) 한국산 겨울 양파 종자 수출, 5) 농기계 수출, 6) 비닐하우스 기자재 수출 등이 있다.

루마니아 진출시 고려사항

기업 진출여건 SWOT 분석

〈장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ㅇ 우수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 물적 자원 - 인건비 : 선진국의 1/3-1/4수준 - 우수 인력(외국어, IT, 엔지니어 등) - 인구 2천만명의(유럽내 7위) 내수시장 - 세일/천연가스, 석유, 비옥한 토지 ㅇ 동유럽의 물류 요충지로서 이점 - 서/동 유럽 등에 교두보 기능 - 흑해, 다뉴브 강을 통한 물류 용이 ㅇ 한-EU FTA(2011.7) 활용 가능	ㅇ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간접 비용 다대 - 행정의 복잡성, red tape 만연 등으로 경영활동 애로 ㅇ 사회주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열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 고속도로, 교량 등 부족, 운하, 항만 시설 개선 미흡
〈기회 : Opportunity〉	**〈위협 : Threat〉**
ㅇ 주요 국책사업으로 사회간접 시설 확충시 안정적 경제성장 기대 - EU 펀드 등 활용 가능성 -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ㅇ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이 지속 확대 기대 - 우리기업 진출 촉진 가능성 ㅇ 정세 및 경제의 안정적 운용 관리 - EU 가입이후 EU지침 적용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발전 기대	ㅇ EU 수준으로의 수렴 과정에서 인건비, 유틸리티 등 물적 비용의 지속 증가 우려 - 우수 인력 해외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상승 등 우려 ㅇ 경제성장 지속으로 근로자의 각종 복지 요구 증가 및 노동조합 운동 강화/ 활성화 가능성

무역 거래와 결제 관행

루마니아 일반 기업들은 까다로운 개설조건이 동반되는 신용장 결제방식(L/C) 등의 신용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신환 송금방식(T/T)의 거래를 유지하다가 무역거래가 이루어질수록 T/T 거래에서 외상 거래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 거래 조건의 변경을 고민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수출보험에 가입한 후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15]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중과세방지, 자유 송금 등 인센티브, 2) 국가보조금 인센티브, 3) 세제 인센티브(① 신기술 장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윤세 면제, ② IT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면제, ③ 재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세금 면제, ④ R&D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 ⑤ 최근 졸업생 및 편부모 자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4)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기업/회사 설립 절차

루마니아 정부가 2016년 발표한 루마니아내 "기업/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16]

1) 주요 사항 결정(회사명, 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식, 각 주주별 자본금 점유비율, 회사 본사 소재지 주소, 회사 운영진 및 각각의 직능, 회사의 사업내용 등)
2) 회사명 예비 등록(회사등록청에 가서 회사명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회사명을 예비 등록해야 하며, 예비등록 유효기간은 3개월임.)
3) 관련 문서 준비 및 서명(회사등록청에 제출할 서류 준비), 회사 정관, 각 주주별 책임 소명서, 운영진 소명서, 운영진 서명 견본(공증 및 아포스티

15)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의 루마니아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http://www.dce.gov.ro/
http://www.mfinante.ro
http://www.aippimm.ro
http://www.snia.ro/
16)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ro-ko)에서 제공된다.

유 확인 필요),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동 회사에의 참여 승인 결정 문서

4)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후 각 주주별 출자액 송금 및 동 송금내역 증명서 발급)

5) 설립되는 회사본사 주소지 사용권 확인서 마련(설립되는 회사가 본사 소재지 주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마련)

6) 자산 양호 상태 확인서 발급(각 주주들이 자산 양호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행 확인서 발급)

7)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8) 등록신청서 제출(등록신청서 제출시 위 관련 서류 및 여타 필요 서류 제출)

9) 등록 확인서 발급

10) (재무/세무관련) 회사 및 주주 등록(재무/세무 관련하여 각 지역별 세무 당국에 등록서류 제출)

불가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터키,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인구 710만명,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8,031.6달러(1인당 국민소득(PPP 기준)은 약 20,798달러)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및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발칸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간 불가리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제성장률은 EU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EU 경제성장률: 2015년도 2.2%, 2016년도 1.9%, 2017년도 추정치 2.3%). EIU는 개인소비 및 투자증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이어가 2018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경제성장률 3.8%)

그러나 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지하

경제 규모가 공식경제 규모의 34%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터키 등 개도국산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요구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對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출시에는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이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렵다.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는 직접 웨어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3분의 1정도로 크며, 수입 시 일부 바이어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재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판매보다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Varna 항구 이외에도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불가리아내 Burgas 항구(최근 고속도로 완공), 그리스 Thessaloniki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리아 현지 기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아에 거주하

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개인소득세 10%, 법인세 10% 및 부가가치세 20%(숙박의 경우 9%)의 일률과세시스템(flat-tax system)을 적용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5년 Eurostat에 따르면 불가리아가 EU 회원국 중 3번째로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이다. 불가리아는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법인세 등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흑해와 중동부 유럽을 잇는 남동부 유럽의 관문에 위치한 EU의 신흥시장으로, 개방적인 경쟁체제하에 비교적 저렴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Cushman & Wakefield's rating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2016년 아웃소싱 대상지 7위(유럽에서 2위)를 기록하였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토지)취득권과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비 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라이센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되는 라이센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센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수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우리나라와는 1995년 6월 발효).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레바(약 25,000유로)이다.

對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터키,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진출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투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여 복잡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CE마크 등 현지 산업 규제 정보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의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016년 기준 화력 에너지(47.23%), 원자력 에너지(37.29%) 및 신재생 에너지(14.53%) 등을 사용하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임금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비서명국이었었으나, 2007년 1월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 유럽연합(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다.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년 8월 20일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업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최근 불가리아 정

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2017년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업 창업시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지향적인 산업구조가 발달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연간 총 수출은 약 2,281억 달러, 수입은 약 2,075억 달러 수준(2017년 기준, 출처: OECD)이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대 스웨덴 수출은 9억 달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17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국에서 생산된 우리제품의 수출량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 주요 스웨덴 기업 : Volvo(286위),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341위), Ericsson(500위) (이상 Fortune Global 500 in 2018)

- 이외에도 H&M, IKEA, Electrolux, Scania, Saab,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Tetra Pak, Gambro,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Envac, Skanska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 분야 등에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재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져 납기일 등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저렴한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폰, 승용차,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등을 통한 기업들의 홍보 노력과 함께 스웨덴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 LED TV, 승용차 등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한국산 미용 제

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제품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백화점, 미용·화장품 유통 체인 등에서 "K-beauty"라는 이름하에 판매되는 등 스웨덴 미용 시장에서 그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투자 환경

투자환경

(1)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로서 에릭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ICT 관련 기업만 약 1,100개사가 입주,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CT 클러스터 형성

- 그 외, 말뫼/룬드-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 요테보리-자동차 클러스터, 웁살라-BT 및 제약 클러스터, 스톡홀름-CleanTech(환경산업) 클러스터 등 운영

스웨덴은 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 및 패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편,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과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절차대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간 국제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투자지로서의 단점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북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 투자에 대해 몇가지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다.

한편 2013년 6월부터는 Facebook이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4) 투자 인센티브

가. 세제 인센티브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2013년 1월부터 과거 26.3%에서 22%로 인하)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의 평균(각각 21.3%, 23.5%, 출처: KPMG, 2018)과 비슷한 수준이다.

○ 외국인 주주가 스웨덴 비상장 주식이나 10%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지역 인센티브

○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및 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50% 보조

- 고용 보조금은 고용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산정(첫 고용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3년간 최대 120,000 SEK(약 13,000 달러) ~ 198,000 SEK(약 22,000 달러)의 고용 보조금 지원 가능)

외국기업 투자동향

(1)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약 1,000만명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다소 높은 편이다. 2008년 371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유치하였으나, 2013년에는 39억 달러를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스웨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지속 증가하여 2017년 1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EY(Ernst & Young)에 따르면, 2016년 스웨덴에 대한 외국인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76% 상승한 90건으로 유럽 최고 수준이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71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스웨덴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핀란드, 독일 등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 석유화학, 금융보험 등이다. 한편 2017년 10월 Google은 스웨덴 아베스타(Avesta)에 향후 유럽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염두에 두고 109헥타르 규모의 토지 구매한 바 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flows)

(단위 : 백만USD)

2013	2014	2015	2016	2017
3,930	4,030	6,897	12,177	15,398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8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자산(FDI assets)의 가치는 2016년 기준 3조 3,709억 크로나(약 4천억 달러)였으며,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중 EU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순이며, 금융·보험, 철강 및 기계제품 생산 기업들이 해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금액(Outward FDI flows)

(단위 : 백만USD)

2013	2014	2015	2016	2017
30,289	9,194	14,392	5,952	24,303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2) 스톡홀름의 본사형 경제(headquarter economy) 발전 현황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 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 2월 발표된 Stockholm Business Region의 조사에 따르면, Forbes 선정 2,000개 글로벌 기업 리스트(Forbes Global 2000)에 오른 기업의 51%가 스톡홀름을 지역본부로 선택하고 있다. 또한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23곳으로 스톡홀름은 북유럽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 리스트에서 10위(헬싱키 29위, 코펜하겐 59위, 오슬로 60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올라있다.

(3) 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총 12개사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한국기업(법인 및 지사)은 총 10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대한항공(화물), 넥센타이어, 제일기획, HS애드, 범한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2개사, 자동차 1개사, 자동차부품 3개사, 운송 4개사, 광고·디자인 2개사이다.

창업절차의 간소화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18년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개인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5만 크로나(약 7,680 달러), 공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50만 크로나(약 76,800 달러)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웨덴 기업등록청(Bolagsverket)에 대한 등록비용은 법인설립 신고 시 2,200 크로나(약 340 달러), 지사 설립 신고시 2,000 크로나(약 300 달러)이다.

직업별 월 평균 보수(2017년, 세전)

(단위: SEK)

직업	보수
의사(전문의)	77,900
고위공직자(지방정부 등)	76,900
대학교수	65,700
금융애널리스트	59,000
기업자문변호사	56,100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자	43,100
건축가	39,900
간호사	36,700
교사(고등학교)	35,200
경찰	33,400
사서	31,800
택시운전사	25,800
레스토랑·주방 보조원	23,200
청소원	23,100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8년)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2%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스웨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1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82년 9월 9일 발효되었다.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료 이익(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22%)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통상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 잡지 및 도서류, 상업적 체육시설·문화공연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치과 치료, 복지, 은행·금융서비스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가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2018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468,700 크로나(약 51,4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468,700 크로나 이상 675,700 크로나(약 74,000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국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간소득이 675,700 크로나를 상회하는 사람에게는 국세 5%가 추가되어, 총 25%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년 1월 폐지되었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일부 조세 감면 혜택

(1) 취지

스웨덴이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 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들이 스웨덴 내 체류기간 중(최장 3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적용 대상

스웨덴 내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스웨덴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 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 전문 인력(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 내 IT, 신기술 응용분야 등) 및 스웨덴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을 구비한 외국인에 해당하나, 실제 적용대상 직종 및 지위는 인력수요에 따라 가변적이며, 세무당국이 판단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동 외국인은 스웨덴 기업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피고용인이어야 하며, 스웨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파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실소유자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스웨덴에 상주사무소(permanent organization 또는 establishm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스웨덴에 파견하였으나, 동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자회사(subsidiary)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보수금액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스웨덴 기업에서 업무하기 이전 5년간 스웨덴 내 거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감면 범위

상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제 총 소득의 75%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감면 조치는 보수 및 기타 혜택에 적용되는데, 기타 혜택은 주택지원 및 생활지원 수당, 부임 및 이임에 수반되는 이사비용, 본국 휴가비, 자녀학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스웨덴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스톡옵션 또는 특별상여금에도 적용된다.

기타 세금은 스웨덴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되나, 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총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기 감면조치는 동 외국인이 최장 5년간 스웨덴에 체류한다는 전제하에 입국하여 지정된 업무 개시 후 3년간 적용된다.

(4) 신청절차

고용주 또는 해당 외국인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스웨덴 국세청 내 담당부서(Research Tax Board, Forskarskattenämnden)에 신청하며,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용주가 동 외국인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면세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20018년 새로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 1993년 최초 제정)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며,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조달

스웨덴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약 6,420억 크로나(약 706억 달러)(출처: 조달청, 2017)로, GDP의 1/6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는 10여개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달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1월 행정서비스청(Kammarkollegiet) 산하에 국립조달센터(Statens Inköpscentral)를 설립하였다. 국립조달센터는 중앙정부의 조달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ICT 분야 입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국립조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 규정에 의거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년 1월 발효)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다. 한편 조달청(Upphandlingsmyndigheten)은 공공조달을 위한 관련 지식, 도구 및 방법의 개발과 전달을 통해 당국, 단체 및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국립조달센터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www.avropa.se)과 EU 정부조달 통합시스템(www.simap.europa.eu)을 통해서 공지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EU 규정에 의거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할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EU는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형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r)와 공급자(supplier)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영을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사인 Datscha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스웨덴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규모는 저금리 및 상대적인 안정성 부각 등에 힘입어 1,750억 크로나(약 19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2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스톡홀름은 2018년 PWC가 발간한 부동산 동향 보고서(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에서 부동산 투자지로 가장 매력적인 유럽 도시 8위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연평균 환율(1USD=) 동향(출처: 스웨덴 중앙은행)

2014	2015	2016	2017
6.86SEK	8.44SEK	8.56SEK	8.53SEK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한 사무용 빌딩·상업용 빌딩, 접근성이 높은 주거용 건물, 학교·병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samhällsfastighet) 등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가 담당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약 63% 가 주로 스웨덴 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74%가 스웨덴 전문직근로자연맹(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과 스웨덴 전문직협회 총연맹(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에 가입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이 규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은 스웨덴 내 적용되는 고용계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일원인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유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Co-determination in the Workplace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 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게는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단, 직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향후 기업활동에 특별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 2명까지는 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주는 관련 법률에 의거 피고용인 월 기본급의 31.42%를 사회보장세(employer's contributions)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회보장세에는 퇴직연금, 건강보

험, 출산휴가수당,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장연금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민간의 직장연금 관리회사 중 한 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비용을 납부한다. 직장연금 납부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외)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0년까지 100% 재생가능 전력 사용,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해한 대체재나 방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ardsverket.se)
-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
  (Business Sweden, 무역투자위원회,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t.se)
- Working in Sweden(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Open Trade Gate Sweden(OTGS, www.opentradegate.se)

스페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스페인 경제 개황

2000년대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스페인은 유럽연합 평균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평가받았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부문 거품이 빠지며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페인 경제는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성장이 회복세로 전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연속 3%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유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 2018년 2.6~7%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 주요국별 경제현황 및 전망(2017~2019년)

국가	실질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영국	1.5	1.5	1.2	2.5	2.5	1.9	5.2	4.4	4.6
그리스	2.7	1.9	2.3	1.3	0.5	1.2	22.0	20.1	18.4
스페인	2.3	2.9	2.4	1.9	1.4	1.4	17.7	15.3	13.8
독일	1.6	2.3	2.1	1.9	1.6	1.8	4.1	3.6	3.5
유로존	1.6	2.3	2.0	1.7	1.5	1.6	9.6	8.4	7.9
프랑스	1.2	2.0	1.8	0.3	1.7	1.4	10.0	8.9	8.3
이탈리아	0.9	1.5	1.2	-0.1	1.2	1.4	11.7	10.8	10.6

자료원 : EU 집행위(2017년 하반기)

스페인의 빠른 경제회복은 EU 차원의 지원 정책 및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유럽 중앙은행(ECB)의 파격적인 금리인하 단행이 스페인의 내수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ECB는 2014년부터 꾸준히 기준금리(Euribor) 인하를 실시해 2018년 6월 기준 0%보다 낮은 -0.181%라는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ECB는 2015년부터 유로존 국가의 국채 등을 대량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9월 종료가 예정이었던 동 정책은 2017년 3월까지 연장실시 되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 타계 방안으로 부실 은행 간의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노동개혁 등을 단행했으며, 과도한 공공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강도 긴축정책을 실사하였다. 2014년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가격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 등을 유도하였다.

외국인관광객 대거 유입으로 인한 관광업 호황도 스페인 경제회복에 일조하였다.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면, 2017년 약 8,200만 명의 외국인관광객이 스페인을 방문하여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 및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수출호조도 지속되며 제조업도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되었다.

실업률

경제회복 후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고용, 높은 청년실업, 숙련공 부재 등은 여전히 스페인 노동시장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일 근무자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고용 형태는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전체 중 26.7%, 2017년 평균)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스페인 실업 문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약 37.4%로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 17.9%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재정

스페인은 경제위기 이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으면서 EU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2016년 7월 EU는 스페인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스페인 정부에 20억 유로의 벌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으나, 스페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제안한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벌금 부과를 취소하고 2016-2018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17년 말 재정적자율 3.1%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8년에는 2.7%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위 '재정적자국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스페인의 물가는 2017년 2.0%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 들어선 9월까지 평균 1.66%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 및 투자

스페인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민간소비는 2014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EU집행위는 2018년에도 스페인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소비도 경기회복과 함께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2018년에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이후 현지 기업의 재정상황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고정투자 부문 지출도 최근 3년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EU집행위는 2018년에도 고정투자 지출이 전년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

스페인의 연간 교역규모는 2017년 기준 5,790억 유로로 수출 2,771억 유로(전년비 8.1% 증가), 수입 3,019억 유로(전년비 10.3% 증가)를 기록했다. 2018년 1~4월 중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949억 유로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4.9% 증가한 1,049억 유로를 기록해 약 189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스페인 교역은 유럽 역내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2017년 기준 수출의 64.8%, 수입의 54.3%가 EU 내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1위 프랑스, 2위 독일, 3위 이탈리아, 4위 포르투갈, 5위 영국 등 인근 유럽국으로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주요 수입국도 1위 독일, 2위 프랑스, 3위 중국, 4위 이탈리아, 5위 네덜란드로 주로 인근 유럽국들이다. 스페인은 경제위기 이후 교역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및 북미 지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했으나, 최근 소량 구매가 가능하며 납기가 빠른 역내 교역으로 회귀하는 양상도 진행 중이다.

거시경제 지표 (2017년 기준)

- GDP : 1조 3,110억 달러 (IMF)
- 1인당 GDP : $28,104 (IMF)
- 경제성장률 : 3.0%
- 실업률 : 16.55%
- 물가상승률 : 1.96%
- 화폐 : 유로(euro)
- 환율 : 1달러=1.16유로 (2018년 9월)

○ 교역액 : 수출 4,528억 달러 / 수입 4,146억 달러

○ 주요 교역상품

- 수출 : 자본재,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반제품
- 수입 : 에너지, 자본재, 화학제품, 식료품, 소비재

주요산업 동향

산업개황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해 주요 산업 군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중심 국가로 변모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스페인산 와인, 올리브오일, 오렌지 등 농산물 해외수출 호조로 인해 스페인을 농업국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인데 반해 서비스 산업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부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축수산업	2.5	2.5	2.5	2.5	2.6
제조업	16.1	13.2	12.9	12.9	16.4
건설업	5.2	5.6	5.1	5.1	5.2
서비스	67.5	67.8	66.8	66.9	66.4
상업/교통/숙박업	21.8	21.9	21.2	21.4	21.4
정보통신업	3.8	18.6	3.8	3.8	3.8
금융보험	3.4	3.6	3.6	3.6	3.6
부동산업	10.9	11.1	10.2	10.0	9.8

부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문서비스	6.7	6.7	7.2	7.5	7.6
공공행정/보건/교육	17.0	16.9	17.1	17.0	16.6
예술/오락/기타서비스	3.9	3.9	3.7	3.6	3.6
기타	8.6	8.8	9.3	9.3	9.3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고용시장은 2014년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2014년 23.7%에서 2017년 17.2%로 감소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는 2020년에까지 실업률을 11.2%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2017년 기준 서비스업의 고용이 전체 중 76.9%로 압도적으로 크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4.2%, 5.9%로 뒤를 따르고 있다. 농축수산업 고용 비중은 3.0%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페인 업종별 고용 비중

(단위 : %)

부문/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축수산업	4.7	4.8	4.3	4.3	3.0	3.0
제조업	13.5	13.4	13.7	13.6	13.2	14.2
건설업	6.8	6.1	5.7	5.9	6.3	5.9
서비스	75.0	74.9	76.3	76.2	77.5	76.9

자료: 스페인 통계청

자동차

스페인은 2017년 기준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이 국가 GDP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약 30만 명이 동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간접 고용인구까지 합치면 고용 창출 효과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스페인 내에는 총 9개의 자동차 기업이 17개의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PSA-푸조-시트로엥, 닛산,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GM, 포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자동차 생산기반은 대부분 스페

인 북부(아빌라, 팜플로나, 바야돌리드, 비고, 비토리아, 팔렌시아)나 북동부(바르셀로나, 사라고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드리드와 스페인 남부 세비야 지역에서도 일부 기업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에 따르면,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7년 기준 285만 대로 전년대비 1.5% 소폭 감소했다. 스페인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약 85%는 전 세계 130여 개 국으로 수출되며, 연간 수출액은 2017년 기준 약 322억 유로, 자동차 부품까지 합치면 수출규모가 약 450억 유로에 달한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다.

브랜드별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기반 현황



자료: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

스페인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7년 기준 146만 대로 전년대비 8.5% 증가해 경제위기 이후 판매시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발생 전인 2007년 판매대수가 무려 200만 대에 가까웠음을 감안할 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여전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SEAT로 6만 2,442대를 판매해 1위를 기록했으며, 폭스바겐(5만 9,713대), 푸조(5만 4,868대), 르노(5만 3,060대)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 신규등록 차량 중 휘발유 차량 비중이 57.2%로 가장 높으며, 디젤차량, 하이브리드/전기차량이 각각 37.0%, 5.8%로 뒤를 따르고 있다.

스페인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낙관적으로 돌아서 자동차 판매시장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생산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다.

스페인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생산이 많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각종 자동차 부품을 현지 생산공장에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부품 구매 결정권이 현지 생산공장이 아닌 각 기업의 본사에 있으므로, 각 업체의 본사 구매부서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현지 Tier1, Tier2 기업들도 대부분 외국계 기업으로 스페인 현지에서는 구매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기업의 본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동차 A/S 시장의 경우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이 약 9%에 불과해, 한국 자동차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럽 또는 일본 자동차와도 호환이 가능한 부품을 취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인 Motortec이 격년제로 열리고 있으며 주요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o 마드리드 자동차 부품 전시회(MOTORTEC)
  - 홈페이지: http://www.ifema.es/motortec_01/
  - 전화: 0034-902-22-15-15
  - 이메일: motortec-automeckanika-madrid@ifema.es

제약

스페인 제약산업은 1986년 EU 가입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개선과 공공의료범위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정부 주도 하에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FPIA(유럽의약품산업협회연맹)에 따르면 스페인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최전성기인 2010년 149억 유로로 유럽 4위에 랭크된 바 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위기로 공공의료부문 지출 축소와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로 시장이 위축되어, 2013년에는 132억 유로까지 감소했다. 이후 시장규모가 꾸준히 회복돼 2015년 156억 유로를 기록해(2018.7월 확인 정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보유중이다.

정부 주도 하에 다국적 제약사를 적극 유치하고 토종기업의 의약품 개발도 지원한 결과, 유럽 내 7위의 의약품 생산국(약 150억유로 수준)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스페인 내 제약산업 종사자는 2015년 기준 약 3만 9천명으로 유럽 6위권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스페인의 의약품(HS코드 30) 수출규모는 약 100억 유로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EU 역내 비중이 50%로 높은 편이다. 같은 해,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123억 유로이며, 동 품목의 무역수지는 23억 유로로 만성적자 구조를 갖고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이다.

2017년 기준 스페인 제약협회인 Farmaindustria에는 총 155개의 제약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105개는 외국계 기업으로 전체 회원사 중 68%에 해당한다.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북미 또는 유럽계로 스페인 시장에서의 오랜 영업활동을 통해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 판매법인 및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지 토착화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스페인 제약협회(PMFarma)에 따르면 2016년 전문 의약품 판매 기준 스페인 제약시장 매출 1위는 스페인 토종 기업인 Cinfa社로 7.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Normon(6.2%), Teva(5.3%), Kern Pharma(5.1%)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2018년 7월 기준).

스페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의약품 박람회(CPhI)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이다. 동 박람회는 유럽서 매년 순회 개회되며, 2018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 2018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 의약품 박람회(CPhI)
  - 홈페이지: http://www.cphi.com/europe/home/
  - 전화: 0034-626-632-326
  - 이메일: mcacho@ifema.es

건설/인프라/플랜트

스페인 건설산업은 관광업의 호황과 국민들의 소득 개선에 힘입어 2000년도 중반까지 크게 호황을 누렸으며, 국가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며 2017년을 기점으로 건설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이 스페인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2007년에는 10.1%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을 거듭해 2017년에는 5.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건설협회(FIEC)에 따르면, 2017년 스페인의 건설 부문 매출액은 약 1,130억 유로로 독일(3,220억 유로), 영국(2,210억 유로), 프랑스(1,710억 유로), 이탈리아(1,230억 유로)에 이어 유럽 5위를 기록했다.

스페인 건설기업은 풍부한 시공경험과 가격 및 기술 경쟁력, 타 지역(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과의 역사/지리/문화적 유대관계 등을 바탕으로 전 세

계 건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건설전문매체인 ENR이 선정한 세계 250대 건설사 중 스페인계 기업이 총 11개사가 랭크돼 있다. 대표적인 스페인 건설업체로는 ACS(1위), Ferrovial(13위), Tecnicas Renidas(22위), OHL(37위), FCC(41위) 등이 손꼽힌다.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다수의 SOC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거나 취소됐으며, 고실업률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신규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스페인 내수 건설업은 약 10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스페인 내수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19% 감소한 44억 유로를 거두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빠른 경제회복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개선되어 민간 부문의 거주 및 비거주 건축사업 매출이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스페인 건설기업들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2008년 이후 해외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NR에 따르면, 2016년 스페인 건설업계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6년 기준 약 590억 달러로 EU는 물론 중동, 중남미, 북미,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 건설기업들 을 대상으로 각종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특히 스페인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공항, 기차/버스 터미널, 고속철도, 에너지플랜트 등의 분야에 관련된 건설자재나 설비,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격년으로 건설자재 및 장비 박람회(Construmat)가 개최되고 있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축 박람회(CONSTRUMAT)
  - 홈페이지: http://www.construmat.com/
  - 전화: +34 93 233 2000
  - 이메일: construmat@firabarcelona.com

IT

스페인 IT산업은 크게 제조와 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제조는 전자부품 조립, 전자통신기기 및 각종 전자제품 개발 등으로 나뉜다. 서비스의 경우, IT제품 유통, 전자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보수,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 IT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국내외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현지 시장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기업은 텔레포니카, 보다폰, 오렌지, 오노, 요이고, 재즈텔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스페인 전자통신 및 정보사회 연구기관(ONTSI)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IT 분야에 종사 중인 기업 수는 2016년 기준 23,427개로 전년대비 4.0% 늘어났다. 이 중 96%는 IT 서비스 관련 업체이며, 제조기업 비중은 4%에 불과하다. 2011년에서 2016년에 걸쳐 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SW서비스(26.0%), 유통(17.8%), 제조(7.7%), 전자통신(-0.9%) 순이다.

해당 산업 총 매출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83억 유로로 전년대비 7.4% 늘어났으며, 스페인 IT산업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SW서비스(39.8%), 전자통신서비스(34.1%), 유통(22.1%), 제조(3.9%) 순이다.

스페인 IT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분야는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앞으로 광케이블 및 통신 중계장비 등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 주요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각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특히, Telefonica사는 Wayra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

해 무료 공유오피스, 멘토링, 금융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향후 스페인 시장은 물론 유럽, 북미 등 여타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으나 재정 또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인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르셀로나에서 연례 개최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IT 관련 박락회인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여하는 것이다.

-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 홈페이지: http://www.mobileworldcongress.com/
  - 이메일: 상기 사이트의 'Contact Us' 서비스를 통해 컨택 가능

관광

스페인은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과 풍부한 문화자원, 다양한 음식문화 를 갖춘 세계적 관광대국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스페인은 세계에서 프랑스에 이어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가로 2017년에는 총 8,200만 명이 방문했다. 또한 관광업은 스페인 국가 경제의 약 11.2%를 차지하며, 2017년에는 관광을 통해 약 600억 유로의 수입을 거두어들였다.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이며, 그 밖에 대표적인 유럽 휴양지인 발레아레스 제도나 까나리아스 제도 등이 손꼽힌다.

그간 스페인의 관광업은 태양과 해변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여름 온도가 20~40도 사이로 온후한 편이며, 대부분의 지역의 연간 일조량이 300일에 달하는 등 휴양을 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긴 해안가를 따라 대규모 호텔과 레스토랑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서늘하고 습한 편으로, 여름에는 피서지, 겨울에는 스키 등과 같은 겨울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그 밖에 까미노 데 산띠아고 순례길이나 산페르민 소몰이 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스페인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영국인으로 1,767만 명을 기록해 전체 중 23.5%에 달하며, 프랑스인과 독일인도 각각 1,125만 명, 1,120만 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카탈루냐로 같은 해 1,814만 명이 찾았으며, 카나리아 제도와 발레아레스 제도에도 각각 1,326만 명, 1,300만 명이 방문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2017년 기준 868억 유로로 전년대비 12.2% 늘어났으며, 1인당 지출은 1,062유로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관광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카탈루냐,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순으로 각각 192억 유로, 168억 유로, 146억 유로의 지출이 발생했다. 이들이 스페인을 찾는 목적은 대부분 휴가 중 휴식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약 87%).

최근 북아프리카나 터키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관광업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나서면서 스페인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리조트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어, 스페인의 관광산업과 유사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정치, 치안 상황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스페인에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페인이 점차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향후 스페인의 관광산업 성장에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스페인 정부는 쇼핑관광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페인은 매년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쇼핑관광을 통한 수입은 전 세계 7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2019년까지 비유럽 관광객의 스페인 내 tax-free 쇼핑액을 50억 유로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중이다.

스페인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보다는 현지의 다양한 숙박업소에 각종 주방용품/기기, 일회용품 등을 납품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현지에 대형 호텔을 다수 보유한 호텔 체인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에 각종 소비재 또는 내구재 등을 납품하는 수입/유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제품 외에도, 숙박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각종 IT기기 및 솔루션도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은 스페인 내 유망 전시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 매년 초 개최하는 FITUR는 전 세계 3대 국제 관광 박람회로 손꼽히며, 2017년의 경우 165개 국에서 약 1만 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24만 명이 방문했다.

-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관광 박람회(FITUR)
  - 홈페이지: http://www.ifema.es/fitur_01/
  - 전화: +34-91-722-5795
  - 이메일: servifema@ifema.es

한·스페인 교역 동향

개황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교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한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양국 교역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기준 스페인은 한국의 31위 수출대상국이며 33위 수입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연간 교역 규모는 47억 4400만 달러로, 수출(27억 9100만 달러)이 수입(19억 5300만 달러)보다 많은 무역흑자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2008년 스페인 경제위기 시작으로 각종 소비재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함께 급락 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수출액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판매가 대폭 증가해 대 스페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였다.

대스페인 수입은 승용차, 식품, 가스 등의 판매 신장으로 2014년 28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을 넘어서는 등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7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하였다.

2018년 1~5월 양국간 교역규모는 24억 2100만 달러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5% 늘어난 14억 2900만 달러, 수입은 14.8% 증가한 9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4억 37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예년보다 흑자 규모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스페인 투자 누적 건수와 금액은 2017년까지 총 227건, 11억 8,965만 달러이며 실 투자액 기준으로는 약 10억 달러로 집계된다.

대스페인 투자는 한국기업의 스페인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8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스페인 투자가 급감한 바 있으나, 200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스페인 투자 총액의 75% 이상이 최근 10년(2003년 이후) 사이에 이루어졌다.

투자진출 업종은 건설업(32.34%)과 제조업(26.05%), 도·소매업(19.84%), 운수업(10.2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가전 3사 및 완성차, 타이어 등의 현지 판매법인과 지사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운수창고업(한진해운, 현대상선), 제조업(SK이노베이션), 건설업(GS 건설) 등으로 투자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

2011년 말 GS 건설이 스페인의 수처리 업체 Inima사를 인수하면서 건설업 분야의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며, SK 이노베이션은 스페인 최대 정유사인 Repsol과 합작으로 2억 5천만 유로(SK지분 70%)를 투자해 스페인 남부 카르타헤나(무르시아주)에 윤활유 공장을 설립해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인증

스페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EU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검사, 라벨링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CE 마킹제도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3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안전
  · 92/59/EEC(2001/95/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판매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9월 현재까지 29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었고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며, A+, A++, A+++ 로 추가 등급 표시가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유럽 특허청 등 크게 3곳으로 나뉜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 외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EU 가입 이후 기존 국내제도 대부분을 EU의 통일된 제도에 맞춰오고 있으나,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EU 통합특허의 공식언어(영국, 독일, 프랑스 어)에 스페인어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EU 통합 특허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 특허를 받거나,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에 출원 후 스페인 특허청의 인정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를 비롯한 상표법, 실용신안 등과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특허 및 상표법, 실용신안 등이 등록(registration)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저작권은 등록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특허 및 실용 신안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며, 저작권은 이러한 특수 목적 이외에 더 큰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EU FTA 체결로 인해 지재권 침해 상품의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농수산물 및 주류 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유효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ㅇ 유럽특허청
  - Web: http://www.epo.org
- ㅇ 출판 저작권 협회(SGAE)
  - Web: http://www.sgae.es
- ㅇ 문학 저작권 협회
  - Web: http://www.cedro.org
- ㅇ 스페인의 시청각 협회
  - Web: http://www.egeda.es
- ㅇ 음반 제작 저작권 협회
  - Web: http://www.agedi-aie.es
- ㅇ 예술 저작권 협회
  - Web: http://www.vegap.es/inicio.aspx

스페인의 투자유치 정책

투자관련 법규

스페인의 기업 및 상업법은 2010년 7월 2일 개정된 자본기업 법률 1/2010을 기본으로 한다. 스페인은 동 법률에 의해 법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을 구분하며, 동 법률과 함께 상업법의 핵심을 차지하는 칙령들로는 1) 1784/1996 칙령, 2) 기업설립, 인수합병, 스핀오프, 자산/부채 국제양도, 기업 국제이전, 국제송금 등 상업적 기업들의 구조적 수정에 관한 칙령 3/2009, 3) 1885년 8월 22일의 상업법에 관한 칙령 4) 상업 서비스 기업에 관한 2/2007 칙령 등이 있다.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해 지역 간의 균등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와 스페인 투자가 사이의 형평성 유지 및 시장자유주의 구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해 외국인 투자경로를 다원화하고자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은 1999년 법령 Royal Decree 664/1999를 제정해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투자보고는 스페인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한다.

ㅇ 보고 의무를 가지는 경우

- 스페인 비거주인 외국투자자의 초기투자의 경우
- 유가증권 투자 :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하는 금융기관 혹은 투자기관의 경우
- 유가증권 외 투자 : 단체에 등록돼 있는 기업 중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스페인 내 투자 관련 법규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관련 법령인 Royal Decree 664/1999,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Royal Decree 1816/1991 및 기타 후속 수정령 42/1993, 1638/1996이 있다. 한국과는 1994년 1월 17일 투자 진흥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을 했고, 1994년 7월 19일부터 발효 중이다.

투자지원기관

스페인은 Invest in Spain이라는 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이며, 해당 기관은 경제부 산하에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

의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라 경제경쟁력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ICEX에 흡수됐다.

- 투자진흥기구(Invest in Spain)
  - 전화: (34) 900 349 000 / (34) 915 035 800
  - E-메일: investinspain@investinspain.org
  - 홈페이지: www.investinspain.org

외국인 투자제한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제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기타 장벽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2018년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

(단위: %)

구분	고용자 부담	피고용자 부담	합계
일반 분담금(연금/의료)	23.6	4.7	28.3
실업 보장	5.5	1.55	7.05
직업 훈련 분담금	0.6	0.1	0.7
급여 보장 기금	0.2	-	0.2
합계	29.9	6.35	36.25

자료: 스페인 노동부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급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 국가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년간 근무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년 1월 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조기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년에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년 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에 근거,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허가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년, 65세 이후: 5년 유효).

개선 실적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상사 주재원 비자/ 거주증 발급)

스페인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은 본사 발령 후 법적 체류문제 해결시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경유하여 비자신청(2~3개월),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2~4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노동(취업)허가 : 2~4개월

- (장기)비자 : 1개월 이내, 동반가족의 경우 3~5개월

- 체류허가 : 45일 이내

스페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재외공관 및 영사관을 통해 신청·발급한다는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도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획득한 이후 스페인에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기업이 출국에 임박하여 외국발령을 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자취득 이전에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 취득시 애로점으로는 반드시 주한 대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성인의 경우 예외가 없으며, 동반 자녀의 경우 수령 시에만 부모가 대리 수령 가능),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등이며, 이 중 특히, 최근 5년간 거주국에서의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페인측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투자진출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를 감안, 가족 대표자에 의한 대리 신청 및 수령, 무범죄증명서 제출요건의 완화, 체류기간 연장시(비자취득 후 1년 기간의 체류기간 부여, 이후 외국인사무소에서 갱신 필요) 우편신청 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스페인 당국은 2003년 12월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이민 통제강화 및 EU 전체에 해당하는

이민정책 준수를 이유로 특별대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당분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진출 지상사 주재원 거주권 갱신 절차 신속화

우리 기업 주재원들의 거주증(resident permit) 갱신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관련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스페인측의 관심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는 지상사 주재원에 대한 비자 및 거주증 발급 기간을 과거에 비해 대폭 단축(3~6개월 → 7~10일) 시켜 주었다.

영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2조 6,284억 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인 반면, 순수 제조업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대외교역은 2017년 수출 5,065억 달러, 수입 6,437억 달러로 세계 8위 무역국이다(수출 10위, 수입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규모 비중이 약 30% 수준인 대외교역 지향 국가로 교역비중이 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 다만 서비스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내 경제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영국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재정통합안에 자발적 제외조치(opt-out)를 취한바 있다.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EU탈퇴/잔류 국민투표 결과(탈퇴 51.9%, 잔류 48.1%),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영국 내 EU 탈퇴(Brexit) 여론은 동유럽 등지의 이민자가 영국으로 집중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EU집행위가 정책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불만과 영국이 EU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더 역동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중장기 비전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직후 메이(May)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EU 탈퇴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 협상을 위한 부처를 신설하고 EU 탈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EU법 제50조에 따른 탈퇴 절차가 개시되었다. 향후 2년간 영국-EU간 탈퇴협상을 진행하고 2019일 3월 29일부로 영국의 EU 탈퇴가 발효될 예정이다.

2017년 6월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이 개시되어, 그해 12월 1단계로 △ 영국 및 EU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 △ 영국의 EU 분담금(financial settlement), △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3개 중점 사항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되었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의 상호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EU탈퇴에 따른 분담금을 정산하며,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통제를 하지 않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후 양 협상단은 상기 원칙적 합의를 문서화한 탈퇴조약 초안을 작업하는 한편, 영국과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특히 양측은 2019년 3월 29일 탈퇴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규정을 준수하는 대신,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약 21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서명·비준할 수 있으나, 발효는 전환기간 종료 이후 가능하다.

영국과 EU는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탈퇴조약 최종안에 합의하고 양측 의회 동의를 얻어 이를 발효시켜야 한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동맹·단일시장·EU VAT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나, 영국은 본토(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북아일랜드를 분리하는 것은 주권적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영국과 EU간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상품 분야는 영국과 EU간 무관세 교역유지 여부가 관건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명 패스포트라고 불리는 역내 금융영업권 확보가 핵심이다. 영국으로서는 EU를 탈퇴하더라도 자국 내 기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원하지만, EU로서는 탈퇴국에 단일시장 접근 혜택을 허용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되어 내부 결속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를 탈퇴하더라도 영국-EU간 특별한 파트너쉽을 통해 양자간 자유로운 교역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으며, EU 이외 국가와도 무역관계 확장을 위해 기존 EU와의 FTA 지속 및 여타 제3국과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통상부는 EU 탈퇴 협상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비즈니스에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백서 및 노딜(no deal) 지침서도 발표한 바 있다.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즈마/LED TV시장에서 연이은 판매성공을 거두며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높지 않았으나 2012년 10월 1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한 이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이 영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BBC 방송 '더 그레이엄 노튼 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교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 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정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규제 재도

수입규제 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도 등도 EU의 28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수입규제를 관장할 정부기관으로 무역구제청(UK TRA: Trade Remedies Authority)을 설립할 예정이다.

반덤핑관세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E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어느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접수하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EU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덤핑으로 간주

②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③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와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EU는 WTO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과 통합,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하는 역외국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해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역외국의 수출 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과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여부

② EU 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Ma terial Injury) 초래 여부

③ 역외국으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제품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 경우

④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상계관세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세이프가드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와는 달리, EU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하는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입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정을 통하여 군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해당 품목들은 EU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들은 유럽 공동 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EU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해당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적대국, 테러 지원국, 무정부 상태의 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북한의 경우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EU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제한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검역관리 규정

비EU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물관련 제품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며,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제출이 요구된다.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화필름 등에는 종량관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관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도 부여한다.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EU는 한국과의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이에 따라 발효 즉시 약 80%에 달하는 교역품목에 대해 한국과의 수출입시 발생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발효 5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독자적인 통상정책 권한을 회복하고 EU 공동 관세가 아닌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EU 탈퇴 이후 영국으로 반입될 수입품에 부과할 자국 관세율표를 현행 EU 관세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이를 WTO에 제출하여 회원국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는 한-EU FTA가 더 이상 한-영 교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한·영 양국은 2016년 12월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브렉시트 이후 한·영 무역·투자 관계가 공백 없이 최소한 한-EU FTA 수준으로 정립되도록 양국간 무역협정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하여 한-EU FTA를 대체할 양국간 무역협정을 협의 중이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gov.uk/trade-tariff/sections)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는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심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 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주요 인증제도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의 28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8/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지침 사례

대상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정과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하여야 함
-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 일반 제품안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92/59/EEC 지침에 의거하여 시판되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짐
- ○ 환경 규격
  -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소음발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인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0월말 현재 31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쉬), 가구(가구, 매트리스), 가정용기기(히트펌프, 온수기반 히터), 기타 가정용품(수세식 변기 및 소변기, 수도), 개인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용품),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인쇄기),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윤활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복사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의류(섬유제품, 신발), 관광 숙소

KITE 마크 제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국의 1977년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 동안 인정하고 있으며, 특허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특허조약 가맹국이고 특허협조 협약의 비준국이다.

유럽 지적재산권 법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체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유형의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어야 한다.

상표는 7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14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산업디자인도 1949년 의장 등록법과 1988년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술)특허 신청 절차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Form 1을 기재하여 필요 시,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 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온라인지원 310파운드, 우편지원 400파운드가 부과된다.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개월 동안 무료 임시 특허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Form 9A 원서에 필요한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비용은 클레임 내용에 따라 150~180파운드가 부과된다.

그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기술 평가단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3~7개월 이내에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의미한다.

공개 열람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Form 10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특허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비용은 온라인 100파운드, 우편 130파운드이다.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며, 매년 납부해야 한다.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사이트(https://www.gov.uk/search-for-patent)를 통해 가능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영국 특허 외에 EU와 세계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디자인 등록 절차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차 갱신 신청료는 70파운드이며(2차 90파운드, 3차 110파운드, 4차 140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 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gov.uk/register-a-design를 참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1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차원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하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pplication Form DF2A'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38512/DF2A_and_guidance.pdf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한 후, 수수료 60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와 디자인 도해 1부를 첨부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에 송부한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이 발급된다. 그 후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심사를 통하여 결과를 받는다.(신청 접수 후 두 달 이내)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에는 2달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획득하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자동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에 각각 게재된다.

통관 및 운송

일반 통관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제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영국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 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WTO와 EU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입허가 신청 절차

영국의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의 수입통관으로 대별되나, 통관 양식은 동일하다.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SAD 양식
- Health Certificate
- C105a, 105b, 109a 양식
- Commercial Invoice
- B/L
- Payment form(L/C 사본 등)

농산물 중 산동물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border control)에 의거하여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과 식품, 어류 등은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검역 조치를 취한다.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 검역증)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한다.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의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다.

영국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이다. 그러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기록도 수용한다. 수용 가능한 통상적인 서류는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탁송 기록(전산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 등이다.

수입 신고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영국의 관세제도는 EU의 관세제도와 동일한데, EU 회원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EU 역외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영국의 관세율표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영국 정부는 1999.6월 식품기준법안(Food Standard Bill)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1999.11월 영국 의회의 승인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통하여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공표하였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기준법의 일반적인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염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은 유통, 보관, 보세지역, 소매, 판매, 도매 등 어떤 단계나 시점에서든 안전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식품표시 규정

식품표시 규정은 식품기준청의 식품표시 소비자 보호부에서 관장하는데,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식품명은 명칭 또는 종류가 될 수가 있으며, 사업체명, 브랜드명, 또는 기타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식품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입신고 방법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이 행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인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별로 GDP의 10~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전체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규모는 2016/17년 기준 약 2,550억 파운드였으며, 그 중 1,180억 파운드는 정부조달, 660억 파운드는 보건부와 NHS, 700억 파운드는 지방정부, 80억 파운드는 공기업에 의한 조달로 나타났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09년부터 조달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 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쇄신,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 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초에 조달공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또한 EU 공공조달지침과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므로, 일정 한도액 이상의 조달건에 대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 그러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의 하나인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공략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써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인 경우 제안서 제출후 협상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조달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내지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조달청에 설치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헬프데스크'나, 영국 런던무역관에 설치된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진출 관련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 내 기업설립은 12파운드로 가능하며,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24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는 물론, 양질의 현대적인 산업 부지도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설비를 신속하고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도 보유하고 있다.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보조금과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인센티브가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국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세계 외환거래의 37%, 장외 금리파생상품거래 39%가 런던에서 이루어져 세계최대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

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은행 수만 보더라도, 파리의 280개, 프랑크푸르트의 250개에 비하여 런던에는 70개국의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에서는 유럽 본토로 향하는 선박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100곳 이상의 유럽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499명 이하인 기업들이며, 500명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기존에 대기업에 적용되었던 세금우대 정책은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공제(RDEC;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 정책으로 대체됨.
- RDEC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 또한 신청 가능함.
- RDEC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R&D 지출의 약 11%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12%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중소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230%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감면은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으로부터 현금 환불 형태로 이루어짐.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됨.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 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 (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은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다.(투자 제도, 투자 촉진 기관 등은- Ⅲ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 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 125,000 이하	0%
£ 125,001 ~ £ 250,000	2%
£ 250,001 ~ £ 925,000	5%
£ 925,001 ~ £ 1.5million	10%
£ 1.5million 초과	12%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北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 https://www.gov.uk/
- 스코틀랜드 : http://www.gov.scot/
- 북아일랜드 : https://www.northernireland.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면 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 - CK

외국인이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 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1(Entrepreneur/Exceptional Talent/Investor) 비자, 영국 내 숙련된 직무(skilled jobs) 오퍼를 받은 인력을 위한 Tier2 비자, 일시 노동자를 위한 Tier5 비자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비 EU 국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T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1 비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Exceptional Talent)나 기업가(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등에게 발급되며 특히 Tier1(Exceptional Talent)비자의 경우 연간 발급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다.

기술인력을 위한 Tier2 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된다.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2 비자의 경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10일 목표) 결정되는 급행제도(Tier2 priority Service)가 있으나 1일 신청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

일반취업 비자인 Tier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번호(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수수료에 차이

가 있다. Tier2(General)비자로는 최대 약 5년 정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Tier 5 비자는 창의적인 혹은 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 활동, 워킹홀리데이(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 내 일시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발급된다.

Registered Traveller Scheme

영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 4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운영 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험 요소가 적은 상기 국가 국민 중 비즈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쉽 서비스이다.

영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RTS 가입이 승인된 우리 국민이 경우 영국 입국 시 서류(landing card)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UK/EU 레인 및 ePassport Gates를 사용할 수 있어 입국절차가 빨라진다. 1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비용은 70파운드이다.

조세제도

2005년 4월 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 과세 년도 :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 ○ 과세 대상 : 영국 내 소득 발생 내. 외국인
-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 자영업자는 SA Form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 (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배당 소득세 (£5,000 이상 과세)
0 ~ £11,850	0%	0%	7.5%
£11,851 ~ £46,350	20%	20%	7.5%
£46,351 ~ £150,000	40%	40%	32.5%
£150,000 초과	45%	45%	38.1%

- ○ 회계연도 2017/18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11,850 파운드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15	2016	2017	2018
Small Profits Rate	20%	20%	19%	19%
Small Profit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0%	20%	19%	19%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HMRC)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음.
- 지점(Branch) :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함.
- 영국내 자회사(Subsidiary) :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함. 단, 외국에

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함.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노무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안정소(Job Centre), 전문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 종료 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함.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최저 급여(Minimum Wage)

대상	최저 급여	비고
25세 이상	시간당 £7.83	
21세~24세	시간당 £7.38	
18세~20세	시간당 £5.90	
18세 미만	시간당 £4.20	
견습생	시간당 £3.70	19세이상 경우, 첫해만 적용

주: 2018년 4월부터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된다. 포함되는 혜택으로는 유급 병가, 연금 등 있다.

출산, 육아관련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년 10월 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동차, 육아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5) 고용계약 종료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508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15,240파운드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6)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8)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4	2015	2016	2017
고용인구(16~64세)	30,755,000명	31,284,000명	31,726,000명	32,056,000명
고용률	72.9%	73.7%	74.4%	75.0%
정규직 노동자 주간 평균 근무시간	37.6시간	37.4시간	37.5시간	37.4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2,026,000명	1,780,000명	1,633,000명	1,480,000
실업률	6.2%	5.4%	4.9%	4.4%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DWP)를 대신하여 국세청(HMRC)에서 징수한다. 2018년 10월 현재, 남자는 1951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53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년 7월 9일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수입

1995년 1월 1일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 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 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증명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29/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발화 제품(Pyrotecnic articles)	2013/29/EU(2015년7월1일부터 적용)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품목	규정 지침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2016년4월 20일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2016년6월13일부터 적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2016년7월19일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2016년1월19일부터 적용)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2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RoHS2 지침	2011/65/EU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8년 10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48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윤활유(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신문용지(Newsprint)
-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s accom modation service)
-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 교육 시설(School, Educational Facility)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EU의 에너지 라벨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회사(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우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주로 연방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 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Oe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급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 내 국내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 방법으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에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 심사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 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8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해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 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 요인이다.

한편, 이 같은 막대한 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공동특허제를 마련해 유럽특허의 경쟁력을 증대키로 했다.

※ 유럽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앞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기술 참고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2015년 12월15일 EU의 상표법 개혁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 신규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 2015/2436)과 상표규정(Trademark Regulation)이 적용되게 됐다. 집행위는 1989년에 제정된 상표지침과 1994년 제정된 상표규정 간 불일치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 신규 형태의 상표 등 규정의 현대화를 위해 이 같은 개혁법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을 2019년 1월까지 국내법에 적용시켜야 하며, 이번 개정 상표지침으로 그간 회원국간 상이하게 규정돼 왔던 단체상표(Collective marks)가 통일화 되고, 상표법 절차가 조화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된 상표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로 유럽상표청으로 불려왔던OHIM은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EU의 공동체 상표인CTM(Community trade mark)은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됐다.

디자인

EU의 디자인 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EU는 2001년 12월,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 공동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종류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 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OHIM)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하는 제도로, 동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신규성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제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장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프라스트럭쳐,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오염 산업, 국가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유럽연합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다.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

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류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단,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권리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한 차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상품규제지수(PMR)는 2008년 기준 OECD 평균 1.34 수준으로, 주요 비교 대상국인 네덜란드(0.97), 덴마크(1.1), 핀란드(1.2), 스

위스(1.3), 스웨덴(1.3)에 비해 높으며, 회사 등록 절차 수, 등록 비용, 소매 무역업 관련 승인 회수 등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기술되었다.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외환 거래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연 1.43~5.12% 수준인데, 2014년 들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출 금리는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서는 가계와 기업 대출 측면에서 대출 금리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기업 대출 금리는 2015년에 이어 그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가계 대출 금리는 상승세

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전년 대비 그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들어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그 신용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 평가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아 왔다.

금융위기 및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실 우려로 인해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면서 2014년 상반기 들어 국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부실 은행 Hypo의 처리 문제가 다시 표면화되면서 해당 주 정부인 케른튼 주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 정부 및 오스트리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tandard &Poor's는 지난 2012년 1월 오스트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춤으로써 3대 신용평가회사 중 오스트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한 최초의 회사가 됐다.

2016년 3월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Poor's는 오스트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신용등급 유지의 근거로, 오스트리아 경제가 2019년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난민 위기 및 부실은행 지원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Moody's는 2016년 6월 평가등급 조정에서 오스트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는데, 중기적으로 오스트리아의 GDP 성장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참고로 Fitch는 지난 2015년 2월 오스트리아의 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던 바, 2018년 10월 기준 오스트리아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모두 두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해외송금 및 환전

기본적으로 해외자본 도입, 수익 송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대외송금 및 환전에 제한이 없다. 단, 14,500유로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서 통계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한-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년 10월 1일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년 1월 23일 서명)」이 발효됨으로써, 5년 이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동향

이탈리아는 2017년 GDP 기준 세계 9위의 국가로 유럽 내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4위이며, 1인당 명목 GDP 31,984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남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부터 0.1%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5년 0.8%→ 2016년 0.9%로 점진적으로 성장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 구	천 명	59,685	60,783	60,796	60,666	60,589
명목 GDP	십억 달러	2,131	2,155	1,834	1,860	1,938
1인당 명목GDP	달러	35,220	35,457	30,163	30,662	31,984
실질성장률	%	-1.7	0.1	1.0	0.9	1.5
실 업 률	%	12.1	12.6	11.9	11.6	11.3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0.2	0.1	0	1.3
재정수지(GDP대비)	%	-2.9	-3.0	-2.6	-2.5	-1.9

자료 : IMF

IMF에서 2018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유로존(19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은 2.4%로, 주요국인 독일(1.9%), 프랑스(1.6%), 스페인(2.7%)의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이탈리아 또한 1.3%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어 각 주요기관별 전망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0-1.1%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내적으로 금융권 부실채권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꼽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각국의 통상보호정책 강화로 인한 이탈리아 수출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꼽히고 있다.

2019년 이탈리아 GDP 성장률 전망

구분	2017	2018 (추정)	2019 전망			
			BankItalia	EU	IMF	OECD
GDP 성장률	1.5%	1.3%	1.0%	1.1%	1.0%	1.1%

자료: IMF, OECD, European Commission, BankItalia, '17년과 '18년은 ISTAT 자료('18.10월 기준)

이탈리아와의 무역환경

이탈리아는 2017년 기준 한국의 27위 수출대상국이자 21위 수입대상국으로, 유럽내 수출대상국으로는 4위(독일, 영국, 네덜란드)이자, 수입대상국 5위(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교역규모 기준 전 세계에서 9위(한국)와 10위(이탈리아)를 기록한 세계 10대 교역대국이나 양국 간의 총 교역액은 약 95억 달러 규모로 주요교역국 대비 시장점유율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이탈리아 무역수지는 한국이 적자를 보이는 구조로 2014년 27.9억 달러의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의 교역량 감소와 함께 적자폭이 미약하게나마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나, 2017년 기준 한국은 19.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증가율)	3,126 (-4.2)	3,473 (11.1)	3,531 (1.7)	3,163 (-10.4)	3,758 (18.8)
수입 (증가율)	5,383 (11.5)	6,261 (16.3)	5,825 (-7.0)	5,425 (-6.9)	5,696 (5.0)
교역액	8,509	9,734	9,356	8,588	9,454
무역수지	-2,257	-2,788	-2,293	-2,261	-1,938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의 교역은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특징이 뚜렷하여 주요산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1위인 승용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자재 및 부품류(합성수지, 철강, 자동차 부품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품은 대부분 소비재(가방, 신발, 의류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對이탈리아 10대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품목	금액	증감율
1	승용차	838.2	39.3	가방	716.0	22.5
2	합성수지	479.2	23.9	신발	331.0	29.4
3	열연강판	241.1	-7.3	승용차	254.7	55.1
4	냉연강판	175.5	17.9	직물제의류	248.8	13.4
5	금속절삭가공기계	125.5	31.0	의약품	240.7	-13.0
6	건설중장비	103.3	184.4	밸브	174.0	-1.1
7	자동차부품	99.0	13.7	펌프	151.2	97.6
8	타이어	80.1	6.0	편직제의류	141.1	22.9
9	아연도강판	75.1	14.3	원동기	120.6	9.0
10	기타정밀화학원료	72.4	37.3	보석	105.3	44.5

자료: 한국 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로 잠정발효되었던 한-EU FTA가 정식 발효되며 양자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전망임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對한국 EU 수입규제 현황(2018년 10월 기준)

품목명	규제내용	시행시기
실리콘 메탈	반덤핑(규제중)	2010.05.29
전기강판	반덤핑(규제중)	2015.10.29
철강제관연결구류	반덤핑(규제중)	2016.03.04
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규제중)	2016.07.18
경량감열지	반덤핑(규제중)	2017.05.04

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는 EU의 무역규제를 따르고 있음
자료: Europe Commission 홈페이지

산업 및 시장특성

이탈리아는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럽內 4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선진국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발달하여 GDP內 제조업 비중이 15.5%에 달해 독일(22.5%)에 이어 유럽 2위의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제조업 종사 업체 수는 40만개, 종사자는 4백만 명, 총매출은 8,700억 유로에 달하며,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높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뛰어난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패션, 식품, 가구 등 소비재 분야 뿐 아니라 기계, 금속, 화학,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포함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제조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신속한 시장대응능력을 강점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에 특화되어 있다.

시장은 지역색이 강해 품목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유통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장인·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이 지역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지역별로 자연발생적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유기적인 생산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0여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제조업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중·북부에 밀집해 있어 남·북부간 산업 및 소비의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나고 있다. 인구의 36%,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남부지역의 GDP는 전체의 24%에 불과하며, 밀라노가 위치한 롬바르디아 주의 GDP는 남부 풀리아주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고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건설 및 인터넷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산업

(1) 섬유 · 패션 산업

이탈리아는 패션명품(고급소비재) 수출 1위국으로 세계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국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킨 덕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장인기술과 선진기술이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진 결과이다. 이로써 다양한 패션분야에서 품질과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Made in Italy'의 신뢰도가 구축됐다.

이탈리아 무역진흥공사(ITA)에서는 패션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Made in Italy'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에서도 2017년 '패션기업연합'을 출범시켜 섬유, 안경, 피혁, 신발, 귀금속 등 패션 관련 협회들을 통합하여 산업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세계 7대 자동차 제조그룹인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의 주요 생산지가 위치해 있는 이탈리아는 피아트(Fiat), 알파로메오(AlfaRomeo), 마세라티(Maserati)와 페라리(Ferrarri) 등 국민 보급형 차량부터, SUV, 럭셔리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 생산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FCA사는 BMW그룹, 인텔 및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에 합류하며 미래형 차량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3) 기계 산업

기계산업은 이탈리아의 제1수출산업으로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며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 분야는 생산액 총 50억 유로로 세계 5위(1위 중국, 2위 독일, 3위, 일본, 4위 미국)이며 수출액은 31억 유로로 세계 3위(1위 독일, 2위 일본)로 유럽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7~2020년 4년간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주도로 추진되는 인두스트리아 4.0(산업 4.0)의 직접 수혜품목으로 생산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주요산업분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 전시 산업

이탈리아는 유럽 2위의 전시산업 국가로 세계 3대 전시장인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47만 ㎡)에서 연 80회의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며 총 3만여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연간 2,000여회의 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이탈리아의 MICE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주요 산업협회

○ 이탈리아 안경협회(ANFAO): http://www.anfao.it
○ 이탈리아 전자공업협회(ANIE): http://www.anie.it
○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ANFIA): http://www.anfia.it
○ 이탈리아 수입자동차협회(UNRAE): http://www.unrae.it
○ 이탈리아 오토바이협회(ANCMA): http://www.ancma.it
○ 이탈리아 신발산업협회(ANCI): http://www.anci-calzature.com
○ 이탈리아 자동포장기계협회(UCIMA): http://www.ucima.it
○ 이탈리아 공작로봇자동화기계협회(UCIMU): http://www.ucimu.it
○ 이탈리아 섬유산업협회: http://www.sistemamodaitalia.it
○ 이탈리아 금형조합: http://www.assocomaplast.com
○ 이탈리아 플라스틱생산협회: http://www.federazionegommaplastica.it/
○ 이탈리아 제약협회: http://www.farmindustria.it
○ 이탈리아 철강산업협회: http://www.federacciai.it
○ 이탈리아 식품산업협회: http://www.federalimentare.it
○ 이탈리아 IT산업협회: htttp://www.assinform.it
○ 이탈리아 가구산업협회: http://www.federlegnoarredo.it

이탈리아의 비즈니스 환경

(1) 회사 설립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은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회사법은 무한책임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Società per Azioni, S.p.A)와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r.l)로 이들 회사는 모두 정관을 통해 설립된다.

① 주식회사 (Società per Azioni, S.p.A)

주식회사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설립 자본금은 5만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증권이 되는 '주식'으로 분할된다. 자본금은 기업 설립시 결정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 최소 25%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75%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한다.

정관은 회사가 위치한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본에 상응하는 가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구성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기관 등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며, 이사회는 회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감사 기관은 기업을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위탁 혹은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②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r.l)

설립자가 자신들이 투자한 출자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기업은 완벽히 독립된 형태로 중간 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이탈리아의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투자 파트너들의 권리는 각자가 출자한 출자금에 따라 정해지며, 정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유한회사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단수화한 소자본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a capitale ridotto, S.r.l.c.r)와 유한합작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emplificata, S.r.l.s.)의 형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러한 형태는 별도의 투자자나 파트너 없이 개인이 설립 가능한 형태로 자본 1유로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고 출자는 현금만 허용된다. 또한, 회사 자본 및 예치금 평가도 은행 증명서만으로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단순화되었다.

(2) 조세 제도

기업에 부여되는 직접세로는 법인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와 기업소득지방세(Imposta res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가 있다. 이 외, 개인소득세(IRPEF), 부가가치세(IVA, 22%)), 등록세 및 양도세 등이 있다.

① 법인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

이탈리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탈리아 및 해외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은 이탈리아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해, 그리고 해외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종전에는 27.5%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2015년 12월 법인세를 하향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부터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② 기업소득지방세(Imposta res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윤이 아닌 매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과세율은 3.9%이나 지자체별 재량권(최대 1%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이 있어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다. 이탈리아에 있는 해외기업의 경우 이탈리아 내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에만 과세한다.

③ 개인소득세(IRPEF)

개인소득세는 연 183일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누진세로 소득 정도에 따라 과세율이 23~43% 나뉜다. 세법상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연 183일 미만 거주자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한국과 이탈리아는 1992년 한-이탈리아 간 이중 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비준, 발효한 바 있어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3) 노동 및 고용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법률 223/91에 따라 신규 채용의 12%는 장애인 근로자(disadvantaged worker)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고용계약은 고정 및 시간제 계약을 따지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다. 계절 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계약 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 계약에 따를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해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4) 노무관리

① 임금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돼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사회보장세(INPS), 신고용주세(IRAP)를 납부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6월

과 12월에 각각 14회차(6월) 및 13회차(12월) 상여금이 지급되야 한다. 13회차 급여는 당해연도 1~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되며, 14회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된다.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②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의해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야간 근무는 24시간 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며, 단체 협약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근로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에 사용 가능하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돼 있다.

병가는 6개월까지(단체 협약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 정규 봉급 및 직위를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하다. 급여는 병가의 기간에 따라 고용주와 사회보장청(INPS)이 나누어 부담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연간 15일의 별도 유급 휴가가 가능하다.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100% 유급(80% INPS 부담, 20% 회사 부담) 휴가가 주어지며, 추가 6개월간의 30%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전액

INPS 부담). 동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되며,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법정 공휴일이 주말 또는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로 간주하고 월급에 포함된다.

③ 해고

이탈리아 정부는 경직된 노동환경 개혁을 위해 2012년 40년 만의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높은 고용 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동 법안의 최대 핵심사항은 노동법 제18조(Articolo. 18)에 의한 평생 고용 폐지이다. 이로써 법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 해고가 가능해졌으며, 개인 해고의 경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보상을 통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노무관리 유의사항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직종과 직위에 따라 최대 허용 수습기간이 다르다. 직종별 수습기간은 전국 노조의 노사 합의에 따른다. 근로자가 일단 근무를 개시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적으로 무효),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 자유롭게 상호통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고용자에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불만족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 전달해야 한다.

투자진출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물류거점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있으며, GDP 기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나 對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는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투자환경의 최대 취약점으로는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관료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인을 위한 적절한 수단 및 관련 지원기관의 부재, 비싸고 불완전한 수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제, 학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 형성 곤란, 일부 지역에서의 여전히 높은 범죄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느린 법정 시스템 등도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에 포함된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개혁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 지수에 있어서도 이탈리아는 하위권에 랭크돼 있다. 2018년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46위를 차지해 전년도 50위에서 4계단 상승했으나 영국(7위), 독일(20위), 프랑스(31위)는 물론 한국(4위)에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를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 외자 유치 매력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소기업 비중이 99%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로 인해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독투자보다는 M&A 및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가 선호된다.

우리나라의 對이탈리아 투자는 교역규모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 對이탈리아 투자는 신고기준 15건, 신고금액은 약 1억 8,948만 달러이며, 누적합계는 총 292건, 금액은 8억7천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1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주요 업종으로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 제한된 업종으로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구조와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 영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시장

이탈리아 금융제도도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은행예금, 보험증서 등의 금융자산과 이들이 매매되는 시장, 금융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기관 세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금융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이탈리아 자본시장(Capital Market) 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시장에서 자본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조달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주식 관련 자본(Equity Capital)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신용금융(Credit Financing)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지수인 FTSE가 있으며, FTSE MIB와 FTSE Italia Mid Cap, FTSE Italia Small Cap, FTSE Italila Micro Cap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이탈리아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220개 이탈리아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약 8,9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데다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모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출장 시 참고사항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2~3주 전에 시간을 두고 미리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관례이며 미팅에 임박해서 이메일 혹은 전화로 미리 일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쥬얼한 미팅이라고 해도 장소, 용무에 적합한 의복 착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정장 차림이 선호된다.

첫 만남에서 악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호칭 역시 Mr.(이탈리아어 Signore)나 Ms.(이탈리아어 Signora)와 같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 번 만나 친숙해진 경우에도 인사예절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치 및 종교 등 민감한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기업들은 8월 한달간, 12월 말~1월 초까지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4월 2~3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팅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한다. 미팅 시간은 오전대가 좋으며, 금요일 오후와 월요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맥과 소통이 중시되는 문화로 업무 관련 식사자리가 길어지는 것 역시 네트워킹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의 내에서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종종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회의가 길어질 경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의 종료 후 도출되기 때문으로 회의는 정보 교환의 자리로 인식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식사자리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에 초반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화 참여가 필요하다.

크로아티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2018년 9월 현재 1억 8천3백만 달러(우리측 통계기준)로 2017년 동기(2억 2천만 달러) 대비 약 16.5% 감소하였다. 이는 2015년부터 급증하였던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의약품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양국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3년에 6천3백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53%로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는 2013년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효과 및 관광산업의 성장 등에 따른 크로아티아 경기 회복에 기인한다.

2018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 7천1백만 달러, 수입은 1천2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1억 5천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의약품(1억1천4백만 달러), 승용차(1천2백만 달러), 합성수지(1천1백만 달러),전기강판(4백만 달러), 아연도강판(4백만 달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로부터는 주로 원동기, 축전기, 기타비금속광물, 편직제의류,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EU가입으로 인해 개선된 투자환경과 EU기금 재원 확보, 보다 용이해진 국제금융기구 융자를 활용해 항만 개발, 교통인프라, 환경 관리, 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4년~2020년 2차 EU기금으로 107.3억 유로의 EU기금(ESI Fund)을 배정받았으며, 여기에 자체기금으로 19.2억 유로를 더해 총 126.5억 유로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전체 기금 중 52%의 투자가 결정되었으며, 13%가 실집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EU 전체 평균인 61% 투자 결정, 19% 실집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0년까지 EU기금 활용률 제고라는 큰 숙제를 떠 앉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총 69개, 9억 4천7백만 유로에 달하는 EU기금 활용 프로젝트의 공개입찰이 진행 중이다.

對크로아티아 진출 투자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건설, 관광, 물류 및 교통분야, 수처리 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의 2015년 기준 에너지 자립도는 48.3%로 EU평균 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석유 및 가스를 자체생산하고 있음에도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해 많은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아드리아해 및 내륙의 석유·가스전 탐사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에너지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국가 에너지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9년이 마지막으로 전략부재가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EU기금 활용을 저해하는 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현재 새로운 에너지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목표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Zagreb 가스화력발전소(90-150MW급) 건설, △Rijeka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건설, △Sisak 및 Rijeka 가스화력발전소(각각 500MW급) 건설, △Senj 수력발전소(240MW급) 보수, Benicanci 지하가스저장소 건설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 측면에서 구 유고권 국가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대국이다. 크로아티아의 EU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현대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GDP(EUR백만, 경상가격)	43,455.97	44,629.96	46,663.73	49,013.17
1인당 GDP(EUR)	10,253.89	10,616.07	11,179.62	11,881.98
GDP 성장률(%,불변가격)	-0.09	2.40	3.54	2.92
연간 인플레이션율(CPI)	-0.20	-0.50	-1.10	1.10
수출(US$백만)	13,836	12,930	13,813	16,036
수입(US$백만)	22,810	20,578	21,905	24,740
경상수지(백만 유로)	857.90	2,018.48	1,204.32	1,901.52
경상수지규모 (%,국내총생산대비)	1.97	4.52	2.58	3.88
대외 부채 (백만 유로, 연말기준)	46,416.28	45,383.52	41,668.32	40,068.88
대외 부채 (%, 국내총생산 대비)	106.81	101.69	89.29	81.75
외환보유고 (백만 유로, 연말기준)	12,687.65	13,706.61	13,514.05	15,706.16
연평균 환율(쿠나/유로)	7.63	7.61	7.53	7.46
연평균 환율(쿠나/달러)	5.75	6.86	6.80	6.62
실업률(%,ILO)	17.33	16.20	13.12	11.22
콜금리(ZIBOR overnight)	0.47	0.70	0.48	0.37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수출입 통계)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대크로아티아 수출	대크로아티아 수입	무역수지
2010	117,762	19,352	98,410
2011	79,404	20,296	59,108
2012	49,784	20,702	29,082
2013	46,307	16,603	29,707
2014	93,728	15,328	78,400
2015	299,912	9,987	289,925
2016	448,413	13,445	434,968
2017	327,605	15,986	311,619
2018.1-9	171,073	12,353	158,720

출처: 한국 무역협회

통상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지역내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부흥과 도로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2016년에 3%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완연하다.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10년 교역량이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최근에는 크로아티

아의 경기회복과 함께 대외교역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2017년에는 약 408억 달러의 교역액(수출 160억 달러, 수입 247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 수출과 수입의 약 70%가 여타 EU 국가와의 교역이다.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 비중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등이다.

크로아티아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EU 가입은 2011년 6월말 EU 가입협상이 종결되어 2011년 12월초 EU 가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1월에 가입협정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각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13년 7월 1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U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터 EU의 공통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적용을 받게 되고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구속되는 한편, 크로아티아가 개별국가와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들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CEFTA 회원국을 탈퇴하게 되어 CEFTA 7개국(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소보)과의 교역시 적용되어 온 관세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외교역에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EU 회원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공적인 EU가입에 고무된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과 쉥겐조약 가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약 가입이 성사될 경우 접근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저하, 결제편의 증대 등의 효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으며,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는 25%로 EU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높다. 관광 분야 서비스·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식용 동물성 기름 및 지방·유아용 식품·플라스틱 등 포장 용기·생수를 제외한 식수·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제조된 백설탕 등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빵·우유·도서·과학 잡지·전문 잡지·예술, 문화, 교육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및 시청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기금 결정 의약품 품목, 수술로 인한 신체 이식품, 공공 필름 상영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크로아티아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25%→24%)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0년으로 도입이 연기 되었다. 하지만 기저귀, 생고기, 생선, 게, 조개류, 야채, 과일, 견과류, 달걀 등 일부 생필품을 2019년부터 13% 부가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민간소비의 점진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등에 부과된다.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 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차량판매가격, 연료별 CO2 배출량, 엔진출력(kW), 엔진용량, 가스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특별세가 결정된다. 차량판매가격에 따라 0~21%의 세율이 결정되고 기타 사항에 따라 추가세금이 가산된다.

► 커피는 품목에 따라 순수 커피 중량 기준 킬로당 6kuna 또는 2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주류성 음료, 담배, 석유·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00리터당 100kuna에서 4,500 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궐련(cigarette)은 1,000개당 310kuna, 소매가격의 34%가 세율로 적용된다, 담배(tobacco)는 킬로당 600kuna, 시가(ciga)와 엽궐련(cigarillo)은 1,000개당 60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 맥주는 40kuna의 세율이 적용되고, 와인의 경우 세율은 0이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EU 공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Trans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EU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Single Admistrative Documents(SAD: "Jedinstvena carinska deklaracija")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가 통관서류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품, 개인 위생 및 청결 용품),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보증서(Quality certifi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음식물, 가공·처치·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을 임시 통관할 경우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ATA Carnet를 발급받으면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ATA Carnet이 해당되는 대상은 샘플 용품,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통관 수속을 대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SAD(Single Admistrative Documents)

► 품목 리스트(List of items)

► 수입 서류

- 발송인(전체 법인명 및 식별 번호(Identification No)
- 수취인(전체 법인명, 주소, 연락인)
- 영수증 번호 및 발급 일자
- 품목 명세서(개별 수량 및 가격과 총액)
- 총/순 중량
- 총 수량 및 포장 방식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00과의 비율(Parity)
- EUR 1(Movement Certificate): 6,000유로 이상 물품

► 식물병리학 통제 증명서(Phytopathological Control Certificate)

- 식물 및 식물 제품
- 목재 포장 재료
- 농업 번식용품(씨, 감자, 과일, 관상용 식물 등)
- 삼림 번식용품

- 식물 보호 제품

► 수의위생 통제 증명서(Veterinary Control Certificate)

-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 제품,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 사료, 부화 알, 동물 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수입 계획(Import Disposition)

수입규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이들 수입허가 필요품목 리스트는 크로아티아 관보(Narodne Novine : www.nn.h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2014년 8월 14일 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부문에서 반덤핑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며, 2020년 10월 31일까지 22.5%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나온 바 있다.

2016년 2월 18일 Thermal paper(certain lightweight) 부문에서 반덤핑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2022년 5월 3일까지 10.3%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세이프가드

2018년 7월 19일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임시 세이프가드가 시행되었다. 지난 3년간 평균 수입규모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 20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EU는 2018년 하반기 세이프가드 조사를 거쳐 2019년 초에는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2010년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적격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적격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EU는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안전 규정에 따른 품질적격평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옵션들 중 생산자가 선호하는 옵션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new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표준은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반면, 생산자가 이미 규정된 세세한 기술적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예전 방식(old approach)은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에 적

용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2012년 1월 게재한 새로운 접근방식(new and global approach)과 예전 방식(old approach)에 의한 기술 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New and global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Low Voltage Equipment
2. Simple Pressure Vessels
3. Machinery
4. Pressure Equipment
5.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6. Hot-Water Boilers
7.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Electric Appliances
8. Lifts
9. Explosives for Civil Use
10.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11.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1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13.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14.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15. Measurement Instruments
16. Toys
17. Recreational Crafts
18. Marine Equipment
19.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European Rail System

20.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21. Construction Products
22.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3. Medical Equipment

(Old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Motor Vehicle
2. Chemicals
3. Cosmetic Products
4. Detergents
5. Fertilizer
6. Pharmaceuticals
7. Glass
8. Textile
9. Footwear
10. Wood

라벨(Label)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표기 또는 병기되어야 한다.

- 생산자명(name of product)
-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full address of the importer and the country of origin)
- 순 수량/무게/부피(net quantity/weight/volume)
- 성분(ingredients)

- 보관 방법(manner of storage)
-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1)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Ministry of Economy(경제부)
- Website: www.mingo.hr
○ Croatian Standard Institute(크로아티아 표준 기관)
- Website: www.hzn.hr
○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크로아티아 인증 기관)
- Website: www.akreditacija.hr

(2) 크로아티아 인증 심벌

2013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 인증이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인증마크]

CE

(3)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정 인증 획득 필요

○ 공식 인증실험 및 발급기관
- 기관명 :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ROBE d.d.
- Website : www.zik.hr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르면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며 수입 후 5년간 관련 부품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독점 발급한다.

EU, 친환경 에너지 라벨(Oeko-Energielabel) 기준 강화

친환경에너지라벨 인증은 1992년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통용된다.

[EU 에코라벨(친환경) 인증]



- EU 집행위는 2016년 8월 5일 EU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새로운 기준 적용, 이를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다 강조
- 개정된 인증 기준은 앞으로 6년간 유효
- 주요 변동사항

· 가구: 위해 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데 중점

· 신발: 생산 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이나 근조조건 상응 여부 중시, 특히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 성분 규제 강화에 중점

* PVC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PVC의 폐기처분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더 나아가 동 소재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 PC와 노트북, 태블릿 제품: 에너지효율성 기준이 강화, 처음으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아울러 기기 제조 시 개별 부품이 재활용 가능한지도 기준으로 적용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관련된 법은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하지만 EU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함께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규제(European Emission Standard)제도를 엄격히 시행 중이다. 1991년부터 Euro 0으로 도입된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2014년 9월부터 Euro 6 형식이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Euro 6에서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비메탄탄화수소(NMHC), 질소산화물(NOx), 매연입자(PM)이며, 허용 기준치 준수시에만 유럽 내 운행이 가능하다.

2018년 9월 1일부터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터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Euro 6d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EU의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단위 : g/km, PN 제외)

규제 단계	형식승인 시작일자	신차등록 규제 시작일자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질소산화물 (NOx)	매연입자 (PM)	입자상 물질(PN)
			g/km					
디젤 엔진								
Euro 1	1992.07	1992.12	2.72(3.16)	-	0.97(1.13)	-	0.14(0.18)	-
Euro 2	1996.01	1997.01	1.0	-	0.7	-	0.08	-

규제 단계	형식승인 시작일자	신차등록 규제 시작일자	일산화 탄소 (CO)	탄화수소 (HC)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질소 산화물 (NOx)	매연입자 (PM)	입자상 물질(PN)
			g/km					
Euro 3	2000.01	2001.01	0.64	–	0.56	0.50	0.05	–
Euro 4	2005.01	2006.01	0.50	–	0.30	0.25	0.025	–
Euro 5a	2009.09	2011.01	0.50	–	0.23	0.18	0.005	–
Euro 5b	2011.09	2013.01	0.50	–	0.23	0.18	0.0045	6×10^{11}
Euro 6b	2014.09	2015.09	0.50	–	0.17	0.08	0.0045	6×10^{11}
Euro 6c	2017.09	2018.09	0.50	–	0.17	0.08	0.0045	6×10^{11}
Euro 6d TEMP*	2017.09	2019.09	0.50	–	0.17	0.08/ 0.168	0.0045/–	6×10^{11}
Euro 6d*	2020.01	2021.01	0.50	–	0.17	0.08/ 0.120	0.0045	6×10^{11}
가솔린 엔진								
Euro 1	1992.07	1992.12	2.72(3.16)	–	0.97(1.13)	–	–	–
Euro 2	1996.01	1997.01	2.2	–	0.5	–	–	–
Euro 3	2000.01	2001.01	2.30	0.20	–	0.15	–	–
Euro 4	2005.01	2006.01	1.0	0.10	–	0.08	–	–
Euro 5a	2009.09	2011.01	1.0	0.10	–	0.06	0.0045**	–
Euro 6b	2014.09	2015.09	1.0	0.10	–	0.06	0.0045**	6×10^{12}
Euro 6c	2017.09	2018.09	1.0	0.10	–	0.06	0.0045**	6×10^{11}
Euro 6d* TEMP	2017.09	2019.09	1.0	0.10	–	0.06/ 0.126	0.0045**	6×10^{11}/ 9×10^{11}
Euro 6d*	2020.01	2021.01	1.0	0.10	–	0.06/ 0.09	0.0045**	6×10^{11}/ 9×10^{11}

자료: EU 집행위/ 독일자동차청(KBA), wikipedia – Abgasnorm
주: 단계별로 차종에 확대 적용, 괄호한의 수치는 COP(conformity of production, 양산 적합성 평가) limits를 의미하며, PN의 단위는 1/km
*주: / 오른쪽 수치는 Real Driving Emissions(RDE) 테스트 적용 수치
**주: Direct injection engine(직접분사 엔진) 장착 차량만 해당

2017년 9월부로 신규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RDE(Real-Driving-Emission) 배기가스 테스트는 실제 주행상황에서 시

행되며, 배기가스 기준 한계치는 EU 집행위 계획보다 다소 낮은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2.1배 높게 허용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이 법적 기준보다 50% 이상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2017년 9월 이전 이미 Euro 6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에는 규정이 각각 2019년 9월 1일과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17년 7월 22일 이후로는 RoHS II가 산업용 모니터링 제어장비에 적용된다. RoHS II란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2일 발효된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對EU 수출에 필요한 CE 인증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품목별 장벽

우리나라 제품의 對크로아티아 수출 시 장벽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수입 전 수입허가를 받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EU, 철강품목 규제 심화에 따른 무역장벽 작용 가능성

2016년 4월 29일, EU 집행위는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해 감시제도를 시행한다는 집행위 규정 No. 2016/670을 공표했다.(관련 EU 관보 L115/41) 최근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역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U 철강기업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 EU는 역내 철강제품 수입 현황에 따라 철강수입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에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철강제품 감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관련 집행위 규정 : EC No.76/2002, No.1337/2002 및 No.1241/2009)

상기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관련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 및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하게 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총합해 역내 철강 수입추이를 파악한다.

규정 적용기간은 2016년 4월 30일~2020년 5월 15일이며, 과도한 행정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kg 미만인 화물은 동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이번 수입감시가 적용되는 철강 제품 HS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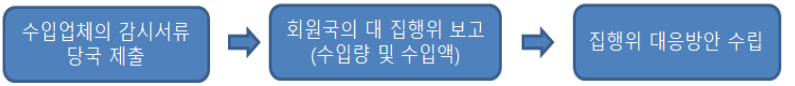
72071114,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7216, 7217, 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1910, 730723, 73079100, **73079311***, **73079319***, **73079980***, 73181290, 73181491, 73181499, 73181541, 73181559, 73181569, 73181581, 73181589, 73181590, 73181619, 73181699, 73181900, 73182100, 73182200

* 현재 EU의 대한국 수입 반덤핑 규제중인 철강제 관연결구류(730793, 730799)의 일부 제품을 포함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722511, 722611) 품목이 이번 수입감시품목에 해당한다.

EU 회원국은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입량 및 수입액을 집행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현황 분석 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EU의 감시대상이 된 품목 중 일부 철강제 관연결구류, 규소방향성 전기 강판 등 현재 대(對)한 반덤핑 수입규제 중에 있는 품목들 역시 감시대상으로 포함된 바, 우리 철강제품의 대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위가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이번 감시결과를 관련 근거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 수입감시 흐름도



크로아티아는 2018년 7월 19일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임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규모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EU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EU는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의 후속조치로 2019년 초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관련기업들은 EU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 2011)을 제정,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또한 EU 정부조달지침 변화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kuna(약 9,33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7만 kuna 이상의 입찰일 경우 크로아티아의 전자 관보인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에 입찰공고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나, 7만 kuna 미만의 입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를 게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 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용 입찰의 경우 90만 kuna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체(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는 조달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입찰 초청서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해야 한다. 공공입찰에 응찰하는 참가자는 입찰주체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가 요구됨)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공고문은 아래 내용을 공지하게 된다.

- contract notice
- design contest notice
- prior notice of intention to award a contest

- periodic(indicative) notice
- notic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ior(indicative) notice on the contracting entity(buyer) profile
- contract award notice
- notice of the results of design contest
- notic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or correction

Public Procurement Act는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세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dence of legal and business capacity(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ith the business, court(commercial) etc, the authorization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procurement, the certificate of membership in a specific organization)
- Evidence of the non-existence of a criminal record
- Proof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
- Proof of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법률을 EU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왔다. 크로아티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의 회원국으로서 21개의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특허권(Patents)은 Patent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87/2005,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특허 담당 기관인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이 되어야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고안품이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요청서, 발명에 대한 기술, 권리에 대한 주장, 도면(필요시), 발명 개요 등이 담긴 신청서를 행정 수수료와 함께 SIPO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Consensual Patents 의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Trademarks)은 Trademark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경우 어떤 형태라도 등록될 수 있다. 문장, 구절, 심벌,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제품의 형태 또는 포장, 3차원 형상물, 색깔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은 Industrial design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의 외관이 시각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산업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되며 25년을 한도로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Copyright Act and Adjacent Act(Narodne Novine, No 167/2003, 79/2007)에 따라 부여되며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창작품이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 절차, 일처리 방식, 수학적 개념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되고,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자는 제3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제작기술(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은 Act on Protection of the Topograpy of Semi-Conducting Products (Naodne Novine, No 173/2003, 76/2007)에 의해 보호되며, 그 제작기술이 지적노력의 산물이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계에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상업적 이용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생명공학, 제약, 식물보호물질(Plant protection products: PPPs, 농약)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 크로아티아는 2001년부터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UPOV)의 회원국이며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7월 1일 EU 가입과 함께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 · 인프라 · 관광 ·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greenfield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지향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기술과 know-how의 도입을 권장하며,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요한 투자유치 방향이다.

2012년 9월 크로아티아는 새로운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을 통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동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 유로에서 5만 유로(소기업) 및 15만 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새로이 포함시키고, 재투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며, 투자

금액, 투자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투자경쟁청(Agency for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및 투자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투자 유치 선호 분야

- 제조업
- R&D 센터
- 전략적 기업 지원 분야(고객관리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처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
- 관광 프로젝트 분야(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헬스 센터)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관세 혜택
- 고용 및 고용 보조금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 해당 투자비용

- 부동산, 건물, 기기 및 기계류(Equipment, Machinery)
- 무형 자산(특허권, 라이선스, Know-how 등 유형자산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2년간의 총 임금

○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유로)	신규 고용인원	감면법인세율 부여기간	고용기간	감면 법인세율
100만 미만	5명 소기업(3명) ICT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10명)	최장 10년 (소기업은 5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0%
100~300만까지	10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75%
300만 초과	15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100%

○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지역 실업률	신규 고용 창출비용 인센티브율	기술혁신 및 개발센터의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전략적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	혁신 및 개발 활동 인센티브
10% 미만	10%(3,000유로 한도)	50%(1,500유로)	25%(750유로)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50만유로 한도)
10~20%까지	20%(6,000유로 한도)	50%(3,000유로)	25%(1,500유로)	
20% 초과	30%(9,000유로 한도)	50%(4,500유로)	25%(2,250유로)	

※ 장비수입 관세 : 무관세 적용

○ 투자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 인센티브

- 지원 대상: 500만유로 이상 투자 및 50인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투자지역 실업률	자본 지출 인센티브
10~20%	투자비용중 아래 해당 분야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5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함.
20% 미만	투자비용의 아래 해당 분야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10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한다.)

○ 직업 훈련 인센티브

신규 고용 창출 인원	신규 고용업체 창출 보조 증가
100명 이상	25%
300명 이상	50%
500명 이상	100%

2013년 11월 14일 전략투자법(Strategic Investment Act)이 발효되어 투자 금액 및 분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적 지원 제공, 국유 부동산 불하 등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지자체의 건설 관련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건설부)로 이관토록 하였다.

○ 전략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

- 2천만 유로(원 표기 1억5천만 kuna)

- EU기금이 공동투자(co-financed)된 경우 1천만 유로

(7천5백만 kuna)

- 저개발 분야 투자의 경우 3백만 유로(2천만 kuna)

○ 전략 투자 분야

- 생산 또는 가공 분야
- 혁신 분야(생산 공정, 기술 및 상품의 개량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분야)
- 비즈니스 지원 분야(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IT, 통신개발센터 등)
- 고부가가치 분야(건축, 디자인, 예술 등 창조활동, 관광, 비즈니스컨설팅, 교육, 산업엔지니어링 등)
- 에너지 분야
- 사회 인프라 분야
- 농・어업 분야

채용 및 고용 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 신고 및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납부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근로 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계약기간, 근무시간, 휴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근무기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연간 최소유급휴가는 공휴일 13일을 제외하고 20일이며, 기타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사유가 있

을 시에는 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 시간은 1주에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7.2%를, 근로자는 급여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 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17.2%에는 근로자 의료보험료 15%, 고용보험료 1.7%, 산업재해보험료 0.5%가 포함되며 근로자는 별도의 의료(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서비스인 HITRO.HR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HITRO-공증 사무소-상사 법원의 3단계로 단축되었고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5일 근무일(15 working days)이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회사창립 서비스인 "e-company"를 이용할 경우 HITRO측은 공증 사무소 등록과 상사 법원 등록이 1일 내에 이루어져 24시간 근무시간(24 hours) 이내에 회사 창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상사 법원 서류제출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켰을 때 가능한 등록일이고 법원이 서류를 기각했을 시,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 HITRO.HR 서비스 사이트: www.hitro.hr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약 334.6억 유로이며,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2018년 상반기에만 8.68억유로(잠정치)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유통, 정유, 부동산, 통신 등의 분야이며, 네덜란드(전체 외국투자의 21.3%), 오스트리아(12.5%), 이탈리아(10.5%), 독일(9.6%) 등 EU 국가가 투자 상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약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구 약 415만 명의 크로아티아 시장을 넘어 구 유고연방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시장까지 포함하는 인구 약 2,000만 명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크로아티아를 구 유고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을 통해 유럽 어느 지역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크로아티아가 갖고 있는 기존 구 유고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함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크로아티아 진출은 주변 유럽 국가들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 내 적극적인 투자진출 활동 실적과 높은 기술 수준을 잘 살릴 경우 크로아티아에게 한국은 신뢰할 만 한 파트너(reliable partn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향후 투자 검토 분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를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약 50%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1년 EU와 20-20 협정을 체결,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으며, 2014년 기준 27.9%으로 EU배분 재생에너지목표를 달성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풍력과 태양광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찰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공동으로 하수 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소각, 절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기량 절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

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부다페스트-리예카 구간 철도가 부설될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망 등과 함께 중유럽 도시와 리예카항을 잇는 운송 인프라가 완성되게 되어 크로아티아의 EU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퍼(슬로베니아) 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인근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약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의 의약 시장은 EU 및 중동부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더해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의료 관광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 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 유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3,655.2	2,257.1	1,066.1	1,022.4	1,154.9	737.5	2,298.2	191.3	1,756.6	1,761.9	867.8

출처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투자 장벽

크로아티아는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크로아티아에 설립 및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크로아티아와 상호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 구매 가능)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승인 하에 거주용 부동산만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진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보통 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잔고만 있어도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인출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하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으로 기업을 설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된 소송건수가 2016년 6월 기준 1만8천 건에 달하는 등 소송 지연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을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통업자들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선과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약한 편이며 주로 인근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식 기업 풍토에 보다 익숙한 우리 기업에게는 다소 낯선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제1위 투자국 지위를 미국이 차지하는 등 미국기업의 對크로아티아 투자가 유통업, 제약업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인근 동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적 사법제도 등이 對크로아티아 투자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행정 및 사법 분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잘 교육된 전문적인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對크로아티아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터 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양국 간 교역량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2013년 한·터키 FTA가 발효된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져 2018년 기준 한-터 교역액은 FTA 발효 이전인 2012년 대비 27.1%가 증가한 7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2014년 최고치인 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터키의 국내정치 정세 불안 및 지정학적 안전우려 증가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터키 경기 호조로 14.3%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상반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5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터키 수입은 2013년 FTA 체결 이후에도 이전과 유사한 6~8억 달러 수준을 유지 중이었으나, 2018년 현지화(터키 리라화) 가치 급락에 따른 터키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2.1%가 급증한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터키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출 (증감률)	6,249 (-6.2)	5,385 (-13.8)	6,155 (14.3)	5,980 (-2.8)
수입 (증감률)	790 (20.5)	742 (-6.0)	782 (5.3)	1,189 (52.1)
교역총액 (증감률)	7,039 (-3.8)	6,127 (-12.9)	6,937 (13.3)	7,169 (3.34)

자료:무역협회

2018년 기준, 한국의 對터키 수출 증가 품목은 의료용품, 유기화합물, 스테인리스 철강 평판제품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한국의 對터키 수입 품목 중 의료용품, 승용차, 동 제품, 기타 금속제품 등의 수입이 늘어났다.

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일반 철강제품과 자동차 부품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터키 국내 시장수요도 그 영향을 직접 받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터키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MTI 3단위 기준)

구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품 목	금액	증감율
1	합성수지	939.1	4.2	농약및의약품	368.9	175.5
2	철강판	787.4	0.0	의류	101.5	21.6
3	자동차부품	405.6	-1.4	자동차부품	79.1	9.4
4	농약및의약품	381.0	138.8	동제품	48.8	376.3
5	석유화학합성원료	344.0	24.2	기타금속광물	47.8	-31.3
6	원동기및펌프	244.3	28.3	자동차	46.4	323.5
7	자동차	202.7	-39.4	아연광	33.6	108.2
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59.7	11.9	석유제품	26.1	68.0
9	플라스틱 제품	159.3	-11.6	기호식품	24.1	27.1
10	기타석유화학제품	139.4	-10.9	가정용회전기기	23.2	349.5

자료: 무역협회

한편, 2018년 5월 터키 대통령 국빈방한, 2018년 8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등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년 이래 터키 경제·통상 분야 주요 정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조정 방안의 하나로 우리 측에 터키 농수산물 수입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은, 양국 무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허가

터키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이다.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년 9월 노동부로 일원화된 이후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허가를 비교적 수월히 처리하였던 반면,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 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터키인 5명 고용원칙'규정을 신설하여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일부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① 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딴 경우, ②터키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주재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

도로, 건물 등과 같은 일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화학플랜트, 대규모 공항 및 항만, 장대교량, 해저터널, 초고층빌딩 등과 같이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진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은 주로 EPC사업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기업으로서 시공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외국 건설기업과의 합작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기업과 터키기업이 컨소시움(조인트벤처)을 구성하여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기업들이 건설 중이거나 완공 후 운영 중인 유라시아 해저터널(2016년 12월 개통), 가지안테프 병원(건설 중), 차낙칼레 대교(건설 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터키 정부가 재정 절감과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 형태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계약에 합의한 사항 외에도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터키에서 대규모 건설인프라 국제입찰의 경우 터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낙찰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부과함으로써 입찰 참여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관광서비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터키인 관광객은 연간 2만 7천여 명이었고, 2018년에는 그 숫자가 2만 9천여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8.4% 증가하였다. 터키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017년 12만 여명에서 2018년 약 16만명(한국관광공사 추정치)으로 25.7%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을 방문하는 터키인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터키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5.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터키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터키 내 한국인 가이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에는 다른 많은 나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터키 국적의 관광가이드가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부 등으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려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2018년 7월 신정부 출범(기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편)에 따라 대통령실 직속 투자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스템 내 지나친 관료주의,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정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터키표준인증(TSE)

터키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유럽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Red Line[17]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17)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포르투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등 공업기반은 다소 취약하다. 포르투갈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다수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원유 등 각종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거의 매년 80억 유로에 달하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 유럽과 브라질 · 앙골라 등 인구가 2억이 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대기업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은 레저용품, 소형특수기계, 화장품, 의료분야 등 틈새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한편,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출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 달리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EU FTA 발효 즈음인 2011년 포르투갈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초긴축 정책 시행의 여파로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등 우리의 주종 상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나, 포르투갈에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對포르투갈 수출은 4.59억 달러(전년대비 5.2%), 수입은 2.7억 달러(전년대비 16.1%)를 기록하였고,

2018.1~9월간 對포르투갈 수출은 4.12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2.7%), 수입은 2.44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8.4%)를 기록하였다(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00년대 동구권의 EU 가입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국제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혁신적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세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Golden Visa

포르투갈 정부는 국내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 ①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 매입 ② 100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③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 외국인(쉥겐조약 가입국 출신 제외)에 대하여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2012년 10월 8일 발효시키고 2013년 3월 5일 동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연구, 예술활동 지원, 국가문화유산 복구·유지보수, 중소기업 자본확충 등을 위한 35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까지 확대하였다.

동 제도 시행이후 2018년 9월까지 포르투갈이 골든비자 차원에서 발급한 거주허가 6,562건(외국인 투자액 총 40억 유로) 중 60% 이상이 중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골드비자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 포르투갈 관광산업의 호황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입 후 게스트 하우스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투자규모)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2012년 68.94억, 2013년 20.35억, 2014년 22.60억, 2015년 62.45억, 2016년 57.04억, 2017년 26.70억 유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출처: 포르투갈 중앙은행).

(분야 및 국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 및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77%(2017년)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보험업이 47.67%(29.38억 유로), 컨설팅·과학기술 관련업 11.01%(6.79억 유로), 부동산업 9.25%(5.7억 유로), 도·소매업 8.1%(5억 유로) 순이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프랑스 Renault 자동차 부품공장(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또한, 미국 우버와 구글, 넷플릭스도 리스본에 R&D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2017년 기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3.3%), 스페인(21.5%), 룩셈부르크(19.3%), 영국(8.2%), 프랑스(5.6%), 브라질(2.6%), 중국(1.8%), 오스트리아(1.7%), 스위스(1.6%) 등으로 브라질과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EU회원국들이며, 총 외국인투자 전체의 87.3%에 달한다. 그 밖에 EU 역외 국가들로는 미국(1.4%), 앙골라(0.8%) 등이 있다.

(최근 중국투자 증가) 포르투갈 내 중국 투자액은 2011년 China Three Gorges가 EDP 지분 21.3%를 26.9억 유로에 매입한 이래 이미 100억 유로를 초과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4번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보험 및 의료 분야는 물론 언론, 스포츠 분야까지 포르투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포르투갈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하나로 등장했다.

(전담기관) 포르투갈무역투자청(AICEP :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2002년 투자전담기구로 설립된 투자청(API)이 2007년 무역관광청(ICEP, 1982년 설립)을 통합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무역투자청은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전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AICEP의 한국내 재외사무소는 2010년 5월 폐쇄된 바 있으나, 2014년 11월 10일 북미, 유럽 및 아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에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개설과 한국 사무소 재개설을 발표하였다. 그 후 AICEP

은 2015년 10월 26일 Miguel Frasquilho 청장 참석하에 주한포르투갈대사관내 사무소를 재개설하고 상무관을 파견하여 현재 활동중이다.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현재 적용중인 포르투갈 노동법(Código do Trabalho, 2018년 3월 19일 13차 개정)은 질병 또는 산업재해시 근로자 보호, 성별 또는 인종으로 인한 차별금지, 동등한 기회 제공, 출산 등 여성근로자들의 권리, 교육의 권리, 노조의 권리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2011년 재정위기 발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IMF, EU 및 유럽중앙은행과 서명한 MOU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방식변경 및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 제한 분야

포르투갈은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다만 수도, 우편,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본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과거 2003년 30%에서 2012년 25%, 2014년 23%, 2015년 21%까지 인하하였고,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12월 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①인적 잠재성, 경쟁력, 지역개발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 ②특정 프로젝트 계약을 기본으로 세제 감면 또는 면제, ③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④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상호 보증 등이 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0-48%까지 누진세율에 의해 부과되며, 포르투갈 비거주자(183일 미만 체류자)에게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IRC)의 경우 2018년 현재 21%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15,000 유로까지는 17%, 그 이상에 대해서는 21%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1.5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이상, 35백만 유로 이상 과세 이익에 대하여 각각 3%, 5%, 9%의 국가부가세(state surtax)가 부과되고, 15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지방부가세(municipal surtax)가 최고 1.5%까지 추가 부과된다. 따라서 과세 이익이 연간 35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3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Madeira 자치지역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본토와 동일한 법인세인 21%가 적용되고, Açores 자치지역은 2015년부터 16.8%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보유세(IMI)와 양도세(IMT)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농촌 부동산에 대해선 0.8%, 도시 부동산은 0.3-0.45%, 사법 관리대상인 법인 소유 부동산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상기 세율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지세의 대상이기도 한 양도세는

양수인이 지불하며 농촌 부동산의 경우 5%, 도시 부동산의 경우 6.5%가 적용된다. 항구적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도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0~8%까지 차등 부과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3%로 일부 식료품, 정기간행물, 서적, 의약품, 호텔 숙박요금, 농산품, 승객운송 등에 대해서는 6%의 감면세율, 일부 식료품과 특정 요식업 서비스 그리고 문화공연(음악·무용·연극·영화·투우·서커스 등) 등에 대해서는 13%의 중간세율이 적용된다.

인지세(Imposto do Selo)는 계약, 서류, 명칭, 서적, 규정 등에 대해 부과된다. 각 부문별 세율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취득의 경우 0.8%, 개인 상속 및 기부 등에 의한 물품의 취득은 10%,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재임대는 10%, 계약 등의 보증은 기간에 따라 0.04~0.6%, 신용의 사용도 기간에 따라 0.04~0.6%, 금융이나 신용기관의 이자, 수수료 등은 2~4%,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5% 등이 적용된다.

기타 주류세, 유류에너지세, 담배세, 차량세 등이 있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의 인구는 2017년 약 1,029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 학력이 서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1인당 노동 생산성도 2017년 기준 EU 28개국 중 23번째로 낮은 편이다(출처 : 유로스타트)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협약 체결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 2018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의 경쟁력 순위는 총 140개 국가 중 34위를 차지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인프라(19위), 보건(23위), 비즈니스 역동성(27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

로 높은 단계이며, 반면 거시경제 안정성, 기술 숙련도, 경직된 노동 구조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3년까지 485유로로 동결하였다가, 2014년 10월부터 505유로로 인상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였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580유로이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 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다. 또한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없다.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2010년부터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 항구들의 물류성능 순위(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18년 23위(2016년 3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물동량 기준 포르투갈 최대 항구로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물동량 기준 Sines, Leixões, Lisbon, Setúbal, Aveiro 항 등, 출처 : 포르투갈 통계청)은 수심이 깊고 천혜의 항만여건은 갖추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파업과 종이 없는(paperless) 수속 등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용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있는 물류 중심 항구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항구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경제부)는 최근 Sines항 개발과 관련, 한국과 항만·해운협력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기존 시네스 항만을 확장하기 위해 3백만 TEU 규모의 바스코다가마 신규 화물터미널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총 3단계에 걸쳐 최대 6백만 TEU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1단계 신축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본래 2018년 상반기 중 국제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평가 과정이 지연되어 2018년말 또는 2019년 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네스 항 5개 터미널 중 싱가포르 PSA가 운영중인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최근 5년내 3배의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동량 증가 추세에 따라 터미널 확장 공사를 위해 포르투갈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유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장벽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쉥겐협약 가입국으로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따른 입국사증(단기체류사증 Visto de Estada Temporária 또는 거주증 발급용 사

증 Visto de Residência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포르투갈 이민국(SEF)에서 체류비자를 연장 받아야 한다.

또한, 쉥겐 회원국을 경유하여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입국신고를 하여야 한다(EU 또는 포르투갈의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제외. 위반 시 벌금 부과). 체류허가를 발급·연장받는데 보통 1개월이 소요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별도로 한·포르투갈 양국은 2014년 4월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MOU를 체결하여 매년 18세~30세의 양국 청년 각 200명에 대해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014년 MOU 체결 이후 2015년 19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9월 29건 등 현재 총 82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다(포르투갈 청년들의 경우 2014년 3명, 2015년 4명, 2016년 4명, 2017년 5명, 2018.9월 7명 등 현재 총 23명).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증(Título de Residência)을 소지한 자에 한해 우리나라 면허증을 포르투갈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거주증 발급 후 90일 이내 면허증 신청할 경우 시험이 면제되나 90일 이후 신청 시 도로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요 서류는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포르투갈 기관에서 보관), 반명함판 사진 1장,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Atestado médico), 대사관 확인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번역공증과 체류허가증(거주증)을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제출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현지은행 계좌 개설 후 직불·신용카드 발급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며, 전화·인터넷 설치는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로그

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행정기관(특히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 한편, 복잡한 문서작성의 간소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센터내 집중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금융 분야는 포르투갈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1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Fitch 및 S&P)이 포르투갈 국채를 투기등급으로 평가한 이후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Standard Poor’s 는 국제신용등급을 투기(BB+)에서 투자(BBB-)로 상향 조정하였고, Fitch는 2018년 6월 1일 투기등급(BB+)에서 2단계 상승한 투자등급(BBB)으로 조정하였다.

최근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는 BES 은행, BANIF 은행, 국영은행인 CGD 등이 파산 위기 또는 경영난에 빠지자 과감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국고 투입을 통해 정상화하거나 해외 글로벌 은행에 매각하고 있어, 포르투갈의 금융 부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된다.

2017년 기준, 포르투갈 은행 점유율은 포르투갈 국내은행 53.7%(CGD 21%), 스페인계열 은행 29.2%, 중국, 앙골라 은행 17.1%로 구성되어 있다. Santander Totta, Bankinter, CaixaBank 등 스페인계열 은행들의 점유율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하여 현재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스페인 최대 시중은행인 Santander Totta는 불과 2년사이 Banif(2015년)와 Banco Popular(2017년) 등 2개의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 17%를 차지하고 있고, CaixaBank는 올초 BPI은행에 대해 공개 매수하여 포르

투갈 시장내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Bankinter은 약 1년전 Barclays를 86백만 유로에 인수한 바 있다.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2018년 1~9월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4.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수입액은 2.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하였다.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비하게나마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계속하여 EU역외 교역상대국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72위, 수입상대국 67위(2017년 기준)이다.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9월
수출	334	493	526	436	459	412
수입	204	181	203	233	270	244
무역수지	130	312	323	203	189	168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17년 주요 상품교역 품목(출처: 한국무역협회)

- 수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총 수출액의 27.4%), 차량(14.2%), 철강(10.7%),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9.4%), 전기기기(7.6%), 고무(4.8%), 유기화학품(4.6%), 측정·검사·의료기기(3.6%) 등
- 수입: 의류(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포함, 22.3%), 고무(17%), 의류(16%), 전기기기(13%), 자동차 부분품(6.6%), 신발류(6.3%), 플라스틱 및 그 제품(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3.3%), 냉동어류(3.0%), 가구(2.6%), 도자제품(2.2%) 등

우리 기업 진출 현황

포르투갈에는 1980~90년대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생산법인이 진출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판매법인 1개사(삼성전자), 생산법인 3개사(한온시스템, 유도실업, 두올 보르그스테나)가 진출해 있다.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해 교역 및 투자 액수가 아직까지는 작으나, 최근 상기 생산법인 3개사가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가 금년 중 포르투갈 업체와 합작으로 진출을 추진 중이고, 2016년 한국제약사의 포르투갈 수출사례가 있으며, 포르투갈의 한국 화장품 및 한국 식품(인삼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El Corte Inglés(스페인 백화점) 리스본 지점에 우리 화장품, 홍삼 제품 등을 진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 유망 품목

(1) 재생에너지

2015년 10월 출범한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은 2015~2019년간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 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탄소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유럽내 최고의 연간 일조량이라는 장점을 활용,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를 EU국가에 판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30년간 연간 평균 일조량이 2,799시간(2015년 3,079시간)으로 유럽내 최고수준이다.

현재 한국-포르투갈간 투자보장협정(1996), 이중과세방지협정(1997)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와 2014년 7월 체결된 신재생 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포르투갈 직접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성장 잠재성을 감안하면 직·간 투자 방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유로기금(EU Fund) 활용도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전기(26%), 운송(35%), 냉·난방(39%)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최대 태양광 발전소, 세계 최대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조력발전소(08.9-11월)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18.9월 포르투갈 전기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53%(수력 26%, 풍력 21%, 바이오매스 5%, 태양력 1% 순)로 신재생에너지 단점인 에너지 저장 측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포르투갈은 현재 약 53% 수준인 전기 생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약 26% 수준인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다.

(2)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공기조절기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의 수출과 냉장고·냉동고와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금전등록기,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바 있다.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신축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IT 제품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에서도 2006년 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디지탈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2017년 2/4분기에 69.9%을 기록했고(포르투갈 통신청) 인트라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산 휴대폰은 2017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지, 승용차, 정밀화학, 철강제품 등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충전지 케이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원 콘텐츠 등 모바일 컨텐츠와 동영상 처리, 모바일 플래쉬 구현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4) 고무제품

고무제의 공기타이어는 대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왔는데, 포르투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무역을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

(5) 화장품 · 인삼제품

최근 포르투갈 경제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여성들의 미용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본 시내 유명 백화점 El Corte Inglés와 화장품 전문판매업체 Sephora, Douglas 등에서 한국 화장품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 소개를 요청하는 현지 업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홍삼에 대한 현지 관심도도 높은 편이어서, 진출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6) 전기기기 및 부품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 수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 잠금장치 등 디지털 보안장비 또는 관련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향후 전망도 밝다.

포르투갈내 인쇄회로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고 있고, 위험한 견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실시 중으로 추후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RFID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스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 장치관리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나, 승용차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 등은 여전히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기업 중 하나인 Salvador Caetano 그룹(현대자동차 딜러쉽 및 아프리카 32개국에 현대, KIA 딜러쉽 보유) 오너가 주포르투 명예영사로 임명되어 우리 자동차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섬유 및 의류

섬유와 의류는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의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은 섬유, 의류분야(신발 포함)가 수출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대표산업이고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더욱 현대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몇몇 중소기업이 포르투갈 의류회사에 단추 등을 납품중이다.

(9) 화학제품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로부터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항생물질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0) 냉·온수기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 의료분야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한국바이오켐제약에서 제네리스(Generis)를 통해 포르투갈에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세파항생제 트리악손은 포르투갈 제약기업 BASI社에 100만 바이알 규모로 수출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치아(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동 제품의 수출 또는 현지 직·간접 투자를 검토해 볼만하다. 최근 한국 모 임플란트 제조사는 현지 합작투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농산물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 및 한-폴 무역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800만 명(EU회원국 중 6위), GDP 약 5,249억불 경제규모 세계 24위(2017년 IMF 통계)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장으로 유럽 내 최고)을 달성하였다.

특히,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 실시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EU자금 및 활발한 외국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2017년에는 4.6%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4%의 성장이 예상되어 견고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 도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재정적자폭의 확대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은 폴란드의 2004년 EU 가입을 전후로 하여 최근 10년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국 교역 총액은 2003년 4.5억 달러 수준

에서, 37.5억 달러(수출 31.2억 달러, 수입 6.3억 달러)을 기록하여 8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4.9억 달러로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국이다.

폴란드는 우리의 중·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19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우리의 대 폴란드 투자는 16.9억 달러(2017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롱키(Wronki)에서 냉장고/세탁기 공장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 만도가 바우브쥐흐(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 투자 진출하는 등 폴란드 중서부 지방 중심의 가전 부품 분야, 남서부 지방 중심의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LG화학이 폴란드 남서쪽 브로츠와프 인근 코비에지체(Kobierzycie) 지역 경제특구에 대규모 전기차용 리튬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동 배터리 공장 신설에는 최초 13억 즈워티(약 3,800억 원)가 투자되었고 약 2,5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가져왔다. 동 배터리 공장은 유럽 첫 대규모 전기차용 리튬배터리 생산기지로서 유럽 전역의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폴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는 증감률)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출	3,678 (△10.3)	3,601 (△2.1)	3,850 (6.9)	2,808 (△27.1)	2,912 (3.7)	3,116 (7.0)
수 입	535 (42.2)	775 (44.9)	775 (1.8)	696 (△9.9)	541 (△22.2)	628 (16.0)
무역수지	3,143	2,823	2,823	2,111	2,371	2,488
총교역액	4,213	4,376	4,376	3,504	3,453	3,744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천 USD)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신고건수	19	20	16	30	56	54	543
신고금액	40,023	30,407	102,778	43,143	51,688	203,765	2,055,88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EIU 폴란드 2016-2020 경제 지표 전망

주요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경제성장률(%)	3.6	3.1	2.9	3.4	3.3
산업생산(%)	4.8	3.8	3.6	3.8	4.2
고정자산투자(%)	5.8	3	2.8	3.2	4.3
실업률(평균)	10.5	9.6	9.6	9.2	8.7
실업률(EU통계청기준)	7.5	7.2	7.2	6.8	6.3
물가지수	-1	-0.8	2	1.9	1.2
물가지수(EU HCPI)	-0.7	-0.8	2	1.9	1.2
단기대출이자율	4.9	5.1	5.4	5.6	4.9
재정수지(% of GDP)	-2.4	-2.9	-3.3	-3	-2.7
수출(USD억)	190.8	188.3	200.5	215.5	231.6
수입(USD억)	188.4	190	207	221	239.9
경상수지(USD억)	-1.2	-3.8	-7.6	-8.1	-9.6
경상수지(% of GDP)	-0.3	-0.8	-1.6	-1.6	-1.8
대외채무(USD억)	332.2[d]	347.8	350.3	365.1	366.9
환율(USD, 연평균)	3.77	4.03	4.15	3.93	3.85
환율(EUR, 연평균)	3.9	4.09	4.04	3.89	3.82

출처 : EIU

폴란드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 백만 USD)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유입액	2,733.9	14,266.2	15,268.4	15,688.8	9,182.4

출처 : 폴란드 국립은행

통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은 대부분 전산화가 됨에 따라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에서 개선되었다. 2011년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자 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환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 세관당국의 검토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SAD를 받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4일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됐다. 특히 19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

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주요 사업 활동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
등록(register)	화장품 판매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센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회사의 형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 출신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 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회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즉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

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시 감사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활동은 본사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 정부 보조금 지원(Governmental grants) 제도

폴란드 경제부의 지원금 제도("Programme of support of investments of importance for Polish economy for years of 2011-2020")는 폴란드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내국 기업들도 신청 가능한 현금 지원 제도로, 투자 규모 및 방식과 분야가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평가해 수혜 여부가 선별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투자로 인해 신규 고용 인원 또는 투자 액수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위한 2011~2020년도 예산은 총 7억 2,700만 즈워티이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투자 분야는 자동차, 전자, 항공, 서비스, 연구 및 개발, 바이오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이 우선 지원된다. 외국투자기업, 내국기업 모두 현금 인센티브 신청 가능하며 국적에 대한 차별 없으나, 폴란드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원은 ①대규모 투자액(최소 약 470억 원 이상 투자 및 최소 50명 이상 고용), ②대규모 신규 고용 창출(최소 약 120억 원 투자 및 최소 250명 이상 고용)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지원액은 고용인원, 투자액 및 투자 지역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의해 지원금 한도액이 결정된다.

경제특구 투자 인센티브

과거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여 높은 국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창출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총 14개의 경제특구(폴: Specjalna Strefa Ekonomiczna, SSE)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더 이상 단순 제조업 투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신기술, R&D 등의 분야의 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 투자정책에 맞물려 기존의 14개의 경제특구를 폴란드 전체 국토로 변경하는 정책안을 2017년 중순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2018년 6월 폴란드 상, 하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을 거쳐 올 6월 30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특구 시행령은 2018년 9월 발효되었다. 경제특구 변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이 경제특구

기존에는 제조업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혜택을 받으려면 14개의 정해진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되면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기업 모두 해당)은 기존의 14개 경제특구 지역뿐만 아니라 비경제특구 지역에서도 투자금액 조건과 질적 조건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과거 대비 까다로워진 투자조건

과거에는 투자비용이 최소 10만 유로(약 1억 3000만 원)되면 경제특구 소속 어느 지역이나 투자진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경제특구가 속한 지역의 평균 실업률이 폴란드 전국 실업률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투자기업 규모가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차등화 된다. 투자지역의 실업률은 폴란드 통계청에서 매년 9월에 한번 공시하는 전국 군별 실업률 현황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과거에는 투자비용이라는 양적 조건만 고려됐으나 개정법 시행과 함께 질적 요건도 모두 평가 후 투자 허가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 조건

조건	내용
최소 투자비용	최소 투자비용은 투자지역이 속한 해당 군의 실업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1억 즈워티(약 300억 원): 평균실업률 동일~60% 이하 ② 8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 평균실업률 60% 초과~100% ③ 6000만 즈워티(약 180억 원): 평균실업률 100% 초과~130% 이하 ④ 4000만 즈워티(약 120억): 평균실업률 130% 초과~160% 이하 ⑤ 2000만 즈워티(약 60억 원): 평균실업률 160% 초과~200% 이하 ⑥ 1500만 즈워티(약 45억 원): 평균실업률 200% 초과~250% 이하 ⑦ 1000만 즈워티(약 30억 원): 평균실업률 250% 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또는 R&D 분야 95%, 소기업 95%, 중견기업 80% 수준으로 투자비용이 인하된다. * 대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 해외 지점 등까지 모두 합해 총 249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 연간 본사 및 그룹사의 매출액이 총 5000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이익이 총 43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 해외 지점 등까지 모두 합해 총 50~248명 선의 종업원을 고용. 연간 본사 및 그룹사의 매출액이 총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이익이 총 43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 소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 해외 지점 등까지 모두 합해 총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 연간 본사 및 그룹사의 매출액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이익이 총 10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제조업 질적 투자요건 (총 10점)	① 구조적 개발(3점) - 전문 직업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 제공 (노동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고용인이 최소 70% 이상); - 폴란드가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국가의 현재 개발정책에 부합 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 수출 판매 수준 ② 기술개발(2점) - 폴란드 영업장에 R&D 사업도 수행 - 폴란드 정부 육성책인 고도산업분야 (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 농업식품,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투자 ③ 균형 있는 발전(3점) - 폴란드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지역에 투자 - 영세 또는 중소기업의 투자 -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중소도시 투자 또는 이들 도시와 인접한 지역 또는 평균 실업률의 160 % 이상인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투자 ④ 인적자원 개발 (2점) - 지역 소재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공대 등과 협력 - 현지 직원이 기술 교육 및 전문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10점 만점 중, 최대 5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은 최소 4점 이상, 최대 35% 인센티브를 지하는 지역은 최소 5점 이상, 그 외 기타 지역은 최소 6점 이상을 취득해야 된다. * 투자요건 내용은 경제특구 시행령이 발효된 후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

평균실업률에 따른 투자지역별 투자 인센티브율

투자 인센티브율	기준
50%	전국 평균실업률의 161% 지역
45%	전국 평균실업률의 131~160% 지역
35%	전국 평균실업률의 101~130% 지역
30%	전국 평균실업률의 81~100% 지역
25%	전국 평균실업률의 61~80% 지역
20%	전국 평균실업률과 동일하거나 60% 미만 지역

과거 경제특구법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의 경우 20%를 더 수혜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감면 기간

감면기간	조건
10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25% 미만 지역
12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25% 또는 30% 지역
15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35%, 45% 또는 50% 지역
15년	과거 이미 경제특구였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과거 경제특구 투자 시 대기업에 비해 재정 충원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기업들이 80~95%의 투자금액을 인하 받게 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월하게 경제특구에 투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기업들이 투자 진출시 선호하는 폴란드 남서쪽에 소재한 브로츠와프 지역이나 카토비체 근경 지역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에 비해 매우 낮아 투자금액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진출 고려시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체 의회(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결의는 국가보조금 관련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합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법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 (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이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per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으되, 임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위의 건물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부동산 취득법에서 '외국인' 이란 a)폴란드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b)폴란드 밖에 등록된 법인 또는 c)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a항, b항에 명시된 회사나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의 취득 신청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년 5월 1일)부터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시민이나 기업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농지/삼림지 및 제2의 주택(second house)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농지/삼림지는 EU 가입일로부터 12년간, 제2의 주택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허가와 관련, 내무부의 정책은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기업의 지사)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직접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EA 지역 내 시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즉, 다음에 해당될 경우 EEA 이외 지역의 외국인도 허가가 필요치 않다).

-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부동산구입
- 폴란드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 폴란드 거주 시
- 외국인이 직간접 지배하는 법인이 영업 목적으로 미개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법에 위배될 경우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될 수 있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의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 및 2004년 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세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은 연금, 불구(disability), 사고(산업재해) 및 질병(sickness) 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세는 의무사항이며, 월 단위로 기업 소재지 사회보장기관(ZUS) 사무소에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모두 납부하며, 고용주의 기여분은 피고용자 급여의 19.48~22.67%에 달하며, 피고용자의 기여분은 13.71% 이다.

사회보장세(ZUS) 체계 및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기여분

구 분	기여분(급여 대비)	기여금 분할	
		고용주	피고용자
연금	19.52%	9.76%	9.76%
불구	8%	6.5%	1.5%
사고(산업재해)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0.67%에서 3.86%까지 차등	0.67%-3.86%	-
질병	2.45%	-	2.45%
추가 기여금 :			
노동기금	2.45%	2.45%	-
피고용자복리기금	0.10%	0.10%	-

주: 의료보험은 피고용자가 추가로 9% 부담

위와 같은 사회보장세 체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남성은 1948년 1월 1일, 여성은 1953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피고용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제도를 따르게 된다. 구제도 하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은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위의 사회보장세 외에 건강보험도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급여에서 상기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9%이며, 피고용자에게만 적용된다. 2001년 9월 27일부로 폴란드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폴란드에 있는 모든 피고용자는 사회보장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재원)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폴란드로 단기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주어졌지만, 2010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양국 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만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중복 적용 및 기여금의 이중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적용된다.

① 우리나라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② 폴란드 :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나라의 법령만 적용 받으며, 자영업자나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만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본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게 되어 폴란드에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추후 이 기간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연금 대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만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연금 대상자가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 가입기간도가지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국인 직원이 폴란드에서 연금을 납부할 시 대부분의 경우 폴란드의 최저연금보장 최소 가입기간 25년을 다 채우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인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한국 또는 폴란드에서 연금 수급 시 적용 받게 되었다.

폴란드에서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한 뒤, '한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Fax: 02-3485-9804). 적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사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서는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 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송달하게 된다.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파견 근무지의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혹은 보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차후 연금 급여를 신청 시 우리나라 체류자는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폴란드 체

류자는 폴란드의 실무기관에 이를 청구하면 심사 후 매월 말일에 지급되게 된다.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시스템은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의 법인/개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되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2017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백 2십만 유로(약 14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 영세기업은 15%의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 사무소나 이사회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각종 경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비용, R&D 비용, 공제 가능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대상비용 :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외화환산손익 포함)은 자산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폴란드 세법 내 64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 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 불인정
- 접대비성 비용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1993년 12월 24일 발효한 한-폴란드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에 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중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가능 내용의 쉥겐조약보다 상기 양국 간 교환각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비영리목

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비쉥겐조약국으로 출국 후 재차 귀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해외의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비자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란드 정부도 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외국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유효기간 최대 2년(연장가능)의 거주허가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미 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정부는 고용원 수 등 동 기업 활동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2006년 7월 21일 폴란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2006년 8월 2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1999년 1월 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내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운전면허가 발급된다.

프랑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최근 거시경제 및 정책 동향

프랑스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 이후 3년간 경제성장률이 0.2~0.7%에 머물렀으나, 2015년 1.2%로 회복한 이후 2017년 2.3%로 크게 상승하면서 2011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 출범이후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재정수지도 2013년 GDP 대비 △4.0%에서 2017년 △2.6%로 감소하는 등 경제지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20% 대에 머물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회복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2017년에는 세계 경제회복과 마크롱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 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2.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에도 경기회복 이후 물가가 일부 상승하고 글로벌 수요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은 지속되고 있고 1.6%~1.8%의 성장이 전망된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률, 낮은 대외경쟁력,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도성향의 친기업 자유주의적 기조 하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계구매력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혁신, 변화, 성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PACTE 법안(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고용,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등 4대 주요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57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가계 구매력 제고, 기업의 고용·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혁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성장률(%) : ('12) 0.2 ('13) 0.7 ('14) 0.2 ('15) 1.2 ('16) 1.1 ('17) 2.3

※ 재정수지(GDP 대비, %) : ('13) △4.0 ('14) △3.9 ('15) △3.6 ('16) △3.4 ('17) △2.6

※ 국가채무(GDP 대비, %) : ('13) 93.3 ('14) 94.9 ('15) 95.6 ('16) 96.3 ('17) 97.0

※ 실업률(%) : ('13) 10.3 ('14) 10.3 ('15) 10.4 ('16) 10.1 ('17) 9.4

대외통상 관계

프랑스는 2017년 세계 6위 교역국, 세계 8위 수출국, 그리고 세계 6위 수입국이다.

2017년 기준 세계 무역 현황(WTO)

(단위 : 십억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교역(수출+수입)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0	전체	163,070	10.0	전체	166,360	11.1	전체	329,430	10.6
1	중국	22,702	8.2	미국	24,095	7.1	중국	41,106	11.5
2	미국	15,468	6.6	중국	18,405	15.9	미국	39,562	6.9
3	독일	14,485	8.6	독일	11,669	10.6	독일	26,155	9.4
4	일본	6,982	8.3	일본	6,712	10.5	일본	13,694	9.3
5	네덜란드	6,525	14.3	영국	6,441	1.2	네덜란드	12,257	14.0
6	한국	5,737	15.8	프랑스	6,239	9.1	프랑스	11,589	8.0
7	홍콩	5,503	6.5	홍콩	5,899	7.8	홍콩	11,402	7.2
8	프랑스	5,350	6.7	네덜란드	5,732	13.6	영국	10,891	4.2
9	이탈리아	5,063	9.7	한국	4,784	17.8	한국	10,521	16.7
10	영국	4,450	8.8	이탈리아	4,522	11.2	이탈리아	9,585	10.4

프랑스의 EU 역내 교역의존도는 2017년 58.9%로 2016년보다 0.1%p 늘었다. EU역내 수입의존도는 2016년 대비 0.9%p 증가한 58.8%였으며 수출의존도는 59.1%로 0.8p 감소했다.

프랑스의 EU역내·교역 현황(군수물자 포함)

(단위 : 억 유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역	전체	9,350	100	9,313	100	9,555	100	9,524	100	10,088	100
	EU	5,487	58.7	5,491	59.0	5,567	58.3	5,596	58.8	5,941	58.9
수출	전체	4,281	100	4,279	100	4,461	100	4,432	100	4,640	100
	EU	2,555	59.7	2,581	60.3	2,637	59.1	2,649	59.8	2,740	59.1
수입	전체	5,069	100	5,034	100	5,094	100	5,092	100	5,448	100
	EU	2,932	57.8	2,910	57.8	2,930	57.5	2,947	57.9	3,201	58.8

프랑스의 2017년 무역적자 규모는 808억 유로로 2016년 대비 148억 유로 증가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 증가율(6.8%)이 수출 증가율(4.5%)을 크게 능가한 결과이다. 분야별 무역적자규모는 에너지제품 분야가 390억 유로로 전년대비 75억 유로 늘어났으며, 공산품 분야는 406억 유로로 전년대비 53억 유로 증가했다. 특히, 경제회복에 따라 기계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등 중간재 무역적자가 268억 유로에 달했으며, 기타 공산품 분야도 273억 유로를 기록했다. 지역별 무역적자 규모를 보면 EU가 461억 유로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가 288억 유로로 그 뒤를 이었고 EU외 유럽지역이 68억 유로로 기타(호주 등) 82억 유로보다는 작았다.

프랑스의 2017년 수입 규모는 5,448억 유로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프랑스 경기 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제품 수입 급증이 전체 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2017년 EU에 대한 수입규모는 3,201억 유로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영국에 대한 수입이 38.3% 증가한 것과 독일을 제외한 기타 회원국에 대한 수입이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이다. 역외 유럽지역에 대한 수입은 이보다 더 높은 증가율(13%)을 기록해 398억 유로를 기록했다. 아시아에 대한 수입은

중국, 홍콩, 한국 등에 대한 수입 증가로 6.8% 증가해 930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아메리카에 대한 수입은 0.6% 감소해 479억 유로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제품 수입이 390억 유로로 23.8% 증가했다. 2016년 4.3% 및 4.0% 감소했던 철강제품 및 화학제품의 수입도 각각 12.9% 및 7.5% 증가했다. 의약품 수입도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 수입은 2016년 9.8% 증가에서 8% 증가해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수입은 유럽, 일본 및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라 증가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4억 유로)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억 유로, %)

품목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
수입 총계(CIF)	5,097	1.0	5,092	-0.1	5,448	7.0
농수산물	131	9.1	141	7.6	145	2.9
원유, 전기, 광물	376	-23.0	301	-20.0	384	27.8
농식품	379	2.4	388	2.2	412	6.2
석유제품	196	-28.3	155	-20.6	184	18.4
기계, 전기,전자,정보	1,081	6.6	1,096	1.3	1,148	4.7
운송장비	883	12.0	972	10.0	1,005	3.4
-자동차	490	11.9	538	9.8	581	8.0
-항공기	356	13.3	394	10.6	383	-2.9
기타 공산품	2,015	3.2	2,006	-0.4	2.131	6.2
-의약품	257	-2.9	253	-1.4	262	3.4
-섬유,의류,신발	361	7.4	366	1.4	379	3.6
-목재,종이,판지	125	1.6	126	0.8	130	3.2
-화공품,향수,화장품	423	1.4	410	-3.1	440	7.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240	3.4	243	1.3	258	6.2
-철강 및 금속제품	360	2.3	345	-4.2	389	12.8
-잡제품(가구,보석,게임,운동용구 등)	248	9.3	262	5.6	272	3.8

2017년 수출 규모는 4,640억 유로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과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독일, 영국, 아프리카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주요 수출품 수출 현황

(단위: 억 유로, %)

품목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
수출 총계(CIF)	4,464	4.2	4,430	-0.8	4,640	4.7
농수산물	157	6.5	143	-8.8	139	-2.7
원유, 전기, 광물	89	-11.3	72	-19.2	93	29.4
농식품	445	2.7	445	0.2	473	6.2
석유제품	85	-23.8	70	-18.4	86	23.0
기계, 전기,전자,정보	856	5.1	851	-0.6	882	3.7
운송장비	1,034	10.4	1,062	2.8	1,074	1.1
-자동차	425	8.6	442	3.9	484	9.6
-항공기	579	11.1	579	-0.1	557	-3.8
기타 공산품	1,766	3.4	1,750	-0.9	1,860	6.3
-의약품	292	3.4	293	0.4	296	1.0
-섬유,의류,신발	222	8.3	231	4.1	243	5.2
-목재,종이,판지	84	2.4	84	0	86	2.4
-화공품,향수,화장품	533	1.1	518	-2.8	565	9.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광물제품	181	1.1	183	1.3	190	3.8
-철강 및 금속제품	298	1.7	279	-6.4	314	12.5
-잡제품(가구,보석,게임,운동용구 등)	156	6.1	161	3.2	166	3.1

양국간 교역현황

한국의 대프랑스 교역 규모는 2016년 83억 1,100만 달러로 4.9%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7년 87억 4천만 달러로 5.2% 증가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기준 41억2,5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했다.

대프랑스 수출 규모는 2016년 24억 6,800만 달러에서 2017년 29억 9천만 달러로 21.3% 증가했다. 2018년 5월까지 대프랑스 수출규모는 14억 9,224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했다. 이는 유로화 강세, 프랑스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등에 기인한 것이다.

대프랑스 수입규모는 2016년 58억 4,300만 달러에서 2017년 57억 5천만 달러로 1.7% 감소했다. 2018년 5월까지 대프랑스 수입규모는 26억 3,367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다. 이는 천연가스 및 우라늄 등 신규 수입, 항공기부품, 정밀화학 제품 및 승용차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대프랑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6년 33억 7,600만 달러에서 2017년 27억 5천만 달러로 18.5% 감소했다. 그리고 2018년 5월까지 대프랑스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1억4,143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했다.

한국의 대프랑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3	9,501	26.3	3,488	34.2	6,013	22.1	-2,524
2014	9,461	-0.4	2,639	-24.3	6,823	13.5	-4,184
2015	8,739	-7.7	2,581	-2.2	6,157	-9.8	-3,576
2016	8,311	-4.9	2,468	-4.4	5,843	-5.1	-3,376
2017	8,740	5.2	2,994	21.3	5,745	-1.7	-2,751
2018.1~5	4,132	19.1	1,492	32.9	2,633	12.3	-1,141

10대 품목이 대프랑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전년 동기(54.3%)보다 4.1%포인트가 높다. 5대 수출품목의 수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대 및 10대 수출품목인 의약품과 타이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0.8% 106.7% 증가했으며 나머지 집적회로반도체 및 화장품도 각각 88.6, 62.8% 증가했다. 다만, 항공기부품이 11.7% 감소율을 기록해 6위~10위 수출품목의 비중이 전년 동기 수준에서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프랑스 주요 수출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률
총계	2,468	-4.4	2,995	21.3	1,492	32.9
승용차	397	10.6	751	89.0	406	50.5
축전지	188	-3.7	295	56.7	174	20.0
합성수지	107	-1.5	99	-7.8	56	35.3
자동차 부품	134	18.1	118	-12.4	55	9.3
원동기	61	79.4	69	12.6	37	19.6
집적회로 반도체	53	69.7	56	5.2	36	88.6
항공기 부품	80	25.2	98	22.6	31	-11.7
화장품	33	127.8	46	40.1	28	62.8
의약품	29	-2.0	55	94.1	27	260.8
타이어	19	-36.7	39	107.4	26	106.7

한국의 대프랑스 주요 수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률
총계	5,843	-5.1	5,746	-1.7	2,634	12.3
화장품	368	8.3	407	10.4	197	11.4
가방	313	5.6	314	0.3	148	18.5
의약품	290	6.8	377	29.7	148	2.5
천연가스	0	0	0	0	138	신규수입
항공기 부품	115	6.0	159	38.8	96	89.7
집적회로 반도체	214	25.4	209	-2.5	83	-0.9
기타정밀화학제품	92	-4.8	98	6.4	78	110.8
원동기	122	28.7	212	73.7	65	-19.7
자동차 부품	265	162.6	268	1.2	62	-52.9
펌프	198	-3.2	168	-14.9	60	-31.0

양국간 투자현황

1968년~2018년 6월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6.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다.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는 2008년까지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09년(2.6억 달러)과 2010년(3.4억 달러)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최대 규모인 8.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1월~6월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액은 1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업종별 대프랑스 투자 현황(1968년~2018년 6월 누적금액, 투자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12.4억 달러로 비중이 47.3%로 가장 높으며, 그 외의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4.7억불, 18.1%), 도소매업(3.4억 달러, 12.9%), 광업(2.4억 달러, 9.2%) 등이다.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계**
신고건수(건)	47	41	34	44	43	86	64	59	63	122	66	990
신규법인수(개)	18	12	7	11	11	14	9	13	16	24	6	257
신고금액 (백만 달러)	36	274	506	143	51	91	72	29	296	195	126	2,658
투자금액 (백만 달러)	30	264	338	14	156	60	73	890	67	97	101	2,618

주 : * 2018년 1~6월 누적 실적임.
** 1968년~2018년 6월 누적 투자실적임.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즈니스프랑스(Business France)의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한국 기업의 대프랑스 투자실적은 4건에 63명 고용으로, 2017년 프랑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실적의 0.3%(고용 0.2%)에 해당하며 건수 면에서는 28위이다. 2017년 대한국 주요 FDI 유치 건은 네이버(Naver)의 제록스(Xerox) 유럽 연구센터 인수, 파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 에프(Station F) 내에 80개 작업장 확보와 HDX Cop사의 의료

영상시스템 및 차과용 의자 판매 자회사 설립 그리고 Cell Biotech의 바이오의약품 판매 자회사 설립 등이다.

프랑스는 1971년 처음 한국에 투자(한국유리공업)한 이후 2017년까지 누적금액 기준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EU국가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대폭 감소(전년대비 79.6%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에는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5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가 감소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계
신고건수	39	37	32	36	29	34	34	44	41	1,083
신고금액 (백만 달러)	110	160	236	221	530	208	103	193	280	7,943

관세 및 통관 장벽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관세 및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원산지 등 통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한-EU 관세율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탈 :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http://okfta.kita.net

※ EU의 관세, 수입쿼터, 수입제한 등 규제조치 참고 사이트

- EU의 TARIC 시스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U HS 8단위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각종 수입규제 현황 확인 가능)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ustoms_tariff/index_en.htm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표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Décret n° 2009-697)에 따라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n°2009-69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749979&categorieLien=id

※ 프랑스 표준협회 관련 사이트

- (표준) https://normalisation.afnor.org/nos-solutions/
- (인증) https://certification.afnor.org/

일반적으로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panorama-normalisation

프랑스의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89/336/ EEC)에 따른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n° 94-665)에 따라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n° 94-66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9929&categorieLien=cid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é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관련 사이트 참조: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정부조달

프랑스의 정부조달 시장은 지속 성장 후 성장과 축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조달시장 규모는 839억 유로, 계약건수는 144,796건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조달시장 규모

	2014	2015	2016
계약건수(건)	163,825	150,488	144,796
계약금액(억 유로)	834	852	839

출처: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조달 연구소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14/23/EU, 2014/24/EU, 2014/25/EU)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과 2016년 3월 25일 시행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16-360)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각 계약별 조달방식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전자입찰 등 다양하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별 조달금액에 따라 공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

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 참조:
www.marches-publics.gouv.fr

지적재산권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해 프랑스를 지정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INPI에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지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 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성서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의 경우 INPI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럽 공동체 지재권청(EUIPO)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의 경우도 INPI나 유럽 공동체 지재권청(EUIPO)에 등록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간은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보장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정/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사이트 참조:
http://www.inpi.fr

경쟁정책

2009년 1월 프랑스 정부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프랑스 경쟁청 사이트 참조: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프랑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기업환경 개선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직업 훈련 및 실업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협상을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5개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노동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기업이 경기침체와 시장 수요 변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50인 이하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교섭시 산별 노조의 의무개입 규정을 폐지하였다.

※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혁 자료 참조:
https://www.gouvernement.fr/en/labour-law-reform

직업훈련을 장려하고 견습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보험 혜택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인 실업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500유로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숙련근로자 100만명과 무직 청년층 100만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턴십 가능 연령을 26세에 30세까지로 연장하고 16~20세 견습생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였다.

※ 프랑스 정부의 직업훈련 강화 관련 자료 참조:
https://www.gouvernement.fr/en/apprenticeship-vocational-training-and-unemployment-insurance-reforms.kr

프랑스는 노동시장 개혁과 직업훈련 강화 토대 위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발표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구분기준을 단순화하면서 소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구자의 기업참여와 창업을 유도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를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분참여도 확대한다. 기업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보유 기업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 프랑스 정부의 PACTE 자료 참조: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프랑스는 경제개혁과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9월 향후 5년간 57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산업에 200억 유로, 직업교육에 150억 유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130억 유로, 디지털 국가 구축에 9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 프랑스 정부 대규모 투자계획 자료 참조:
https://www.gouvernement.fr/en/the-big-investment-plan-2018-2022

분야별 투자계획

구분	지원목표	금액(유로)
친환경	저소득 가구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90억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	40억
	재생에너지 생산용량 70% 확대	70억
직업교육	200만 저숙련 인력 훈련·지원	150억
	공교육 지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성과확대 위한 일류대학 육성 지원	35억
	AI, 빅데이터, 나노, 사이버 보안 분야 기업혁신 지원	46억
	농업, 어업, 식품 등 분야 혁신 지원	50억
디지털 국가 구축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통한 접근성 및 효율 제고	44억
	병원장비 현대화, 의학연구 지원, 의료시스템 디지털화	49억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보조금(PAT,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을 통해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개발보조금(PAT): 시행령을 통해 해당 기간별 상세사항을 규정하며 2014~ 2020년 기간의 경우 고용 창출, 사업 다각화 등 지원대상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에게는 10%까지, 중소기업에게는 20~30%까지 지원

아울러, 낙후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 후 2년간은 소득세(impôt sur les bénéfice)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단계별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기업이 혁신활동 및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를 통해서 모든 산업부문, 상업, 농업 등 모든 영역의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한 경우 R&D 연관지출의 30%(해외 데파르트망 소재 기업은 50%), 최대 1억 유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 유로가 넘는 부분은 5%가 적용된다.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20%(해외 데파르트망은 40%), 총액 40만유로가 적용된다.

※ 포함되는 R&D 및 혁신활동 :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비, 특허관련 비용, 시제품 및 파일럿 제품을 본격 제품화하는 활동까지 포함.

※ 중소기업의 범위(EU 기준) : 직원 25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이하

또한, 기업의 개발연구에 관해서는 BPI France가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개발R&D 등 활동(제품·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디자인·마케팅 활동, 지적재산권 관리, 관련된 국제협력 프로젝트 포함)에 대해서 혁신활동을 위한 대내외 비용을 최대 3백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외국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경우 적어도 프랑스기업 1개와 외국기업 1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 개 파트너사의 지분이 75%를 넘어서면 안된다.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교육기관 들과의 다각적 협력활동을 위한 Pôles de compétitivité 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인데, 여기에서는 공동 R&D 활동을 통한 산업화, 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창립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JEI(Jeune Entreprise Innovante, 청년 혁신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R&D 활동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설립 8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총지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입해야 하며, 자연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독립기업이어야 하고 합병이나 분사를 통하지 않은 순수 창업기업이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법인세를 최대 24개월 감면(첫해는 전액, 2년째는 50%) 받게 되며,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해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 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 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돼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l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관, 주식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 통계청,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프랑스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수속센터'(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 CFE)에서 법인이나 지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 기업수속센터는 이용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해 신청자 대신 해당 행정기관으로 보낸다.

기업수속센터에 법인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인대표(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프랑스 내 상업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에 법인 또는 지사를 등록할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은 약 84유로(한화 약 12만 원)이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 관보에 고시하는 비용은 약 230유로(한화 약 33만 원)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기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현재 단일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www.cfenet.cci.fr, www.guichet-entreprise.fr). 또한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변호사, 건축설계사, 의사 등) 영업·업무허가 신청이나 협회가입 신청도 접수하면서 이 기업수속센터의 단일 창구의 기능과 역할은 더 다양해지고 있다. 2001년 이래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해왔으나, 현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2015년 1월 1일 자로 투자청과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기관인 UBIFrance를 통합, Business France를 신설했다.

※ KOTRA 자료 참조: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67

※ 프랑스 투자청 사이트 참조: http://invest.businessfrance.fr

조세 제도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담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45%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2018년도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별 소득세율

2018 세율구간(유로)	세율(%)
9,807	0%
9,807 ~ 27,086	14%
27,086 ~ 72,617	30%
72,617 ~ 153,783	41%
153,783 이상	45%

출처 : www.service-public.fr

법인세율은 원칙적으로 33.3%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고 법인세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3.3%의 추가세를 부담한

다. 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8,12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에 대해 1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다(38,120유로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33.3%의 세율 적용). 한편 프랑스 정부는 현행 33.3%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부터 28.0%수준으로 낮추되, 시행초년에는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75,000유로 수익까지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이며, 예외적으로 10%(박물관, 여객운송 등) · 5.5%(식료품, 장애인용품 등) · 2.1%(의료보험 대상 약품, TV 수신장치 사용료 등) 등 3개의 감면세율이 있다.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소득분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13년 도입되어 2년간 4억 2천만 유로의 세입실적을 거둔 후, 시행 2년만인 2015년 2월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약은 1981년 1월 발효, 1992년 3월 개정)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세제총국 사이트: http://www.impots.gouv.fr

노동 관련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사관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으로 결정된다. 종업원의 이윤 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해 장려하고 있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배치된 파견 근로자는 프랑스와 본국 간에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돼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프랑스나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별되는 프랑스 노동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2013년 '고용안정화법(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2015년 '사회적 대화와 고용에 관한 법', '마크롱법'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제한적이나마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동재판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도입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총리 직권을 적용해 의회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수정 노동법은 관련 시행령이 2017년 9월 발표 즉시 적용되고 있다. 개정 노동법(Loi 2016-1088)은 경제적 해고사유를 구체화하고 근로시간 연장 등 조치에 있어 산업별 단체협약보다 기업내 협약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청년층 고용지원정책 보편화 등 새롭고 강화된 근로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2019년 5개의 마크롱 개정법령도 2017년 9월 22일 내각 비준을 통해 대통령이 서명 후 당일 관보 게재되는 즉시 발효되었다. 2017년 12월 20일 5개 법령의 일관성을 위한 6번째 총괄 수정법령(n. 2017-1718)을 발표했으며 12월 말에는 27개의 시행령을 통해 내용이 보충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되었다.

※ 프랑스 노동법 주요내용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확정기간계약과 확정기간계약으로 구분된다. 계약서는 불어로 작성돼야 한다.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동인 요청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상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18세 이상 민간부분 근로자 등에 적용되며 시급으로 결정된다. 프랑스 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18년 1월 1일 기준,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88유로이다. 월 급여는 세전 1,498.47유로 및 세후 1,173유로이며 연봉은 세전 17,981.64유로 및 세후 이다.

(근로시간)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제는 기업체 간부급 임직원, 육아보조원, 경비원 등 일정 직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노동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당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해 주당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 세금은 면제되며 수당 한도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

(휴가) 근로자는 휴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월 2.5일) 기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의 결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산휴가(자녀 수 및 출산아이 수에 따라 증가함), 병가, 경조사 관련 휴가 등이 있다.

(여성 근로자 보호)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근무 시간대가 야간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 동 여성 근로자는 낮 시간대로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 기본적으로 16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15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연극, 영화, TV, 라디오, 패션모델 등 분야의 경우 및 노동관청으로부터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근로에 대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제도상 고용주 부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건강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 산재보험 등을 부담해야 한다. 2014년 기준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2.8%, 노령연금의

경우 8.45%, 가족수당의 경우 5.25%, 산재보험의 경우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평균 2.44%를 부담한다.

(해고)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 개인적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 시행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는 대기업의 자회사도 그룹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특정 분기 이상의 주문이나 매출의 감소만으로 경제 해고(정리 해고)가 정당화 된다. 10인 이하의 기업은 1분기, 11인~49인 기업은 2분기, 50인~299인 기업은 3분기, 300인 이상 기업은 4분기 이상의 주문이나 매출이 감소하면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등 경제적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돼 정당한 경제해고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해고대상자는 경제해고의 동기나 배경에 이의 제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 명확한 법적 기준은 법원의 임의적인 확대 해석이나 親근로자 성향이 큰 프랑스 노동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임의 해석을 불가능하게 했다.

※ 2017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 정리해고 절차 및 요건 완화: 경기 침체와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정리 해고시 근로자가 해고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부당해고 손해배상액 상한제 도입: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제를 도입, 세전 월급의 20개월분(근속연수 29년 이상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노사협상 요건 완화: 5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교섭시 산별 노조의 의무 개입 규정 폐지

헝가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헝가리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평균 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은 4.0%를 기록하였고,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을 2018년 3.5%, 2019년 3.2%를 전망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EU기금이 경제 전반에 투입되면서 공격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2014~20년 배정된 EU기금의 83%가 2017년까지 기소진됨에 따라 기금 효과가 하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8년 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종료,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형 경제구조를 가지는 헝가리의 경제성장률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한 헝가리 내각은 친 외국기업적인 정책노선을 펼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법인세, 고용주세(사회기여세)를 인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8년 4월 헝가리 총선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연임에 따라 당분간 헝가리의 친 외국기업적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경제지표 : 2018년 10월 10일자 EIU 자료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정)	2019 (전망)	2020 (전망)
명목 GDP (US$ bn)	140,1	122,7	125,7	138,9	152,3	156,8	167,0
명목 GDP (Ft bn)	32,577	34,274	35,376	38,125	40,947	41,654	43,732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5,652	26,268	26,832	28,505	30,335	31,948	32,882
실질 GDP 성장율	4.1	3.3	2.1	4.2	4.2	2.9	1.8
고정투자 증감율	12.3	1.9	-10.6	16.8	11.5	4.5	1.5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76.7	76.8	76.1	73.7	72.0	71.1	70.4
재정수지 (GDP대비)	-2.6	-1.9	-1.7	-2.0	-2.6	-2.1	-1.7
인플레이션율	-0.2	-0.1	0.4	2.3	2.9	3.3	2.6
실업율	7.7	6.8	5.1	4.2	3.7	3.5	3.5
경상수지 (US$ m)	2,038	4,184	7,594	4,054	3,194	2,983	2,983
부채규모 (US$ m)	145,332	131,950	136,163	138,085	138,652	142,221	144,142
외환보유고 (US$ m)	42,019	33,124	25,824	28,002	28,831	30,405	31,760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이미 현지사회에서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자국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헝가리에 투자하는 주요인은 중동부유럽, 발칸지역, CIS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장점과 임금대비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한 유럽내 생산기지로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유럽내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생산 거점으로서 2017년 기준 헝가리 수출의 79.4%, 수입의 78.0%가 EU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헝가리 정부의 E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재집권에 성공한 현 오르반 정부는 유럽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 하에 동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하에 러시아, 중국,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 중이다. 한편, 한국은 2018년 상반기에 총 305.1백만 유로를 헝가리에 투자하면서 대헝가리 투자 1위를 기록했다.

헝가리와의 유망업종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약 1/5인 수준인 인구 968만의 작은 내수시장이기 때문에 헝가리 자체보다는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지 내지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익이 있어 보인다. 또한 중동부유럽 및 발칸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배드 시장으로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헝가리는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로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레지(Prezi) 등 우수한 동유럽 스타트업 기업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엔지니어, ICT 기술분야에서 아직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으나, 2004년 EU가입 이후 임금수준이 더 높은 독일, 영국 등으로의 이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헝가리의 실업률이 3.9%로 낮아지면서 인력부족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노동 수요에 비해 현저하게 공급이 낮은 상황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주변국 및 동남아시아의 제3국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헝가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3대 완성차 메이커인 벤츠, 아우디, 스즈키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협력사들이 위치하고 있다.

Bosch 자동주행차량 R&D 센터,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중국 BYD 전기버스 생산에 관한 투자가 자동차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현지 정부에서는 간주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연간 완성차 49.5만대, 230만개 엔진을 생산해내고 있다.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Flextronics 등 세계 Top 10 EMS 회사 200여개의 산업공장이 진입해 있으며, Samsung, GE 등 주요 전자메이커들의 제조공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생산거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헝가리의 전자·전기 관련 분야에서도 우리 업체의 진출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헝가리 대학들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많은 만큼, 의약품 개발 및 생명공학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헝가리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현재도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헝가리 농산품, 와인, 거위털, 돈육, 천연 화장수에 대한 수입 기회가 유망해 보이며, 헝가리의 대규모 농지를 활용한 농업분야 유럽시장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개요

현 집권 오르반 정부는 2010년 출범 이래 각종 증세, 민간 연금 국유화, 퇴직 정년 연장, 실업수당 축소 등 비정통적 조치(unorthodox measures)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왔다.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조세 징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EU집행위 및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2013년 헝가리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외화표시 대출자 구제법안

201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한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시중은행 상당수가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헝가리로부터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개입 정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한 구제법안의 통과/시행이다.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한 구제법안은 현재 시점의 환율을 인정하지 않고 외화표시 대출이 발생했던 시점(2009년 이전)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은행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취약한 대출자들의 환율변동 위험 부담을 감소한다는 데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은행에 막대한 손실(약1조 포린트(한화 약 4조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표시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 문제는 2011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가 채무 이행 시점의 시장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발생 시점의 환율을 은행에 강제적용시킴으로써 시중 은행들이 큰 피해을 입은 바 있다. 2011년 9월 당시 포린트화 대비 평균 환율이 유로화는 296 포린트, 스위스 프랑은 240 포린트, 일본 엔화는 2.8 포린트였으나, 헝가리 정부는 시중은행에 유로화 250 포린트, 스위스 프랑 180 포린트, 일본 엔화 2 포린트 환율을 강제 적용하였다.

제조업 중심 정책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를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헝가리에서의 고용 창출 및 수출 진흥 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벤츠, 아우디,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스즈키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헝가리 중소기업을 육성·장려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동방 정책

헝가리 정부는 EU 시장에 의존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2013년부터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추진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관계 확대 및 경협증진을 심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2014년 6월 외교부가 국가경제부의 통상기능을 흡수하여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외교통상부내 동방정책 관련 부서를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1) 기계 및 설비

헝가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전기 전자 분야에 대한 상승 폭이 기대된다. 한국 기업에서는 삼성SDI, SK이노베이션(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한국 타이어(4차 증설), 롯데첨단복합소재(제2공장) 등에 대한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 건축자재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분기 기준 전년도 동기 대비 33.3%가 증가했으며 헝가리

건축자재 협회 및 자재 기업과의 인터뷰 결과 2020년까지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신규주택 건설 및 주택 개보수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제도 및 보조금 정책(CSOK)에 따라 수도 부다페스트 및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건축수요가 붐을 이뤘다. 다만 이 제도가 2019년말 종료됨에 따라, 건축수요는 기존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자재 가격 등 생산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자동차 부품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제조업 생산의 30.2%, GDP의 23.3%를 차지하는 헝가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2017년 헝가리에서 생산된 차량은 총 52만 2천대이며, 약 192만개의 엔진이 생산되었다. Audi, Suzuki, Daimler 완성차 3개 기업을 중심으로 약 712개의 자동차 분야 기업이 있으며, 17만 5천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 BMW는 2018년 8월 헝가리 데브레첸 지역에 10억 유로 규모의 신규 공장건설을 착공한 바, 헝가리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타이어 및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그 외에도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삼양사, 한온시스템즈, 롯데첨단소재 등이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1) 의료기기

2016년 기준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은 약 7억 달러 규모이며, 지난 5년간 총 25.4%라는 괄목할만한 성장폭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인구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700불이나 2020년까지 872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20 EU기금 및 헝가리 정부의 병원현대화 계획에 따라 공공의료 체

계의 중앙적인 일원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병원 현대화 수요에 따른 고가 현대적 장비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사설 병원에서도 치과관광 및 현지소득 증가에 따른 사설의료 시장이 점차 확장해가고 있으며, 영상진단기기 등 ICT 결합된 형태의 기기나 검진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대체) 에너지(솔라판넬, 풍력 장비, 수처리 장치)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는 14.65%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2014-2020년 EU펀드중 하나인 EEOP(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내 환경 프로젝트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 에는 전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15억 유로중 32.1억유로(14.9%)가 배정되어 헝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3)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헝가리에는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유럽의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R&D 센터 설립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유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

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리에 연구법인을 운영 중이다.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서유럽 연구인력 임금의 1/3 수준)이지만 이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의료 온천 관광산업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최근 헝가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고, 온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헝가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6)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외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IBM, 루프트한자 등 글로벌기업들이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헝가리는 유럽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부 유럽과 발칸반도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과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관세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 일반제품 :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우리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년 9월 1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제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 원재료 수입가능, 자국생산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헝가리산 소비촉진이 주목적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유사하다. 상기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가 원칙이나 현재는 의무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 소매체인에서만 할인쿠폰을 사용토록 신규법안 시행

헝가리는 소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할인쿠폰인 엘리자베스 바우처(Erzsebet Voucher)를 발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사용처를 자국 소매체인으로 한정하는 신규 법안인 카페테리아 법(Cafeteria Law)를 시행하고 있다. 헝가리 소매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국내 소매체인 보호차원에서 동 법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CBA, Real 등 극히 일부에서만 할인쿠폰이 사용가능해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EU법 위반이 지적되면서, 4월부터 외국계 소매체인인 Tesco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매체인으로 수출되는 우리기업의 제품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Tesco, CBA 체인이 앞으로도 큰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 소매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위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U와의 EEA 협정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85%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18년 기준 0.5%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평균 MFN관세는 37.1%로 여전히 높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며(각 101%, 105%. 43%),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바나나, 감귤류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2018년 WTO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석국들은 노르웨이가 원유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과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과도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규모 국가로서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MSMEs), 수산보조금, 여성 등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와 2005년 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 부터는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7년 기준 EFTA 국가 중 가장 큰 교역 비중(61.4%)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역품목이 주로 선박, 해양 플랜트 및 수산물 등에 집중되어 품목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품(해외 온라인 구매시 NOK350(약 40미불) 이상)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25%의 부가가치세(식료품 15%, 교통, 숙박 및 영화 등 서비스 12%)가 부과된다. 다만, 수산물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에는 예외적으로 11.11%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약40~50%)가 부과된다. 농산품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inspection)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TA 발효 이후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 출처 : www.skatteetaten.no
www.toll.no

통관절차상의 장벽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신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350NOK(약 40미불)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높은 통관료가 부과된다.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를 2005년 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나, 2018년 6월 미국의 노르웨이 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 대상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측에 WTO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요청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령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노르웨이 국내 생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GMO 수입업자는 제품의 사용이 윤리적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색소, 비타

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면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EFTA FTA 회원국인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출처 : Restric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ttps://www.loc.gov/law/help/restrictions-on-gmos/norway.php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년 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7.1%)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

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18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업 부문의 보호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노르웨이는 농업 정책 관련 3가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서 농업 관련 통보 의무를 준수하는 등 투명성에 대한 약속, 저개발국가 등 취약 국가에게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약속, WTO 농업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약속을 언급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시장은 2016년 기준 GDP의 15%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http://www.doffin.no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보수집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정부의 상장·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정부 지분 확대 조치는 지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의회 역시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매각 작업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년 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18]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

18)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4년 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개개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하다. 외국투자가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상의 문제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 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노르웨이 GATS Schedule of Commitments에 명시) 개인 사업가의 국내 거주 의무는 없으나 사업체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 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NOK 5백만(약 62만 5천 미국 달러)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사업체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레져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출처 : http://www.altinn.no/en/Start-and-Run-a-Business

경쟁 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산 연간 매출이 10억 NOK(1억2천 미불) 이상인 합병을 원하는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늦어도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 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의견을 회신을 하여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경쟁청은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갈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수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입국자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현금 지참 총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내·외국인의 원활한 공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노르웨이내 거주지 등록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다. 노르웨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 응시 접수시 필기시험(Theoretical Test) 및 학원시험(Traffic School Test)이 면제 되며,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3개월간 도로 연수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1회 한하여 발급해 준다. 만약 입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제되었던 필기시험 및 학원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러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 · 재정

주요지표	단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e)
인구	백만 명	142.9	143.2	146.3	146.5	146.8	147.0	147.2
명목 GDP	십억 달러	1,447.2	2,206.7	2,059.0	1,363.4	1,280.1	1,563.2	1,564.0
1인당 명목GDP	달러	10,201	14,068	12,972	9,099	10,986	10,654	10,655
실질성장률	%	4.3	3.7	0.8	-2.8	-0.2	1.6	1.5
실업률	%	7.2	5.7	5.2	5.6	5.8	5.4	5.4
소비자물가상승률	%	8.8	6.6	11.9	12.9	6.5	4.1	4.0
재정수지(GDP대비)	%	-3.9	-0.1	-0.4	-2.4	-3.4	-2.2	-1.4
총수출	억 달러	4,004	5,280	4,936	3,519	2,885	3,343	3,364
(對韓 수출)	〃	104.4	113.5	156.6	113.0	100.0	121.0	150.0
총수입	〃	2,487	3,357	3,080	1,963	1,798	2,107	2,221
(對韓 수입)	〃	72.9	110.9	101.2	46.8	51.0	75.0	100.0
무역수지	억 달러	1,517	1,923	1,856	1,556	1,087	1,236	1,143
경상수지	〃	711	713	584	658	353	533	368
환율(연평균)	루블/US$	30.37	31.09	55.43	61.34	67.06	58.53	62.43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02.7	174.3	570.8	220.9	223.1	82.1	110.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31.7	505.9	220.3	68.5	325.4	330.3	-

주: (e)는 예측치
출처: 러시아 통계청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2000년 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출범시키고,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중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2010년 1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출범시키고, 회원국간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조약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을 창설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하였고, 이어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가입하여 현재는 총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AEU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기존의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회원국간 상품·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뿐만 아니라, 공동의 거시경제정책 수립, 분야별 시장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AEU 회원국들은 분야별로 상이한 스케줄에 따라 시장을 통합해 나가게 되며, 분야별 목표 통합시한은 △관세법 2018년, △전력시장 2019년, △주류 담배시장 2020년, △에너지, 운송 및 금융시장 2025년이다.

3국 관세동맹 결성 이후 2010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관세동맹의 관세법은 2018년 1월 EAEU 관세법으로 대체되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와의 교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EAEU 관세법 서명을 계속 미루다가, 2017년 4월 11일 EAEU 관세법에 서명함으로써 EAEU 5개 회원국 모두가 서명을 완료하

였다. 이후 각 회원국의 국회승인 등 절차를 거쳐 EAEU 관세법은 2018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새로운 EAEU 관세법은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AEU 각 국가별 규제를 적용하던 것에서 국가별 규제를 최소화하고 EEC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WTO의 틀에서 국제적인 조건들을 최대한 수용하였다. 세관신고 과정에서 세관신고서가 서면 또는 전자양식 둘 다 통용되던 것에서, 전자양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서면 세관신고서는 정해진 5개의 규정 외에는 통용하지 않는다. 또한 세관신고 시 물품 정보 제출을 요구했던 것에서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는 물품은 물품 정보 제출 없이 바로 세관신고가 가능해졌다. 통관 절차에 있어서는 세관원에 의해서만 진행되던 것에서 당국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관절차와 제품반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통관단일창구를 도입하여 제품 반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 정보 제공이 편리해졌다. 관세동맹 당시 운송수단 및 상품 정보의 사전신고가 세부화되지 않았던 것에서 화물 사전신고가 강제신고와 자진신고로 세부 분류되어 최적의 통관절차가 설계될 수 있다. 제품반출 신고는 근무일 1일 소요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세관법에 규정된 통관절차 14가지에 추가적으로 보세구역, 무료창고, 특별통관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EAEU 회원국에 등록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AEO를 통한 통관절차가 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지연 지불이 허용되는 경우 정확한 기간, 과세가격의 확정이 가능해졌다. EAEU 통합 관세법 시행으로 각국별 상이하던 규정의 혼란이 완화될 것이며, 세관신고 및 제품반출의 전산화와 단일통관창구의 도입으로 기존의 느린 통관절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관법과 EAEU 세관법의 차이점

	기존	새로운 EAEU 관세법
신청서류	세관신고서와 함께 상업서류, 운송서류도 함께 제출	세관신고서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들은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
통관 완료	통관이 담당 검사관(inspector)에 의해 완료	통관이 IT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완료
통관 소요시간	통관에 1근무일 소요	통관에 4시간 소요
일시적수입 (temporary import)	신고된 해당 국가에서만 가능	EAEU 모든 국가에서 가능
통관관련 공인기업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1종류의 허가서와 4가지 항목. 7개의 자격 조건	3종류의 허가서와 19가지 항목. 10개의 자격 조건(재정적 안정성, 창고 보유, 차량 및 노동자 포함)을 통해 자격요건이 구체화
운송수단	회원국 간 열차 이동만 통관 가능	규정이 허가하는 한 열차 외 다른 운송수단도 통관 가능
면세점	출발지에서만 면세점 설립 가능	출발지뿐만 아니라 도착지에도 면세점 설립 가능 (일정 조건 만족할 시)

한편, EAEU는 출범 후 첫 FTA로 베트남과의 FTA를 2015년 5월 체결하였다. 2016년 10월 발효된 EAEU-베트남 FTA로 양국간 교역대상 품목의 88%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5월에 이란과 잠정(Interim) FT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과는 관세양허를 포함하지 않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외에 EAEU는 이스라엘, 세르비아,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7월, 러시아와 WTO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

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국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년 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년 12월 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2012년 8월 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각각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매년 관세율 변경은 9월 1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수입관세율은 5.1%를 기록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시 4년 이내에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8월 정부조달협정 가입 의향을 WTO에 공식 통보하고 2017년부터 양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2018년
TV 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러시아는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고자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일선 관세당국의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 수출업체의 피해는 물론 러시아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관 소요 기간도 2012년 36일에서 2018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입 통관시 소요되는 비용도 2012년 1,800달러(컨테이너 평균)에서 2018년 1,000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World Bank'가 2018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국경통관 부문에서 100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소요시간 등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통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및 OECD 통관서류 및 시간 비교

국가	수출시 소요시간 (Hour)		수출시 소요비용 (USD)		수입시 소요시간 (Hour)		수입시 소요비용 (USD)	
	서류	국경통과	서류	국경통과	서류	국경통과	서류	국경통과
러시아	25.4	72	92	665	42.5	38.6	152.5	587.5
OECD	2.4	12.7	35.4	149.9	3.5	8.7	25.6	111.6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러시아에서 통관되는 상품의 분류는 국제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해당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 CODE) 최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도 HS CODE를 근거로 러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세관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완제출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단가 증빙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우선 예치금(Deposit)을 납부하고, 통관한 후 증빙을 통해 예치금을 환급받는 조건부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잦은 화물검사(Inspection)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발생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초 수입하는 업체는 초기 1~3회 또는 6개월간 세관 통관 시에 실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과정 중 신고된 서류와 실제 제품상 차이점 발생 시에는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차후 검사 시에 일정 기간 100%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러시아 수입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관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관세는 가격에 따른 관세율인 종가세와 제품의 무게 및 부피에 따른 종량세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둘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가입당시 평균 10%였던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7년에 수입관세율 5.1%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까지 4.9%로 인하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관세율은 수입 상대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최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되, 개발도상국에게는 기본관세율의 75%를 적용하고, EAEU 회원국 및 최빈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최혜국 비대상국은 기본 관세의 200%를 적용한다. 관세 이외에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 인보이스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인지세가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수입가격의 18%에 해당되는 수입 부가세(Import VAT)가 추가된다. 아울러 사치품목과 국민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기호상품의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자동차, 보석, 주류, 담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중량, 부피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러시아 관세율 인하 추이

(단위 : %)

	WTO가입	2015	2016	2017	2018	2019
관세율	10	6.1	5.3	5.1	5.0	4.9

자료: Main Directions of the Customs Tariff Policy in 2017 and Plan Period of 2018 and 2019

2014-2021 HS Code별 주요 품목 연 평균 관세율 변화

H.S. Code	품목그룹	연 평균수입 관세율, %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연 평균수입 관세율	4.8	4.6	4.5	4.5	4.5
01-24	식료품 및 농업 원료 (섬유원료 제외)	5.9	5.9	5.9	5.9	5.9
25-27	광물 제품	4.0	4.0	4.0	4.0	4.0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포함	4.5	4.4	4.4	4.4	4.4
28-40	화학 제품, 고무	11.4	11.4	11.4	11.4	11.4
41-43	가죽 원료, 모피 및그 제품	5.6	5.5	5.5	5.5	5.5
44-49	목재 및 펄프종이 제품	7.3	7.3	7.3	7.3	7.3
50-67	섬유, 섬유제품 및 신발	10.5	10.3	10.3	10.3	10.3
71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	6.4	6.4	6.4	6.4	6.4
72-83	금속 및 그 제품	3.6	3.4	3.2	3.2	3.2
84-90	기계류, 장비류 및 차량	9.9	9.4	9.5	9.5	9.5
67-70, 91-97	기타 제품	4.8	4.6	4.5	4.5	4.5

자료: Main Directions of Budget, Tax and Customs Tariff Policy in 2019 and Plan Period of 2020 and 2021

정부조달 장벽

러시아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820억 달러로 러시아 총 GDP에서 37.5%를 차지한다. 전체 조달시장에서 공기업의 조달 규모가 79.8%로 정부 조달 규모보다 비중이 매우 높다. 조달 관련 주요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이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를 투명화하고 소수 기업의 조달

시장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www.zakupki.gov.ru)에 게재되어야 하며, 동 웹사이트 게재와 병행하여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게 경매, 입찰, 견적입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매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고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 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물품 및 서비스는 러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하여 공고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경매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가격, 응찰 공탁금 등이 공고되며,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이 있으며, 통상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하며,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최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견적입찰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 루블을 넘지 않거나, 시작 가격이 25만 루블보다 낮은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서류를 제출하되,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 검토를 통해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개발부령(No.155, 2014년 3월 25일)에 따라 지정된 품목의 경우 자국산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엔지니어링 제품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의약품과 소프트웨어, 2017년에는 식료품 및 보안제품 등으로 정부조달 제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외국산 제품 차별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EA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분야
2014년 7월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기계
2014년 8월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소비재
2015년 1월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기계
2015년 2월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의료
2015년 9월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IT
2017년 1월	외국산 일부 식료품 구매 제한 법령	식품
2017년 2월	국방 및 보안 제품 제한 법령	국방
2017년 5월	외국산 약품 구매 제한 법령	의료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러시아는 2003년 12월 10일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외환규제법')을 제정하여 44회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외환규제법상 거주자는 i) 러시아 국민, ii) 영주권 보유 외국인 및 무국적자, iii)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iv) 러시아 법인의 러시아 역외 지점, 대표사무소, 기타 부서, v)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소속 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한편, 외환규제법상 비거주자는 i) 러시아 국민, 영주권 보유 외국인, 무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ii) 외국법률로 설립되고 소재지가 러시아 역외에 있는 법인(이하 '외국법인), iii) 법인이 아니며, 외국법률로 설립되고 소재지가 러시아 역외에 있는 단체(이하 '외국단체'), iv) 러시아에 소재한 외국의 외교공관, 영사관 및 국가간 또는 정부간기구 산하 해당 국가들의 상주대표부, v) 러시아에 소재한 국가간 또는 정부간기구, 이들의 지사 및 상주대표부, vi) 러시아 내 소재한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의 지점, 대표사무소, 독립적인 조직 내 부서, vii) 국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에 등록 외국법인, viii) 외환규제법에서 거주자로 정의된 자를 제외한 모든 자이다.

중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 제260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이 세관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금 및 여행자 수표 미화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미신고한 후 적발될시 i)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과태료로 부과하거나 ii) 위반 대상물에 대한 몰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16.4조). 다만,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20,000 달러 또는 50,000 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외환밀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러시아형법 제200.1조).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입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를 통한 수익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감독기관은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16년 7월 3일에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해 개인은 기준금액 40,000 루블(법개정 이전 15,000 루블) 이하의 현금 거래(환전)는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능하며 금융 전산거래(비현금거래)의 경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인 여권정보(성명, 주소, 출생지 및 출생일자)입력이 필수사항이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권의 높은 거래 기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

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기업이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업자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저가신고(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지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SGS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인증(GOST-R 또는 CU인증)을 대행할 경우 비용 지불 주체에 따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바,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 업체 명의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경제제재 은행

미국 및 EU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다수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 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

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 8월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 8개(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 SSI 대상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달러 거래 금지에 관한 법을 입안한 상태로, 추후 해당 법령의 통과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 체계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주(州)세(regional taxes),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 · 유아용품 · 의료용품 · 정기(2019년부터 20%로 인상) 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세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 과세율 13% · 관세, 광물추출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 기업자산세 :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 토지세 · 개인자산세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2019년부터 20%로 인상)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 0%이며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 9%, 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 등 35%, 채권소득; 9% 비거주자 :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면세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용도·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겜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 법인 소득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기업들의 경우 최대 13.5%(일부 예외 규정 제외)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과세 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는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소재한 자를 의미한다(세법 제207조 제2항).

세법상 러시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최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외국인지위법')에 따라 고급전문가 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개인 종합 소득신고는 매년 4월 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월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된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미만이더라도 1백만 루블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러시아내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세법 제426조에 발표된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간소득 1,021,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의 2.9%(급여 최대 기준액 연간 815,000 루블)이며 사회보험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의료보험료는 급여액의 5.1%이며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급근로자(HQS) 지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한·러 연금보험협력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하였다. 2012~2015년간 3차에 걸친 실무회담을 통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하였으며, 4차 실무회담은 2016년 개최하였다.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이후	22.0%	2.9%	5.1%	-	30.0%
2015-2017	22.0%	2.9%	5.1%	-	30.0%
2018-2020	22.0%	2.9%	5.1%	-	30.0%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제운송수단의 운용·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러시아 법인 또는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을 등록한 외국법인이 부담하게 되며 소득지급 후 3일 내에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달한다. 외국법인이 대가 수령 이전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신고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러시아 세법은 러시아 내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세법상 법인세 납세자는 i) 러시아 기업, ii) 고정사업장을 통해 러시아 내에서 영업을 하며,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 기업, iii)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대표 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러시아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 수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 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은 20%이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주(州)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다만, 2017-2020년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 중 3%가 연방정부로 17%가 주정부로 귀속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수익자(Beneficiary)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수익자가 러시아 관계기관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의 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러시아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배당되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크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00,000 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급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년 1월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150%까지 공제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비용발생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었으며 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부가가치세율은 18%에서 20%로 인상된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법인 재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 및 쇼핑센터, 오피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 등록대장상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주정부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는 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대부분의 주정부는 세율 2%를 적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경쟁보호법')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 기업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 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 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 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 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보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경제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거짓, 부정확, 왜곡된 정보의 유통) 행위를 통해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제품의 특성 및 정부정책상 독과점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

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1995년 8월 17일, 최근 개정 2017년 7월 29일)에 의거, 자연독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년 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 가입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서비스,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1) 은행업

2018년 10월 1일 기준 영업 중인 은행은 561개이다.

2016년 6월 30일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79.5조 루블)의 55.7%(44.3조 루블)를 보유하고 있으며, 6~20위 금융기관이 21.0%, 21~50위 금융기관이 11.2%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개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7.9%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존에 연방금융시장감독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이 담당하였으나 2013년 9월 1일부터 중앙은행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이상 10%미만의 주식 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07개이며, 이 중 67개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이다.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년 11월), 우리은행(2003년 6월), 하나은행(2008년)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2013년 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은 2007년 12월 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년 1월 9일부터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24일 개인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모든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KEB하나은행도 2008년 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 7월 7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14년 9월 1일 법인설립식을 갖고 은행영업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이 49%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이상이 될 경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규제당국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 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년 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CIS지역 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러시아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 (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19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RTS는 19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MICEX와의 차이점은 MICEX지수는 루블화 표시 지수인 반면, RTS지수는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MICEX와 RTS의 합병에 따라 MOEX(Moscow Exchange)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MOEX는 CIS지역 최대 주식시장으로 세계 30대 주식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4) 보건제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년 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판매·사용은 러 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품 제조에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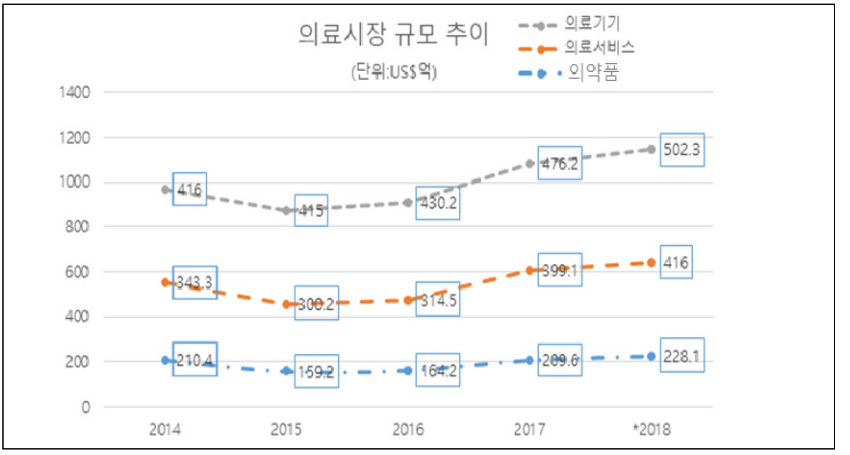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는 관세동맹국가내에서 적절하게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 내 반입에 있어 큰 시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2017년 기준 416억달러로 추산되는 러시아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말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루블로 2013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블로 전년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러시아 의료 시장 규모



자료: 러시아 국제제약회사 연합(AIPM), 세계보건기구(WHO), KPMG, BMI
주: 2018년은 전망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쌍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 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장벽

인증제도

2010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

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키즈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총 45개 품목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37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적합성 인증서(CoC)는 유라시아 현지 인증시험기관에서의 시험 및 서류 심사, 국내 제조사 공장방문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되고 DB 등록이 이루어지며, 인증서 유효기간(최대 5년) 동안 매년 1회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5개국 DB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EAC DoC는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

가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증의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인증 감독 및 인증서 발행을 담당하며,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해당 제품의 국가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U인증 샘플



Certificate of conformity | Declaration of conformity | State registration

지식재산권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 제4부 제7편 지적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하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제도로서, △확대된 선원 불인정 △특허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실용신안의 판단 기준(신규성만 평가) △공개실시권 제안시 등록료 감면 △발명의 단일성 판단기준(위배시 보정 통보만 하고 심사 진행) △'유라시아특허청'의 특허권 인정 △발명자주의 위반시 무효사유 인정 등이 있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권 등을 제때에 등록해 둠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 전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의 이행을 요구해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권, 특허권 관련 외국회사들의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1) 특허권

러시아민법 제7편 제72장에서 특허권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허권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입한 특허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1883년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정, 1973년 특허협약(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 유라시아 특허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있다.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어진다.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 의미하며, 만 14세 미 만의 개인명의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법인은 러시아 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특허청에 외국인이 직접 특허 등록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명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고, 실용신안은 5년간 유효하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3년 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장에 대한 특허권은 10년으로 특허권자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양도는 특허청(Rospatent)을 통해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특허 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도안 제출 후 특허청(Rospatent)의 심의를 거치며, 18개월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신청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며, 특허권을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 특허권을 발급한다. 임시 특허권 상태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정식 특허권이 발급 된 이후에 소급해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한다.

(2) 상호, 상표 등록법

상호는 국가 등록소에 등록 이후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상호권을 지닌 회사는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상호권은 무기한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정 제8조에 따라 협정서에 조인한 모든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특허청(Rospatent)에 제출하고, 이를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Rospatent산하)에서 심의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혹은 법인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서 상표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파리 협정 가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파리협정 가입국에서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1달은 특허청(Rospatent)의 형식상 심의단계로서 필요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 심의로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거부 시 해당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저작권

러시아 법에서는 저작권과 인접권으로 나누어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와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유효하며, 인접권은 그 기간이 짧게는 20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 보조금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말 러시아 정부는 '2013~2020년 러 연방 농업발전 계획'에 따라 2013년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7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곡물 및 우유 생산, 지역 개발, 금융대출 이자, 보험, 농업용 기계 생산, 특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63억 루블(34억 달러)로 연방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장단기 금융대출 이자 지원에만 582억 루블(18.8억 달러)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당연히 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년 8월 WTO 가입으로 SPS(식품 및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 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검역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우리 정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양국간 축산물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러 양국 축산물 검역당국은 2015년 10월 구제역, AI 등 주요 동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은 러시아 지역 산 쇠고기, 부산물, 완제품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한국 측이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2016년 8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 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가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금수 조치는 2017년 6월 연장되어 2018년 말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부

벨라루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주요 경제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GDP 규모(억달러)	493	632	717	719	546	474	544
- 실질경제성장률(%)	5.5	1.7	1.0	1.6	-3.5	-2.5	1.7
- 상품무역수지 (백만달러)	-5,453	-413	-5,767	-4,396	-3,626	-2,613	-5,023
수출액(백만달러)	40,294	45,991	37,232	36,392	26,686	18,530	29,212
수입액(백만달러)	45,747	46,404	42,999	40,788	30,312	21,143	34,234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2,986	7,388	6,289	5,059	4,175	4,927	4,282
- 연중 환율 (벨라루스 루블 / 1달러)	5,606	8,336	8,875	10,227	15,864	1.9885	1,9318
- 소비자물가상승률(%)	15.0	21.8	16.5	16.2	16.9	12.2	6.0
- 총외채(백만달러)	29,856	34,116	40,609	40,023	38,275	37,516	39,924
단기외채(백만달러)	13,439	11,630	14,036	12,821	11,468	10,617	11,115
총외채잔액/GDP(%)	55.9	51.3	52.7	50.9	67.3	78.5	73.3

자료 : IMF, 세계은행,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경제 · 통상 환경

벨라루스는 EU와 러시아가 접하는 내륙국가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구조와 벨라루스 경제 · 통상 환경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 원자재 수입을 통한 제조업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동유럽 굴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대다수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경제개혁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유지하여 CIS 국가중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시설은 벨라루스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과 노후화된 산업시설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다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우수한 인적 자원,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하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술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복이 동반되지 못해 2013년 하반기 외환보유고가 2011년 경제위기 수준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환율시장이 동요하는 등 외환위기설이 다시 제기되었다. 러시아의 외환 지원, 일부 공기업 매각, 정부의 강력한 환시장 개입 등으로 급격한 위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19] 및 국영기업 민영화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 등으로 인해 2014년부터 201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2017년 글로벌 유가 안정에 따른 러시아 경기회복, 2017년 4월 벨-러 정상회담 개최 등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석유 및 가스 공급문제 해결, 전통적 교역국인 러시아 및 유럽국가 이외 수출 다변화 정책(multi-vector policy)의

19) 벨라루스 대외교역의 약 50%가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중이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벨라루스 또한 2016년까지의 경기 침체를 딛고 2017년부터는 경제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20].

벨라루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21] 등이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벨라루스내 활동 환경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2018년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벨라루스는 190개국 중 38위[22]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의 편이(5위), 계약집행 수준(24위), 창업의 용이성(30위), 건설허가(22위), 전력연결(25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 투자자 보호(40위), 대출(90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하는 2018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벨라루스는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53위를 기록했다.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은 약 2018년 6월 기준 약 59%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우크라이나, 중국 및 영국, 독일 등 EU 국가와의 무역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2015년 1월 벨라루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창설국가로 가입하였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연이어 가입하였으며, 현재 1억8천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EU와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의 회원국으로 서방과의 관계 발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EU를 연결하

20) 2019년 벨라루스 경제성장 전망(2018년 기준)

벨라루스 정부	EBRD	IMF	WB	EABR
2.8%	1.9%	2.8%	2.9%	1.7%

21) 2018년 8월 기준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6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2)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경제국가들 보다 높고 슬로바키아, 일본, 카자흐스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는 철로, 가스관,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로서 향후 EU와 러시아·CIS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벨라루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중국과 협력하여 〈Great Stone〉 이라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조성중으로, 동 산업단지 생산품은 관세, 무역 및 국경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EAEU 시장뿐만 아니라, EU 및 중국 시장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23]. 현재 중국기업 위주로 동 산업단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벨라루스 및 중국 기업 이외 제3국 기업도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하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5월 대통령령을 통해 동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해외 기업의 대벨라루스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 중에 있다.

한편, 벨라루스는 역내 IT강국 달성 및 해외 IT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24]을 시행중(2018년 3월 28일부 발효)이다. 동 법령을 통해 벨라루스 대표 IT 산업단지인 High-Tech Park(이하 HTP)[25]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 전면 허용,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한 소득 면세,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 운영 허용, HTP 입주기업을 통한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허용 등 블록체인 기술기반 사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벨라루스는 가상화폐 거래의 복잡성과 투기 위험성을 감안, 동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HTP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바,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과 함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내 생산품에 대한 관세, 환경규제 및 표준, 인증 관련 장벽 등이 순차적으로 철폐되기 시작

23) 동 산업단지는 민스크 국제공항으로부터 5Km, 민스크 중심으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트해 항구와의 거리는 약 5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 산업단지는 모스크바-베를린 구간 철도 및 고속도로 인프라를 통해 유럽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비엔나 등 유럽 주요 도시와도 항공으로 평균 2시간이 소요되는 등 항공연결 또한 용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상세 http://www.industrialpark.by/en 참조

24)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에 관한 상세 내용 http://www.park.by/topic-faq 참조

25) High-Tech Park: 200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IT산업단지로, 현재 67개국 192개 업체가 입주 중이며 입주기업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바, 벨라루스 IT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상세 http://www.park.by 참조

하고, 공동제약시장(2016년 1월), 공동전기시장(2019년 7월), 공동가스·원유금융시장(2025년 1월)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벨라루스 진출은 유라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벨라루스는 2017년 4월 민스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EA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관한 제3차 정부간 협의회 계기 EAEU 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동 협상 개시를 무조건 지지(unconditional support)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우리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6]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러시아의 WTO 가입(2012년)과 카자흐스탄의 가입단계 마무리 절차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인 벨라루스의 WTO 가입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1993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작업반 회의 이후 한동안 지체되었는데, 이는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 마련에 실패했고, 개별국가가 아닌 공동관세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WTO 협정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하였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3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 협정은 관세동맹 협정의 법적 일부를 구성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WTO가입(2012년 8월 26일)에 따라 벨라루스는 WTO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따라 무역장벽을 낮추어야[27] 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IMF와 WTO 가입을

26)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 press2/bbs/ bbsView.do? bbs_cd_n=81&cate _n=1&bbs_ seq_n=159250

27)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동맹 공동관세 변동추이: 2012년 8.75% ▸ 2014년 7~6%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2016년 10월)하는 등 WTO 가입을 위한 양자, 다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7.10월 벨라루스와 최초로 양자협의를 개시한 이후 2017년 1월 제6차 양자협상을 끝으로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위한 한-벨 양자협상 완료를 선언하였으며, 2017년 4월 한-벨 양측은 민스크에서 양자협상 완료 합의문에 서명하였다.[28)]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2017년 기준 양국 교역액이 0.7억 달러[29)]를 달성했으나, 양국 협력 발전 가능성에 비해 활발한 교역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KOTRA 민스크무역관이 2014년 3월 정식 개소하여 양국간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제5차 한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그간의 경제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금액	58,445	43,937	71,368	40,955	47,026	28,469	28,645
	증가율	49.2	-24.8	62.4	-42.6	14.8	-39.5	0.6
수입	금액	9,215	38,086	29,625	44,894	46,940	37,163	44,613
	증가율	-69.4	313.3	-22.2	51.4	4.6	-20.8	20.0
총교역	금액	67,660	82,023	100,995	85,849	93,966	65,632	73,258
	증가율	-2.3	21.2	23.1	-15	9	-30.2	11.6
무역수지		49,230	5,850	41,743	-3,939	86	-8,694	-15,968

자료출처: KITA

28)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 press2/bbs/ bbsView.do? bbs_cd_n=81&cate _n=1&bbs_ seq_n=159250

29)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창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해 벨라루스에 간접수출된 물품들은 대벨라루스 수출 품목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벨라루스 통계청은 이를 직접무역 통계 수치로 이용하고 있어 벨라루스 통계청 수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2017년 한-벨 총교역액 : 73.2백만불(수출 28.6백만불, 수입 44.6백만불)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교역 품목(2017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품 목		금 액	증가율
	HS 코드	상 품	28,645	0.6	HS 코드	상 품	44,613	20.0
1	84	보일러, 기계류	8,765	-9.7	31	비료	34,947	19.8
2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850	-9.1	85	전기기기	3,862	0.7
3	30	의료용품	3,037	32.5	70	유리, 유리제품	1,523	8.7
4	87	차량 및 부품	2,818	12.9	68	플라스터 등	1,004	1,084.8
5	40	고무 및 그 제품	2,619	25.2	90	광학,의료측정기기	918	-17.0
6	90	광학, 의료측정기기	2,302	12.0	38	화학공업생산품	489	-8.6
7	85	전자기기	1,294	2.8	56	워딩, 펄트	326	147.6
8	82	비금속제공구	963	28.2	84	보일러, 기계류	277	1,983.3
9	29	유기화학제품	610	-51.7	72	철강	232	151.3
10	33	향료, 화학제품	356	137.8	62	의류	198	-35.5

자료출처 : KITA

또한, 2014년 6월에 우리 기업 SK-Hynix가 벨라루스 소프트웨어, 펌웨어 아웃소싱 기업인 Softeq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하여 투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8년 9월에는 동 투자법인 명칭을 'SK-Hynix 메모리 솔루션 동유럽' 으로 변경하고, 신규 사무소로 확장·이전 한바, 이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의 대벨라루스 직접 투자 사례이다.

벨라루스는 저렴한 고급인력, 유럽과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기초과학, IT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바, 향후 협력 잠재력이 다대하며, ICT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한-벨 양국간 다방면 실질 경제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규제

자국산업 보호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인 관세동맹은 2010년 1월부터 역외 국가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의 명분을 내세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수입규제 조치는 3국이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 적용 여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규제(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제, 독점무역권, 6개월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 등이 있으며, 벨라루스 관세당국은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2015년 8월)에는 총리 훈령(No.666)을 발표하여,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외 각 경제주체 간 수출입 물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을 경유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3)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유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수출입 관련 제도적 문제점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 뿐 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 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혜관세 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50개국

한편,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거나,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통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 · 제한 품목)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30]을 두고 있다.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국가 주요정보 및 선거, 불법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생물자원 채취장비
- 포획금지 동물 가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 동 · 식물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 광물자원류
-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기타 금지 품목

30) http://tsouz.ru/db/entr/norm-prav-doc/ediniy_perechen/Pages/default.aspx

표준, 인증 관련 장벽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인간의 유전자·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증서와 적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13개의 기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 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환경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국가들과 유사한 편이다.

○ 벨라루스가 적용하는 국제협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협약, WIPO 실연·음악 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약, 베른협약, 올림픽마크 보호조약,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조약, 제네바음반협약, 로마협약.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기준으로 벨라루스 제품 100여 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에 등록되어 통관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도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법

벨라루스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투자법" 53-3호와 "면허권(Concession)에 관한 법" 63-3호,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호(2009년 8월) 등이 있다.

2012년 발효하고 2014년 일부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벨라루스 내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과 투자 방식을 보다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투자와 투자를 통해 발생한 다른 재산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재정비 하였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가부지는 경매(auction)없이 제공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임대계약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인이 아닌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제3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무 면제
- 기타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분쟁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계획의 산업적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무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법 채택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2016년 7월 2일 '민관파트너십(PPP)에 관한 법(이하 PPP 법)'이 발효되었다. PPP 법은 정부와 민간업체 간 협정 체결에 있어 새로운 계약형성 방식을 제시한다. PPP 협정체결은 벨라루스 정부가 주관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PPP 사업수행 대상은 국가가 소유한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에너지 포함 사회.교통 인프라 등이다. PPP 사업 수행시 민간업체는 해당 인프라 시설에 관한 전체 또는 일부 설계, 공사, 재건, 개보수, 유지, 현대화, 기술 서비스 제공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동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해 동 시설 소유 또는 사용이 민간업체로 이전될 수 있으며, 동 시설의 기반을 이루는 부지는 민간업체에 영구적 혹은 한시적으로 임대될 수 있다. 민간업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전체 또는 일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업체 권리에 대한 보장은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 투자자가 제공받는 전반적인 권리 보장
- PPP 협정 또는 여타 법규가 예외로 규정하는 사례 또는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도덕·국민건강, 제3자 권리·자유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업체 활동 불간섭
- 외국 파트너에게 자유로운 수익 양도
-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보호

투자 환경 평가

기업경영여건 : Doing Business 2018

		기업경영여건순위			
		2018	2017	2016	변동률
종합순위		38/190	37/189	44/189	
1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30	31	12	+1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22	28	34	+6
3	전력공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25	24	89	-1
4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5	5	7	-
5	신용획득(법적권리, 신용정보)	90	101	109	+11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40	42	57	+2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 환급)	96	99	63	+3
8	대외무역(수출입)	30	30	25	-
9	계약실행(법정 효율성)	24	27	29	+3
10	사업폐쇄(파산)	68	69	69	+1

자료 : Doing Business 2018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서 벨라루스는 2018년 38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회원국(러시아(35위), 아르메니아(47위)) 들과 비교 시에도 우수한 투자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벨라루스 투자환경에 대해 중위권 이상의 평가가 내려진 주요 이유는 재산등록(5), 전력공급(25)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공급 영역은 2016년 대비 64단계 상승(89 ▸ 25)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지수 : 2018년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기업경영여건순위			
			2018	2017	2016	변동률
종합순위			108/180	104/180	157/178	-4
1	재산권 보호제도	법률 및 법치제도	53.5	50.9	20.0	+2.6
2	청렴도		42.0	37.6	31.0	+4.4
3	재정정책	정부기관 행정	89.8	92.8	88.6	-3
4	정부지출		47.9	48.7	44.8	-0.8
5	기업 자유	관리감독기관 효율	74.1	71.3	69.0	+2.8
6	노동 자유		73.1	74.6	74.9	-1.5
7	통화 자유		62.3	60.4	50.4	+1.9
8	무역 자유	시장 자유도	81.4	80.6	79.0	+0.8
9	투자 자유		30.0	30.0	20.0	-
10	금융 자유		10.0	10.0	10.0	-

자료 : 2018년 세계경제자유지수 (2018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8년 벨라루스는 전체 조사대상국(180) 가운데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108위에 위치[31]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152위), 러시아(107위), 타지키스탄(106위) 등과 함께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Mostly Unfree)에 분류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벨라루스내 청렴도(42.0), 투자자유(30.0), 금융자유(10.0) 부분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1)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순위 : 러시아(107위), 카자흐스탄(41위), 아르메니아(44위) 키르기스스탄(78위)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문의처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 영문명 :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 홈페이지 : http://www.investinbelarus.by/en/
- 전화번호 : +375 17 200-81-75
- 이메일 : mail@investinbelarus.by

벨라루스 경제부

- 영문명 : Ministory of Economy
- 홈페이지 : http://economy.gov.by/en
- 전화번호 : +375 17 200-53-16
- 이메일 : minec@economy.gov.by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 영문명 : Eurosian Economic Commission
- 홈페이지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전화번호 : +7 495 669-24-00
- 이메일 : info@eecommission.org

세르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거시경제 일반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2004~2008년 동안 년 4.6% 이상의 높은 실질 GDP 성장을 시현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2009년부터 세르비아 경제는 부진을 보인 바 있다.

2012년 세르비아 경제는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무분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농업부문 회복, Fiat사 자동차 공장 생산 개시 등에 힘입어 2.6% 성장을 기록하였다.

세르비아는 2014년 5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어 실질 GDP는 -1.8% 성장하였다. 2014년의 경제성장 부진을 딛고 2015년 0.8%, 2016년 2.8%, 2017년 1.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세르비아 중앙은행은 건설업 주도 성장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4월 조기총선에서 승리한 세르비아혁신당 주도의 현 정부는 EU 가입 추진, 외국 기업 투자 적극 유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구조 개혁을 달성하고 거시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2015년 2월 IMF와 3년 기한으로 체결한 935.4백만 SDR(약 12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Stand-By Arrangement)을 2018년 2월 종료하고, 2018년 7월부터 30개월 간 IMF의 비금융지원 정책자문 프로그램(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 PCI)을 제공받고 있다. IMF는 2018년 12월 1차 이행현황 점검에서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민간주도 성장과 유럽연합 임금 기준과의 조화 달성이 향후 세르비아 경제 구조 개혁의 중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거시경제 지표

항목(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 (억USD)	455	442	372	377	394
1인당 GDP (USD)	6,352	6,199	5,237	5,348	5,600
실질GDP 성장률(%)	2.6	-1.8	0.8	2.8	1.9
수출액 (백만 EUR)	10,996.7	11,157.0	12,041.0	13,432.1	15,047.1
수입액 (백만 EUR)	15,469.0	15,526.3	16,387.5	17,067.4	19,418.6
무역수지 (백만 EUR)	-4,472.3	-4,369.2	-1,064.1	-3,635.8	-4,371.5
경상수지 (백만 EUR)	-2098.3	-1,984.7	-1,234	-1,075	-2,051
순 FDI (백만 EUR)	1,298.1	1,236.3	2,114.2	2,126.9	2,548.1

항목(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환보유고 (백만 EUR)	11,189	9,907	10,377	10,205	9,961
공공부채 (GDP 대비 %)	59.6	70.9	74.7	71.9	61.5
평균환율 (RSD/USD)	85.17	88.54	108.85	111.29	107.50
평균환율 (RSD/EUR)	113.14	117.31	120.73	123.12	121.34
물가상승률(%)	2.2	1.8	1.6	1.5	3
실업률(%)	22.1	18.9	17.7	15.3	13.5

자료 : 세르비아 재정부, 세르비아중앙은행, 세르비아 통계청, IMF

2012년 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세르비아는 2013년 9월 EU와의 안정제휴협정(SAA)이 발효되었고, 2014년 1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2018년 현재 35개 분야(Chapters) 중 2개 분야(25장 과학연구, 26장 문화교육)를 완료하고, 14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 가능 시기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투자 환경 및 경제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지 진출 기업 정보 등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우리기업 총 투자액은 1억 4천만 달러이며, A사(1억 1천만 달러) 및 B사(3천만 달러)가 상위 1, 2위 투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생필품 및 원자재, 석유 및 석유제품, 기계류 등이다. 지난 3년간 제조업 분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상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민간 소비 증가와 건설업 활황으로 소비재 및 건설자재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세르비아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214백만 달러(92백만 달러 흑자)이며, 2017년보다 교역 규모가 39.1% 성장하였다.

세르비아는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르비아가 EU와 체결한 안정제휴협정(SAA), 여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통상협정 체결 국가 시장규모는 11억 명에 달하며, 전체 무역액에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85%를 상회한다.

- SAA: EU 28개국* 기존 잠정무역협정은 SAA로 대체
- CEFTA(Central Europe FTA): 세르비아 외 발칸 지역 6개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으로 회원국 자격 상실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러시아, 터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개별국과 FTA 체결

한편, 미국은 세르비아산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유치 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2010년 5월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 혜택(financial incentives)

세르비아 중앙정부는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의 수준은 기업규모, 투자금액, 고용창출 인원,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2016년 1월에 세르비아투자수출진흥청(SIEPA)과 세르비아지역개발청(NARR)이 통합되어 경제부 산하에 설립된 세르비아개발청(RAS)이 금융 인센티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제조업, 국제적으로 판매 가능한 서비스, 온천 지역에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2018년 세르비아개발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르비아 정부 제공 투자 인센티브(2018)

분야 및 지역		제조업					서비스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저개발 지역	
최소고용인원(명)		50	40	30	20	10	15
최소투자금액(천 유로)		500	4000	300	200	100	15
급여 (2년치 급여당)	최대보조금비율 (%)	20	25	30	35	40	지역별 상이
	보조금상한선 (유로)	3,000	4,000	5,000	6,000	7,000	
고정자산	지원비율(%)	10	15	20	25	30	

주: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는 I-IV 및 저개발 지역을 구분해놓았으며, I지역이 수도 베오그라드를 포함한 개발 정도가 높은 지역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개발 정도가 낮음.

세르비아에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14개[32]에 달하는 "Free Zones"(수출입무관세 지역)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세르비아개발청에 따르면 2018년도 현재 전체 Free Zone에 총 265개의 다국적기업이 입주하여 총 28,270명을 고용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르비아 수출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 혜택 (tax incentives)

세르비아의 법인소득세는 15%, 개인소득세는 10%이고, 부가가치세는 20% 수준이다.

32) Beograd, Piort, Subotica, Zrenjanin, FAS Kragujevac, Sabac, Novi Sad, Uzice, Smederevo, Svilajnac, Krusevac, Apatin, Priboj, Vranje

(1) 법인소득세 면제

고정자산에 일정금액(약 950만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기간 동안 100명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에 최초 과세가능 순익보고서 제출연도 부터 10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그 밖에도 투자규모에 따라 건축자재·수송료·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가세(20%) 면제, 원자재·기계·건축자재 수입관세(1-10%)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2) 손실 이월 공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5년 간 이익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하다.

(3) 이중과세방지

2016년 11월 발효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 범위 내에서 개인, 기업 및 국가의 소득에 대한 면세, 이중과세 방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여타 매력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발칸지역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유럽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유럽, 터키,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인 세르비아는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동남부 유럽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구축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 및 관련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EU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인근국 대비 비교우위의 노동시장

세르비아 근로자의 약 80%가 영어 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르비아 진출 외국계 기업들은 세르비아인들의 학습 의욕 및 성실한 근무 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세르비아의 평균 월임금은 506유로로 크로아티아(1,058유로) 및 체코(971유로)의 약 50% 수준이고(세르비아개발청 발표자료),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주변국에 비해서도 저렴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실업률은 13.5%로 임금 상승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고, 진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통상환경 일반

세르비아는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고, 정부기관 업무수행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기업 민영화, 각종 인허가, 수입 통관 등의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세르비아 진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세르비아 정부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이 외국기업의 對세르비아 투자 장애요인임을 인식, 아래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패
- 지하경제(grey economy)
- 정부 관료주의 비효율성 및 복잡한 행정절차
-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 조세제도의 복잡성 및 각종 수수료 및 지방조세의 불투명성
- 시장수요에 대응한 숙련 노동력의 부족
- 사회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수입 관련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년 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이전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대상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총 1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9.4%이다.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20%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분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세르비아의 의료시스템 현대화 및 개선, 건설업 및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공하는 2019년 대 세르비아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과 같다.

2019년 수출 유망 품목 관세율 현황

화장품	15%	X-ray 기기	3%
트랙터	12%	폴리에스테르	1%
변속기 부품	3%	면역질환약품	0%
임플란트	1%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료품과 일간지 등의 경우 10%,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자유무역구역에서 사용되는 자재 수입 또는 그 자재의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바이오 연료, 최종소비용 전기, 담배, 주류, 커피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입업자는 통관처리수수료와 통관처리 관련 행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자동차 수입 규제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르비아는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노후화된 디젤 차량 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준비 중이다.

관할 세관은 통관 시 차량 검사, 관련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Preferential Status)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Preferential Status)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와 관련,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은 "Form A"로 분류하여 발급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되어 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으며, EU의 정부조달 지침과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상 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조달 법제와 이행 사이에는 아직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 정부 내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는 지식재산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으로는 2018년 12월 개정법이 발효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적과 관련 없이 개인과 법인은 세르비아 내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보호,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 형사재판을 통한 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EU법과 합치한다.

세르비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조정되었다.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부터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었다. 이후 2018년 EU 국별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가 기업 활동 환경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EU 가입협상의 8장(경쟁 정책)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부동산 규제

기본소유권법은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내법인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 내 외국 법인은 해당자산의 상업용 사용과 해당 외국과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동산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부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부동산 시장가치의 2.5%) 및 자본이익세(실현된 이익의 15%)가 있다.

현지 법인 설립절차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유한회사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5,900 디나르(한화 약 6,4000원)를 법인등록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은행계좌 개설은 세르비아 정부의 외국인 자본 유치 정책에 따라 현지인에게 적용하는 최소자본금인 1디나르(한화 약 11원)를 준비하면 된다. 다음으로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기업등록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회사설립전문변호사를 고용(수수료 약 500유로)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공증 이후 등록은 약 10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자로 등록하고, 산업재해청을 방문하여 피고용인 사회보장세(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납부자로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영구 법인구좌를 개설한다. 기업등록 절차 완료에 통상 5~6일이 걸리며, 수수료로는 350유로 정도 소요된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년 6월에 완료하였다. 아직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등록청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다.

기타 장벽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2009년 세르비아 외국인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2009년 외국인법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세르비아 내 임시거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스위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규정

외국으로부터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년 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FTA FTA 는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원칙

(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국 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시장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Electrosuisse)의 위탁을 받아 Eurofins AG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임의 테스트 및 인증).

스위스는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료제품청(Swissmedic)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바,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3.1센트, 디젤은 75.9센트, 경난방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받은 교통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CO2 1톤당 60프랑의 CO2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CO2 1톤당 96 프랑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2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2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환경청이 담당한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등록 승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엠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기타

1996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정부조달협정(GPA)」양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23만 프랑, 건설 분야는 870만 프랑 그리고 물·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기관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 서비스와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

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탈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련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식재산연구소(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년 6월 21일 '스위스'라는 명칭(Swiss-made, Made in Switzerland)을 표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Swissness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메이드인 스위스 제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Swiss-made로 간주되려면 공산품의 경우 생산 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 2015년 9월 2일 스위스 정부는 법안 시행령을 고시하여 공산품, 농산품, 식품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포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 시행일로 발표하였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은 2018년까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스위스십자 문장' 및 '스위스' 표기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 사항은 아니다.

스위스 상표법은 개별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상품에 대한 스위스니스 표기 조건을 상세히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스위스 정부는 시계 및 화장품의 스위스니스 사용 요건을 강화한 스위스니스법 시계분야

(2016년 6월 17일) 및 화장품분야(2016년 8월 29일) 시행령을 고시하였고 2017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 규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한규정(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멤버 중 적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는 상관없으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 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02년 9월 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 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

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가와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간 할당(Quota)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업계와 주요 칸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스위스와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 국민에 대한 비자 쿼터 상한을 2019년부터 8.5천개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전년대비 +5백). 금번 상향조정된 것은 B형이고(3.5천→4.5천)이고 L형은 4천개(4.5천→4천)로 하향조정 되었다.

* B형 : 장기 노동비자, 1년 단위 갱신 가능

* L형 : 단기 노동비자. 4~12개월 단위로 발급, 최대 24개월까지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스위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스위스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스위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시장 특성 (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24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약 8만 달러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ex), 이베체(IWC), 오메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스프륑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려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콥(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 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2015년 9월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는 환경을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폭스바겐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평가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 8년(2011~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그룹의 규모는 스위스 전체 은행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BS는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및 채권거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개인·기업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답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의 지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govern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ion)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금

스위스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 일명 〈초콜릿 법(Schoggi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과 관련해 연간 약 95백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산 우유 및 곡물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스위스도 2020년 말 〈초롤릿 법〉을 폐지하여 2021년부터 수출지향적 식품 가공 및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WTO 수출보조금폐지 결정으로 스위스 정부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을 전면개정(2017.12),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연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2019.1 시행).

한편, 수출보조금 폐지로 식품제조사들의 외국산 원료 구매가 증가하여 식품생산에 외국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2017년 1월부터 시행중인 〈상표 및 원산지에 대한 연방법: "상표보호법"〉 일명 〈스위스니스법〉에 따라 스위스 국기 이미지나 스위스산입을 나타내는 문구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 식품생산에 사용된 원료의 80%(유제품의 경우 100%)가 스위스산이어야 스위스니스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스위스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스위스의 전자상거래

스위스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쇼핑 및 통신판매사업의 구매량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8.3% 증가한 78

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소매시장규모의 8.6% 수준으로 추산된다. 스위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017~2022년 기간 동안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a).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의 지리적 특성상 스위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배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국가의 제품 보관 대행업체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를 통한 구매 규모는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스위스의 Top10 온라인 유통망(백만 프랑)은 Digitec(725), Zalando(550), Amazon(475), Nespresso(489), Brack(232), Leshop(187), Microsoft(186), Coop(133), Nettoshop(83), Ex Libris(77) 순이다.

스위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전자제품 (18.5억 달러)이며, 그 뒤로는 의류 및 신발(15.9 달러), 음식(8.2억 달러), CD/ DVD(2.5억 달러) 순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주문 급증

2015년 스위스의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주문은 24.7%를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 4명 중 1명은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 것이다.

GfK통계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의 80%는 온라인 구매 시 영수증(지로용지, 인보이스)을 통한 직접 지불 또는 송금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2015년 기준 약 13%만이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Paypal)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 관련 법규

스위스에는 2012년에 발효된 부정경쟁방지법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통상적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채무법(Obligationenrecht)을 따른다. 채무법규에 따라 주문클릭 한번으로 구매

계약이 체결되며(채무법 제197ff조) 문서형태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유통사업자는 계약서상 채무법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계약체결 시 그 내용에 동의한 이상 동 계약서는 채무법에 우선한다.

스위스 온라인 시장 전망

FHNW(스위스 노스웨스트 전문대학)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의 온라인 시장규모는 상승하는 추세지만 현지 온라인 소매상들의 수입은 전년대비 33% 하락하였다. 스위스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해외 경쟁업체들의 활발한 움직임 때문에 현지기업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다.

Datatrans 와 FHNW이 조사한 온라인 상업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2% 상승한 20%에 달한다. 특히 Amazon의 스위스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8%로 가장 높았다. 동 보고서는 스위스가 국내 기업의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해 Amazon에 의존적인 현재의 온라인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보고서에는 점유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 온라인 매장의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응답자 중 40%가 해외기업의 점유율이 매년 2%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참고) 스위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경제성장

2015년 1월 15일 스위스의 유로화대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CHF)의 갑작스러운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경쟁력 저하, 스위스 방문 외국인들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환율의 불안정성 증가로 외국인 투자 기피, 스위스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움직임 등으로 스위스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완만한 경제 성장을 거친 후, 2018년부터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세는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GDP 성장률 2018년 2.9%, 2019년 2.0% 전망). 이러한 성장세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국내 설비 및 건설 등 투자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연방경제청).

대외무역

스위스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대EU 무역 비중 높다. EU는 2017년 기준 스위스 수출의 53%, 수입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수출은 2017년 초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재화의 수출은 1분기와 2분기 각 549억 CHF, 557억 CHF를 기록하여 상반기 누계 기준 1,106억 CHF에 달했다. 전체 재화의 수입은 1분기와 2분기 각 513억 CHF, 511억 CHF를 기록하며 상반기 누계 기준 1,024억 CHF에 달했다. 스위스 정부는 총 수출과 수입(재화+서비스)은 2018년과 2019년에 전년대비 각 4.2%와 3.4%, 3.9%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장

스위스의 2017년 실업률은 3.2%였으며, 2018년 평균실업률 전망치는 2.6%로 전망되는 등 스위스 노동시장은 기업의 고용증대로(고용시장 호조) 인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2019년 2.4% 전망).

*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 스위스 실업률 전망치는 2018년 4.7%, 2019~20년 4.4%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5년 1월 대유로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2016년 물가가 0.4% 하락하였다. 2017년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0.5% 상승했다. 2018년

스위스 물가는 1.0%, 2019년 물가는 0.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연방경제청, 2018년 9월 기준).

(참고) 한-스위스 통상·투자 현황

한-스위스 무역 동향

(1) 최근동향

2017년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은 전년대비 12.5%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의약품의 기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기준 의약품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 품목 중 승용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시계, 기타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주얼리 순이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누계
수출(증감률)	1,485(372.9)	558(-62.4)	488(-12.5)	318(6.1)
수입(증감률)	2,454(-10.9)	2,350(-4.2.)	2,735(16.4)	2,063(16.3)
무역수지	-969	-1,793	-2,247	-1,745

주 1) 2015년 수출 급증사유: 선박 수출 증가(2014년 0 -> 2015년 7월 1,068백만 달러)에 기인
2) 2016년 의약품 수출 급증 : 305백만 달러(전년대비 305.7% 증가) 기록 후 2017년 64.9% 감소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세부 수출현황

2018년 8월 기준 승용차, 시계,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3대 수출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48.6%). 이중 의약품의 수출 규모는 2016년 일시적 증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 대비 56.4% 감소했다. 시계 및 시계 부품은 2016년 현지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21% 감소하였으나, 현지 산업 회복세 및 기저효과 덕분에 2018년 8월(누계) 62.6%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MTI 4)	2017년		2018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88	-12.5	318	6.1
1	승용차	157	34.6	84	-11.9
2	시계	26	-21	29	62.6
3	기타 플라스틱제품	25	68.5	21	54.6
4	의약품	54	-64.9	14	-56.4
5	주얼리	15	-10.9	14	60.7
6	금	20	87.4	12	-15.9
7	기타정밀화학연료	18	63	9	32
8	전기자동차	9	144.9	8	57.5
9	타이어	9	9.5	8	23.1
10	직접회로반도체	5	-34	8	118.1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세부 수입현황

한국의 대스위스 수입은 2018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으나, 10대 수입품목 중 금, 금속절삭가공기계, 밸브, 펌프, 계측기는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감소세를 보인 품목들은 계측기(2017년 10.1%)를 제외하면 2017년 20%~136%에 달하는 고성장을 보인 품목들이라 일부 기고효과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735	16.4	2,063	13.5
1	시계	523	12.5	518	58.1
2	의약품	399	21.2	353	31.5
3	금	266	136.3	182	-7.9
4	금속절삭가공기계	112	50.2	69	-9.0
5	의료용기기	91	19.0	62	2.6
6	밸브	100	20.5	59	-5.1
7	펌프	112	50.2	57	-18.6
8	주얼리	80	29.2	56	-4.1
9	계측기	62	10.1	37	-6.7
10	화학기계	32	28.4	36	77.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스위스 투자동향

(1) 한국의 대스위스 투자

한국은 스위스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해 주로 투자를 하였다.

스위스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EU회원국이 아니며, 언어적 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60위 투자 대상국으로서 투자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었다(2018년 3분기까지 누계 투자금액 약 6.3억불). 다만 최근 2016년 34위, 2017년 41위, 2018년 33위 등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스위스의 우수한 R&D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전체누계
신고건수	13	9	12	26	6	198
신고금액	13.9	123.7	95.2	63.4	67.9	687.17
투자금액	14.6	124.1	95.1	63.5	61.9	634.31

자료: 수출입은행

(2) 스위스의 대한 투자

2006년 및 2007년(사상 최대 2.4억 달러)에 Credit Suisse 및 UBS 등 스위스 대형은행의 금융계 대규모 투자가 있은 후, 감소세를 보이던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는 2010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이후2011~2012년 연간 1.4~1.8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50% 이상 급감, 그리고 다시 2014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 2억 2천 6백만 달러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스위스의 대한국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위스의 주요 투자 기업은 센시리온(센서), ABB(엔지니어링), 네슬레(식품), 게이트고메(기내식), 미벨(화장품) 등이다.

* 2010~18년 누계 기준, 제조업 691백만 달러, 서비스업 441백만 달러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전체누계
신고건수	30	19	39	35	22	804
신고금액	134	195	74	226	63	2,87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슬로바키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경제동향

슬로바키아는 2016년 3.3%, 2017년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세계은행). OECD는 슬로바키아가 2018년 4.0%, 2019년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이어진 경제성장세에는 민간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기반한 내수 회복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정부 부문을 비롯해 산업, 건설, 도매유통업 분야에서의 성장이 이러한 내수 회복에 기여했으며, 무엇보다 2007~2013년간 배정된 EU 기금 활용이 활용시한인 2015년에 집중되었다. 또한 차기 EU기금이 2021년까지 집행될 예정에 있어 EU기금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은 EU기금 활용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임금인상에서 기인한 가계소비 증가, 자동차 산업의 수출증대가 내년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견실한 경제성장세와 EU기금 활용에 힘입어, 2018년도 고용시장도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노동사무소 등록 기준)은 2018년 8월 5.42%(2017년 8월 6.54%)까지 감소했다. 실업률 개선과 함께 평균 명목임금이 상승했으며 2017년도 임금상승률(6.38%)은 전년보다 0.51%p 높았다.

소비자 물가(HICP) 상승률은 2016년까지 -0.5%로 유지하던 마이너스 기조가 깨지며 2017년 1.41% 기록, 2018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9%

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OECD는 2018년 슬로바키아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산업 평균임금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마감한 후, 2017년 슬로바키아의 경상수지는 17.8억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재화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 흑자폭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흑자폭 감소는 대체로 투자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에 기인했다.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 성장률(%)	1.5	2.8	3.9	3.3	3.4
소비자물가상승률(%)	1.5	-0.1	-0.4	-0.5	1.4
실업률(%)	14.2	13.2	11.5	9.6	8.1
무역수지/GDP(%)	4.2	3.4	1.6	3.5	3.4
경상수지(10억유로)	1.4	0.9	-1.4	-1.2	-1.8
경상수지/GDP(%)	1.9	1.1	-1.7	-1.5	-2.1
재정적자/GDP(%)	-2.7	-2.7	-2.6	-2.2	-0.8
정부부채/GDP(%)	54.7	53.5	52.2	51.8	50.9

출처: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Eurostat, IMF

교역 및 투자 현황

대외 무역

슬로바키아의 수출 및 수입(상품기준, 이하 수출입 통계는 상품기준)은 2017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슬로바키아 수출과 수입은 각각 6.7%, 8.0% 증가했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수출은 96.9%, 수입은 93.8%를 차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출·수입 모두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2017년 전체 수출 중 EU가 85.3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66.63%를 차지하였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7년 4.56%로서 전년(5.05%)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대한국 수출 감소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입 비중은 2017년 23.28%로 전년(23.60%)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6년 23.3%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출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기계 장비, 자동차, 금속, 광물, 화학제품이 등이 있다.

연도별 수출입(상품기준)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총액(억 유로)		742	761	791	812	849
수출	금액(억 유로)	641.7	647.2	676.8	700.3	747.6
	증감율(%)	3.3	0.9	4.6	3.5	6.7
수입	금액(억 유로)	599.4	600.2	643.6	663.9	717.1
	증감율(%)	2.3	0.1	7.2	3.1	8.0
무역수지(억 유로)		42.3	47.0	33.2	36.5	30.5

출처: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통계), EUROSTAT(GDP 총액)

슬로바키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20.6%)과 인근국인 체코(11.5%), 폴란드(7.6%), 프랑스(6.3%), 헝가리(6.0%)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16.8%), 체코(10.5%), 중국(7.4%), 한국(5.7%), 폴란드(5.4%) 순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영향으로 대러시아 수·출입 규모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아시아에서는 주요 수입국으로서 중국과 한국이 부상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 교역상대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최대 적자(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이다. 슬로바키아의 대한국 수입(상품기준)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 소폭 증가한 바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대 슬로바키아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전기장치, 화학제품, 광학기기, 컴퓨터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전기장치, 광학제품,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 베어링 등이다.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및 현대 모비스의 진출로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 중요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업종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갈란타(Galanta)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질리나(Zilin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진출업종이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산업(전체 산업생산의 44%, 전체 수출의 40% 차지, 2017년 기준)에서 기아자동차는 2017년 335,6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매출액은 50억 유로를 달성하여 생산 및 매출액 규모에서 슬로바키아 2위 업체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말 투자금액 기준으로 총 13.7억 달러(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슬로바키아에 투자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는 약 100여개 우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연도별 수출입 동향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금액(백만 달러)	4,407	4,299	3,543	2,926	2,773
	증감율(%)	-4.7	-2.5	-17.6	-17.4	-5.2
수입	금액(백만 달러)	187	224	231	219	177
	증감율(%)	9.7	20.0	3.2	-5.1	-19.2
무역수지(백만 달러)		4,220	4,075	3,312	2,707	2,596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입정책상의 장벽

슬로바키아는 WTO 가입(1995년 1월), OECD 가입(2000.12월)을 통해 기본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으로 유럽국가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EU 일반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가 유럽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계은행은 2018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8"에서 슬로바키아 기업환경을 190개 조사 대상국 중 39위로 평가했으며, 이는 비세그라드 국가 중 폴란드(27위), 체코(30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을 다른 비세그라드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과 마찬가지로 1위로 높게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부문 평가에 있어 수출 및 수입 관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서류 등을 평가요소로 하였다.

비관세 장벽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치와 같은 EU 공동의 무역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다소 자유로운 대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시행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슬로바키아는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수출입 허가는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인증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됨을 증명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 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라벨링과 마킹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과 반도체 칩 디자인 등은 슬로바키아 법률과 관행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정부부서에서 지적재산권(IPR)을 관할하고 있다.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WTO, 유럽특허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이다. 슬로바키아는 WTO TRIPS 협정을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베른 협약 등 여타 주요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5년간 보호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슬로바키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수혜대상 이다.

지원 대상 및 투자지원 형태

개정된 투자지원법에 따르면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①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산업생산 · 기술센터 조합(Combin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a technology center), ④비지니스 서비스 센터(Business service center) 등 4개 분야이다. 농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유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원 형태는 ①유·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금, ②고용창출 기여금, ③소득세 감면, ④저렴한 가격에 국유 부동산의 양도 · 대여 등이다.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투자비용(Eligible cost)에는 ①토지, 건물, 기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자산과 특허, 라이센스, 권리, 노하우 및 비특허 기술지식 등 형태의 무형자산 취득 비용이 포함되는 투자비용

(investment cost), ②신규 고용자 임금비용(wage cost), ③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combination of investment and wage costs)이 있다.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③)은 투자비용(①)과 임금비용(②) 중 더 큰 쪽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대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경우, 최대 투자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투자 인센티브 = R × (5천만 유로 + 0.5B + 0.34C)"의 공식을 따른다(R=최대 투자지원율(%), B=적격 투자비용 2구간(5천만~1억유로) 투자액, C=적격 투자비용 3구간(1억 유로 이상) 지출액). 예를 들어, 전체 적격 투자비용이 1.4억 유로이고 최대 투자지원율이 35%일 경우, 최대 투자 인센티브 규모는 0.35 × (5천만 유로 + 0.5 × 5천만 유로 + 0.34 × 4천만 유로) = 3.101천만 유로로 산출된다.

① 최대 투자지원율이 25%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18.75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② 최대 투자지원율이 35%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26.25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반드시 EU 집행위에 알려야 한다. 투자 지원에 대한 EU 집행위의 허가가 없을 경우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

인센티브 적용지역

슬로바키아는 8개 행정구역(region)을 79개 지역구(district)로 세분화하여 수도인 브라티슬라바(4개 지역구)을 제외한 75개 지역구가 인센티브 대상 지역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대상지역을 전국 평균실업률을 기준으로 4개 권역(A권역 : 100% 미만, B권역 : 100~135%, C권역 : 135~160%, D권역: 160% 초과)으로 구분하여 실업률이 높은 권역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브라티슬라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서부(Trnava, Trencin, Nitra), 중부(Zilina, Banska Bystrica), 동부 지역(Kosice, Presov)으로 구분하여 투자 지원 요건 및 투자 지원 규모의 차등이 있다.

투자 인센티브 신청 기준

(1) 산업생산

투자 인센티브에 필요한 요건들은 특정지역의 실업률 및 개발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최소 투자금액 중 신규 생산 및 기술 장비의 금액 비중도 지역별 실업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자지원은 생산품목이 중점분야(priority areas) 혹은 기타분야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3년 국가 특성화 전략(National Specialization Strategy)에서 식료품, 화학, 제약,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중점분야로 지정했으며, 중점기술로는 산업용로봇 및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품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을 채택했다. 적격투자비용(eligible investment cost) 중 플랜트, 기계장비에 투입된 비용에서 최소 75%는 반드시 상기 기술에 투입되어야 한다.

(단위: 백만 유로)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조건	자산취득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국유부동산 대여 · 양도 혜택
		중점 분야	기타 분야			
A권역 (<10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40	-	6	-	6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20	-	3	-	3
		60%		60%	-	6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	0	-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	0	-	0
B권역 (100~135%)	최소투자금액(대기업)	20	30	3	3	3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10	15	1.5	1.5	1.5
		50%	50%	50%	50%	5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0	20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0	30	0
C권역 (135~16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10	20	1.5	1.5	1.5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5	7.5	0.75	0.75	0.75
		40%	40%	40%	40	4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0	10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0	20	0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조건	자산취득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국유부동산 대여 · 양도 혜택
		중점 분야	기타 분야			
D권역 (〉16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0.5	1	0.2	0.2	0.2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0.25	0.5	0.1	0.1	0.1
		30%	30%	30%	30%	3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0	2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0	10%	0

자료: SARIO

지역별 산업생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 동부 지역	
		중점분야	기타분야	중점분야	기타분야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25%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	3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25%	35%	35%
고용창출 기여금	A권역	-	-	-	-
	B권역	-	-	35%	35%
	C권역	-	-	35%	35%
	D권역	-	-	3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90%

자료: SARIO

(2)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혹은 제품생산 과정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을 의미한다.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중점 분야(식료품, 화학, 제약,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와 기타 분야에 주어지는 투자지원 규모가 다르며, 투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중점 기술(산업용로봇 및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품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유로)	0.2	0.4	0.1	0.2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10	20	10	20
평균임금 대비 임금	2.0	1.7	2.0	1.7

자료: SARIO

지역별 기술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25%	35%
최대 현금지원	2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35%
고용창출 기여금	2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자료: SARIO

(3) 산업생산 · 기술센터 조합

슬로바키아에서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지원 분야였던 관광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분야다. 이는 단순 조립공정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 많은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다. 투자자는 산업생산에 투입된 적격비용과 기술센터에 투입된 적격비용을 모두 반영해 투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비용은 투자지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래의 표는 ①산업생산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②기술센터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③산업생산 · 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산업생산 · 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산업생산의 최저투자금액은 기술센터의 최저투자금액 만큼 차감된다.

산업생산 · 기술센터 조합의 예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산업생산	기술센터	산업생산 · 기술센터 조합	
			산업생산	기술센터
최소투자금액(유로)	1,000	20	980	20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40%	-	40%	-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	10	-	10
평균임금 대비 임금	-	2.0	-	2.0

자료: SARIO

(4) 서비스 센터

기업내 부서별 독립 운영되고 있는 비전략 지원부문을 일원화화여 제공하는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 슬로바키아에는 Amazon, AT&T, DELL, HP, IBM, Siemens 등의 서비스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중점 분야는 서비스센터가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지식기반 ·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유로)	0.2	-	0	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20	-	20	50
평균임금 대비 임금	1.8	-	1.8	1.5

자료: SARIO

지역별 서비스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 동부 지역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25%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	35%	-
최대 소득세 감면	25%	25%	35%	35%
고용창출 기여금	25%	25%	3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90%

자료: SARIO

기업 설립

슬로바키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poločnosť s ručeňim obmedzeňým, 약칭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Akciova Spoločnosť, 약칭 a.s),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Verejna obchodna Spoločnosť, 약칭 v.o.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Komanditna Spoločnosť) 등이며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이며 한국 투자기업들에게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1인(자연인이나 법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주주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영업지분(Business interest)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주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주의 책임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납입자본중에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액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기업의 총자산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최소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5,000유로이며 등기된 자본은 각 주주의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주주의 최소 납입자본은 750유로이다. 기업은 최초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기관이다. 회사의 법정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오직 자연인만 가능)이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기업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정관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각 주주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의 납입자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유한회사 설립 전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다(출처: SARIO)

① 경영진의 범죄 기록 관련 서류 준비 → ② 설립 회사명의 중복성 여부 확인 →③ 정관 작성→ ④ 등록 사무소 확보 → ⑤ 등기자본의 납입 → ⑥ 등기소(Registry Court)에서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법인 등록 ⑦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과세당국에 등록 ⑧ 지역 사회보험사무소에 사회보험 등록 → ⑨ 건강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등록

조세 정책

슬로바키아 정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자세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여금에 대해 전자 신고 및 납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토지평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행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인세

슬로바키아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의해 계산되며 법정세율은 21%(2017년부터 적용)이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분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보험 납입액, 종업원에 대한 건강 및 사회시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광고비, 특정한 형태의 미지급 비용 및 충당금 등은 손금항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하에서 기업들은 법인세의 1.5% 또는 2.0%를 비영리단체(NGO)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슬로바키아에 고용된 개인은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의 적용대상이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부담율은 월급여의 35.2%(최대 월 1,417.28 유로 + 월급여의 0.8%), 종업원의 납부액은 월급여의 13.4%(최대 월 552.08 유로)가 적용된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협정은 파견근로자 등의 양국 보험료 이중 납무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에 관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회사(혹은 슬로바키아의 종속회사 포함)에 파견하는 경우, 최초 60개월 동안 그 개인은 모국(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계속 적용되어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 간 2014년 4월 사회보험료 면제기간 연장에 합의에 따라 사회보험료 면제기간은 최장 90개월로 연장되었다. 절차상으로 한국의 협정 가입증명서와 함께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업의 인보이스 가격에 부과되며 EU내의 상품 취득 및 EU밖으로부터 상품 수입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특정 식료품, 특정 약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 교육,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국회는 2018년 10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숙박업 적용 부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재지, 영업장소 및 고정 사업장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경우 직전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49,790유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직전 12개월 매출액이 100,0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6.8배(2016년 기준 35,022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이를 초과하는 잔여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퇴직보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과세소득 산정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이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세목별 법정 세율

세목	법정세율	과세표준	비고
법인세	21%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온라인 신고
사회보장기여금	35.2%(고용인) 13.4%(피고용인)	총급여 (gross salaries)	
부가가치세	20%	인보이스 가격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	19%(35,022 유로이하) 25%(35,022 유로 초과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자소득 원천세율	19%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개인은 분리과세 적용

노동시장 규제

슬로바키아 노동법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된다.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한다. 고용계약 기간은 유한(a fixed term)하게 체결하거나 제한기간 없이(indefinite term) 체결될 수 있다.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동 2년의 기간 내에 최대 2회 연장 및 갱신될 수 있다. 고용계약 기간은 서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 · 휴가일수 · 추가수당

근로시간은 주당 최고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a two-shift) 근로자의 경우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a three-shift)의 경우에는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근무(over time)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능하며 종업원과의 계약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장 추가 근무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년에 최소 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4주(20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2018년 2월 슬로바키아 국회는 야간근무(일반직종, 위험직종),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에 지급하는 추가수당(시급)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2019년 5월 2차례에 걸쳐서 추가수당을 인상할 예정이다.

추가근무 종류	2018년 5월 1일	2019년 5월 1일
야간근무	0.3 × 최저시급	0.4 × 최저시급
위험직종 야간근무	0.35 × 최저시급	0.5 × 최저시급
토요일 근무	0.25 × 최저시급	0.5 × 최저시급
일요일 근무	0.5 × 최저시급	1 × 최저시급

주: 2019년 최저시급: 2.989 유로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④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로계약의 만기 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효율성 제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한 달이나 5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만일 고용관계가 조직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년수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의 2018년 월 최저임금은 480유로이며, 2019년도에는 월 52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매년 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UV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행위는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조달 지출 규모를 8.48억 유로로 추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 여건을 ① 단독 입찰자(One Bidder) 비율, ② 제한 입찰(No Call for Bids) 비율, ③ 공공부문 구매자들의 공동구매 비율(Aggregation), ④ 가격요소 이외에 다른 낙찰 기준의 구비 여부(Award Criteria), ⑤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시간(Decision Speed), ⑥ 공공구매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Reporting Quality) 등 6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인근국인 체코, 헝가리 등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Unsatisfactory)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ate)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6년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지만,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Electronic Contracting System) 도입과 계약 등기의 의무 사용이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2017년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공무원법 도입으로 인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관리 및 교육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슬로바키아가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완전한 전산화 노력이 공공조달 절차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조달에서의 부정부패 인식도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금융 관련 정책

외환 및 송금 관련 정책

미국 국무부의 2016년 슬로바키아 투자환경보고서(Slovak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6)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유로존 가입 국가이며 OECD 회원국으로 환전 및 이전정책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이 외환거래를 규율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용이한 환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환 및 외국환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은 해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해외에서 획득한 금융자산을 슬로바키아내로 이전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들도 외환계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업은행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제외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감독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은 2006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금융시장청(Financial Market Authority)은 해체되었고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관련 감독 권한 및 책임이 모두 중앙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은 전통적인 상업거래 및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사무소의 경우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지점의 경우 모 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기타 장벽

근로목적 체류허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이외의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임시(temporary) 또는 장기(permanent)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는 사업(최대 3년), 근로(최대 5년), 학업(최대 6년), 연구 및 개발(최대 2년) 등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비EU 국적의 외국인이 근로목적 체류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래 고용주가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Office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에 정해진 양식(채용 목적, 채용 예정인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외국인 채용 의향 명시)에 따라 결원 보고서를 체류허가 발급 신청 예정 20일(영업일)이전까지 작성 제출해야 한다. 결원보고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실무적으로 결원인 자리에 국내 구직자로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해당 인력의 면접 및 우선 채용 등을 주선하게 된다.

결원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일(영업일)이 경과하면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Office of Border and Foreign Police)에 근로목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는 근로목적 체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 슬로바키아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일하거나 대표하고 동시에 OECD 회원국 국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체류허가의 갱신은 체류허가 만료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류는 공식적으로 슬로바키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분포를 고려하여 2018년부터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국어로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중요 외국인투자자(strategic investors)를 위해 일하는 경우, EU내 외국 소재 회사에 고용되어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슬로바키아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 업무, 하자 보수 업무, 생산설비 시스템 설치 작업, 프로그램 작업, 제품 사용 교육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90일까지 임시체류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슬로바키아 노동부는 실업률(노동사무소 등록 기준)이 5%인 이하인 지역에 한해, 인력 부족 업종을 발표하고 있다. 인력 부족 지역의 인력 부족 업종의 경우, 비EU 외국인 노동자들은 90일 이상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후에 임시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

외국인이 계절적 노동자,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가족 결합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경우로 발급 시점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의 지사 또는 본사에서 슬로바키아의 회사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슬로바키아에 파견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체류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국내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 노동허가 발급에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년 11월에 발효된 「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우리국민에게 발급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다.

벨기에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8



벨기에 경제부문별 동향

산업현황

벨기에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4,372억 유로,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높은 임금, 천연자원의 부재 등으로 2016년 기준 농어업(1%), 제조업(17%)의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77%로 매우 높은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계 무역과 가공 산업이 발달한 무역 국가로서 특히, 안트워프는 석유화학, 커피, 철강 등의 유럽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선물가격 결정 기준 시장이다. 또한, 벨기에는 인구 1,100만명이 조금 넘는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소비재는 자체적인 생산 대신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제조기업 중에는 중간재, 첨가물 등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 많은 편이며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의료바이오, 화학, 자동차, 물류 산업을 들 수 있다.

교역동향

벨기에는 2017년 전년대비 8.13% 증가한 4,302.9억 달러를 수출(수입 4,065.6억 달러, 전년대비 7.26%)하면서, 2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통적인 무역 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유럽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내수 확대로 수출과 수입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준, 수출의 72% 가량이 주변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EU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역내 수입이 60% 가량을 차지하고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수출	472,554	396,968	398,012	430,290	8.13
수입	454,784	375,186	372,635	406,556	7.26
수지	17,770	21,782	25,377	23,734	△6.5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WTA

외국인 투자동향

2017년 기준 벨기에 외국인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5,669억 달러로, 유럽 국가 중 외국인 투자규모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될 국내 법인세 인하(33.99% → 29%)에 따라, 향후 벨기에 외국인 투자는 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연도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Inward	556,045	551,758	500,252	566,913	13.3
Outward	577,236	610,195	590,571	690,820	16.9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UNCTAD

벨기에 내 주요 외국인 투자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으로, 이들 국가의 투자규모가 전체 FDI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벨기에 지방별 외국기업 투자를 살펴보면 플란더스 지방이 전체 벨기에 투자의 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뤼셀 지방의 경우 전체 투자의 29%를 점유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성

과가 가장 저조한 왈로니아 지방은 전체의 10%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장 및 향후전망

벨기에의 전반적 경기회복세에 따른 내수증가는 2018~2019년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총 27.9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대비 +15.2%를 기록하는 등 대벨기에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서, 그 중에서도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분야 제품이 수출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벨기에 정부의 교통 인프라 재정비 계획 및 국영철도회사 SNCB의 2018년~2022년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32억 유로)에 따라 기계 및 철강제품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개관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벨기에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수립과 동시에 한국을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특히, 벨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보병 1개 대대가 참전하였으며, 그 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입장을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가로서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교류와 협력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한-EU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정상회담 개최, 2014년 3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사무소 개소, 벨기에 겐트 대학교 및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개교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한-벨기에간 경제협력의 가교로서 역할을 하여, FTA 발효 전 대비 2017년 양국 교역규모가 28% 이상 증가(2010년 32억 달러 → 2017년 41억 달러)하는 등 경협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역 현황

한국은 벨기에를 대상으로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은 수출 증가(24억 2,600만 달러, 20% 증가)와 수입 감소(10억 7,300만 달러, △25%)에 힘입어 총 13억 5,300만 달러로 큰 폭의 무역 흑자를 시현하였으며(128.5% 증가), 2017년은 전년 대비 수출(27억 9,500만 달러, 15.2% 증가)과 수입(12억 7,300만 달러, 18.7% 증가), 무역수지 흑자(15억 2,200만 달러, 12.5% 증가)가 모두 증가하였다.

2017년 대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6.1억 달러), 합성수지(2.9억 달러), 승용차(2.9억 달러) 등이며, 설비투자 증가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현지 인지도 상승 등에 힘입어 건설 중장비 수출이 전년대비 8.6% 증가, 승용차는 25.5% 증가하는 등 수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제약·화학 강국인 벨기에로부터 한국은 기타정밀화학원료(1.4억 달러), 의약품(1.1억 달러), 기타정밀화학제품(1억 달러) 순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벨기에는 기초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다단계 공정을 거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가공형 산업구조와 함께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근 국가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3개국의 경기에 민감하여, 2017년 동 국가의 플러스 성장 등 역내 경기가 호전을 보이면서 벨기에로부터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과 벨기에간 교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현황

2017년 12월 기준(누적, 신고) 양국간 투자규모는 56억불(한 → 벨 19억 달러/벨 → 한 37억 달러)로 EU국가 중 8위 수준이나 양국의 잠재력(벨기에는

EU 국가중 인구비중 10위, GDP 비중 9위)을 감안할 때 향후 투자 확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벨기에 투자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65.3%)을 차지하며, 기아자동차, 길리안(롯데제과), 두산산업차량, 삼성전자, 아시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기계, NXHM 등 9개 기업이 진출한 상황이다. 2017년 12월 기준(누적, 신고) 벨기에의 대한 투자액(37억 달러) 중 제조업이 13.8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37.2%)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진출기업으로는 솔베이, 유미코아, UCB 등 화학 및 제약기업 등이 있다.

시장특성

소비자 특성

벨기에는 편리한 교통망과 통신망을 바탕으로 전세계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어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에 수입 상품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명과 그와 연계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벨기에는 총 소득에 비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낮아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여, 벨기에 소비자연맹은 월간지(Test-Achats)를 통해 상품의 품질/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민감한 편이다.

한국상품 인지도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품목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삼성의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이 각각 39%, 31%(201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벨기에 유력 소비자 평가지인 '테스트 안쿱(Test Aankoop)' 이 삼성전자의 드럼세탁기와 전자레인지를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2014년 현대자동차 IX35가 8,042대 판매되면서 판매량 순위 9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으며, 2015년 6월 17일, 일간지 L'Echo는 벨기에 시장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선보였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현대차가 벨기에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아 비빔밥, 불고기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이 아무런 소개 없이 중국음식점에서 판매된 사례도 있다. 이에 주 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 12월 4일 벨기에 유일의 요리 전문방송인 NJAM(얌)과 한식소개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 및 2017년 방영을 통해 한식요리 5가지(해물파전, 생선간장조림, 구절판, 굴밥, 맥적구이)를 선보였으며, 제작과정에서 된장, 간장 등 한국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한국 식재료를 현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유통특성

오프라인 유통으로는 슈퍼마켓, 전문점, 창고형 매장(하이퍼마켓),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있고, 대형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매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매상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벨기에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보다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빠르고 쉽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 벨기에 전자상거래 사용자 중 21%가 모바일을 이용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벨기에 전체 인구의 13%), 주요 구매상품은 교통티켓, 의류, 콘서트 티켓, 숙박, 장난감, 도서 등이었다. 2016년 10월 15일, 벨기에 연방정부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에 한해서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벨기에 전자상거래 협회 Becommerce는 정부발표에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벨기에 온라인 쇼핑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망상품

최근 벨기에 시장 내에서 PB(Private Brand)상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Nielsen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벨기에 내 PB 상품 판매 점유율은 42%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벨기에 내 PB 상품이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저소득층을 주 타깃으로 한 저가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벨기에의 유통업체들은 각 PB 상품을 고·중·저가 라인으로 나누었으며, 라인별로 다른 로고 및 패키지를 사용해 차별화를 두어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 내 웰빙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 유통업체별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유기농 라인의 PB 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통관 및 운송

벨기에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EU 통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 통관은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NS 제도는 벨기에를 비롯한 EU 내 물품 반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ENS의 신고기한은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운송	신고기한
해상	-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 벌크 물품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항공	- 장기 항공(비행 4시간 이상)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의 경우 출발 전
육상	- 도착 1시간전

ENS 신고 시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연락처, 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코드, 위험품목일 경우에는 위험품목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품 명세 기재 시에는 '일반 화물','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의 수입물품 통제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U는 그 동안 사전전자신고제도,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동세관 등록번호(EORI) 등을 통해 공동통관정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투자환경

개괄

벨기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며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해 있는 벨기에는 수도인 브뤼셀 지방만 해도 200여개가 넘는 외국기업이 존재하며 유럽항공안전기구(Eurocontrol), NATO 본부 등 국제 단체 및 로비스트들이 많아 전략적 국제도시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가까이 있어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고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구로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철도, 공항, 도로, 통신망 등 인프라 구조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 밖에, 벨기에 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벨기에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한 작은 면적을 가진 벨기에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공용어만 3개이며, 이 같은 언어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인들은 다른 문화 및 언어를 배타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커 외국인들이 사업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 투자장려 정책

벨기에 정부는 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벨기에 소재 기업은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 제도를 누릴 수 있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 유형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인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 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 되어야 하며 국가 이익과도 부합해야 한다.

더불어 벨기에 내 외국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형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기업 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의 일환으로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채용의 용이성을 위해 특수 비거주자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된 외국인 고급인력(매니저나 과학자 급)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벨기에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들의 이사 비용, 주택 임대비용, 교육비 등 벨기에 내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되는 수당 역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고용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회 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 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 규정에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 자산 매입 등이다.

혁신박스 제도(Patent Box)

벨기에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유치를 위해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17년 2월 의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7월 1일부로 소급적용 중이며, 동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대상 수입 중 혁신활동에 대한 수익 중 최대 85%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Advance Tax Ruling)

2005년 도입된 벨기에 Tax Ruling 제도는 납세의무자와 세무당국간 향후 납세대상 소득과 그에 적용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는 제도로, 해외 투자가들은 동 제도를 통해 투자전부터 투자 후 발생되는 비용 및 수익에 대한 미래의 납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대규모 설비투자 혹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시점 또는 향후 수익 발생시점에서의 세부담 정도가 투자와 관련된 전략결정에 주요변수가 되므로, 벨기에의 중요 투자 유치제도의 하나로 여겨진다.

기업은 자사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사전 면담할 수 있고, 면담 후에 반드시 동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영화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 진흥을 위한 Tax Shelter 제도

동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서, 동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사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

다.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 및 TV용 애니메이션 등으로, 벨기에 기업 및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전체 작품 제작비용의 50%, 최대 투자한도 241,945 유로 내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스타트업 기업 인센티브

스타트업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벨기에 정부의 투자 지원 정책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Crowd funding을 이용한 투자와 Start-up 기업에서 신규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방식이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생 Start-up 기업 내 투자로는 동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년 이상 된 스타트업 기업이어야 한다.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00,000 유로로 제한되며 투자 시 초소형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45%를,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Crowd funding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분 투자의 경우 7,500 유로이며 대출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000 유로로 제한된다. 벨기에 정부는 동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1,000개 가량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통제하거나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는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등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및 보험, 에너지, 방송, 통신,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산업에 투자 시, 사전 통보 혹은 관계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벨기에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차별적인 투자 제한이나 금지는 없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벨기에에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벨기에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 자격증과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와 동종의 직업 자격증이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로부터 동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일, 동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또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상 투자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세제도

개괄

조세 종류에는 직접세(법인세, 개인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 각종 등록세) 이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환경세, 주민세 등이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일부 등록세, 환경세는 연방정부 소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지방정부, 주민세는 구청 소관이다.

법인세

벨기에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벨기에의 법인세는 벨기에 내에서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EU 및 비 EU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명목 법인세율은 외국인 기업이나 내국인 기업의 차별 없이 33.99%이다. 그

러나 과세 대상 수익이 332,500 유로를 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래와 같이 낮아진다.

과세대상 수익액	명목세율
25,000 유로 이하	24.98%
25,000~90,000 유로	31.93%
90,000~322,500 유로	35.54%
322,500 유로	33.99%

자료: 벨기에 경제부

높은 명목 법인세율은 벨기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벨기에 정부는 현행 법인세율 33.99%를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도에는 25%까지(중소기업의 경우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벨기에 법인세율은 EU 평균인 22.09% 대비 11.9%나 높은 수준인데, 주변국인 네덜란드(25%), 영국(20%), 스페인(25%), 독일(29.72%), 스위스(18%)와 비교 해봐도 상당히 높은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적용은 2018년 33.99% → 2019년(29%) → 2021년(25%)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24.98% → 2019년(20.40%) → 2021년(2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벨기에 정부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고용인 1명에 대해 사회보장세가 무기한 면제되며, 두 번째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음 5분기 동안 1,550 유로, 그 뒤 4분기 동안 1,050 유로, 이후 4분기에는 450 유로가 감면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의 폭이 넓어져 처음 9분기에 1,050 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 유로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 투자기업 관련 조세제도(가상이자공제)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 자본의 투자를 장려키 위해 가상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 시, 가상 이자액을 과세 대상인 투자수익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가상이자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유는 만약 고유자본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았다면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유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상적인 이자'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법인 실질 과세소득액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벨기에가 외국투자유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가상이자 면제의 기준은 순자산(Net assets)이며, 2018년 7월 현재 적용되는 가상이자율(NID rate)은 0.237%(중소기업의 경우 0.737%)이며, 2019년에는 0.746%(중소기업의 1.246%)가 적용된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외환관리

벨기에는 외환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으며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 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1990년 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 2월 15일에 IMF 제 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44년 설립된 벨기에 외환사무국(IBLC: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이 최고 외환 관리 기관으로 외환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통계를 총괄 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모니터링 업무에 중점을 두고 외환 관련 통계는 벨기에 중앙은행으로 위임하였다. 한편, 외환 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금조달

벨기에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의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법적으로 국내 기업과 차이가 없으며, 거래실적,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에 불과한 벨기에에는 총 109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벨기에 법인 은행이 47개, 외국 법인 은행이 62개다. 벨기에는 국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심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벨기에 대출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벨기에 소재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벨기에 소재 기업들의 은행대출 자금조달 규모는 총 1,340억 유로로 2017년 4분기 대비 2% 증가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2018년 5월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1백만 유로 이하 1년 미만 단기 대출금리의 경우 1.61%, 1~5년 미만의 대출금리는 1.42%,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1.82%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출규모가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1년 미만 단기대출에 대해서는 1.31%의 금리가 적용된다.

노무 관리

개괄

2016년 기준, 벨기에 노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총 49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 1,130만 명 중 43.5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인구 수는 총 454만 명, 구직자의 수는 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제조업(12.4%), 건설업 (5.9%), 농업(1.3%) 순으로 고용중에 있다.

벨기에는 근로 성격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고, 근로서비스 양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만이 고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는 4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계약, 근로, 보수, 고용주 감독으로 이들 4대 요소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계약은 양측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의 변경은 양측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고용계약의 종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의 핵심 요소를 변경할 경우, 고용계약의 종료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고용계약의 모든 수정사항이 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시, 고용계약 내 핵심적 요소를 크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에는 고용계약의 문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후 증빙 등의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권리 및 의무는 양측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협약, 근로 규정, 관습 등으로도 규율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에는 업무 내용, 고용계약 기간, 보수 및 보수지급날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종료, 결근, 분쟁절차, 근로규칙, 보험, 식권(Ticket restaurant), 기타 인센티브 등이 문서로 기술되고 있으며 양측간 서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비자

비자는 크게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로 나뉘며, 학생비자신청자와 취업비자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비자 그리고 관광과 단기 근로를 겸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비자가 있다. 주한벨기에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대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대사관은 총 3번(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인과 함께 대사관에 출석 시, 비자 수취 시)을 방문해야 하며, 별도의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누락 없이 가져간다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하지만, 건강진단서 준비와 서류들의 번역, 공증, 영사확인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약 2~3주 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학생비자	취업비자(VISA-D)
여권 여권 (15개월 이상 유효) 비자신청서 1부 여권사진 2매 비자 수수료 252,000원 송금 확인서 수수료 200 유로 송금 확인서 입학 원본 확인서 이전학력 확인서 재정보증서 1) 재정보증인 여권 원본 및 사본 2) 재정보증인 영문 재직증명서 3) 재정보증인 영문 최근 12개월 월급 명세서 4) 재정보증인 영문 잔고 증명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건강진단서	여권 (15개월 이상 유효) 비자신청서 1부 여권사진 2매 비자 수수료 252,000원 송금 확인서 수수료 350 유로 송금 확인서 범죄/수사경력 조회서 건강진단서 유효한 노동허가서(work permit) 혹은 Hosting Agreement, Professional card 원본

한-벨 워킹홀리데이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던 한국-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협정 프로그램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참가자 숫자는 한 해 200명으로 제한된다.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는 것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체류기간 도중 체류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만 18세~30세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이번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향후 양국 간 이해 폭이 넓혀지고 나아가 한국과 벨기에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 외국의 통상환경

- 유럽 -

◈ 인 쇄 | 2018년 12월

◈ 발 행 | 2018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